

| SRI-기본-2022-01 |

도-시·군간 재정제도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Strategy for Local Government Fiscal Relations in Korea

정재진·곽병욱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박병욱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이장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2022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김선희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2년 9월 30일

발행 2022년 9월 30일

ISBN 979-11-6819-076-4 (9332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정재진. 2022. 「도-시·군간 재정제도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주요내용 및 정책제안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세입과 세출의 격차, 지방세입 기반의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상급 정부로부터의 재정 이전에 크게 의존함. 그 결과 다차원의 목적을 갖고,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을 지방에 이전하는 재정조정제도가 설치·운영중에 있음
- 그동안 지방재정 영역에서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어왔으나 상대적으로 광역과 기초간 재정관계와 효과 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함
- 이 연구는 중앙으로부터의 재정 이전에 더해 광역의 재정조정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과도한 균형발전이 재정력 역전 현상을 발생시키는지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배분 산식 적용 시기의 동일성, 중앙으로부터 이전된 재원에 대한 고려 미흡(재정력지수의 반복사용) 등에 따라 과도한 절대적 재정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간 재정력 역전 현상을 유발하고 있음을 검증하였음

■ 정책제안

- ❶ 재정력 역전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앞서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인식 공유가 선행되어야 함
- ❷ 광역과 기초가 상생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금 시스템 재정비 필요
- ❸ 기초자치단체간 재정형평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 개편 필요

국문요약

■ 서론

○ 연구의 배경

- 재정조정제도는 재정 이전을 통한 세원편중 현상 해소, 안정적 공공재 공급 유도, 과소·과잉 공급되는 공공재의 외부효과 시정, 재정형평화 유도 목적으로 추진됨
- 그러나 최근 들어 “균형발전”이라는 대 원칙이 재정조정제도에 반영됨에 따라 재정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제도(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의 재정형평화 효과 및 재정력 역전 현상을 분석하고, 최적 대안을 도출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재정조정제도의 함의 및 한계점 도출, 재정격차, 형평성, 재정력 역전에 대한 정의 및 기준 설계, 제도운영 실태 분석
- (실증분석) 재정력지수 기준,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이전에 따른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재정력지수 1 초과시 순증분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재정력 역전 현상 분석

■ 재정형평성과 재정력 역전 정의

○ 재정형평성

- 결과로서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동일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나 최소한의 공공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요를 보전해 준 상태

○ 재정력 역전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을 해결하고,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정조정제도가 당초의 자치단체 재정력 순위를 왜곡하는 상태

■ 분석대상 및 방법

○ 분석대상

- (대상) 경기도내 31개 시·군
- (시간적 범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 분석방법 및 자료

- 형평화 효과 분석

〈표 1〉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력지수의 형평화 효과 분석

구분	분석 기준	분석 방법
현 상태	I_{lt} / D_{pg}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각 제도별 지니계수, 변이계수, 순위분석
교부세 효과	$I_{(lt+ig)} / D_{pg}$	
조정교부금 효과	$I_{(lt+ig+ag)} / D_{pg}$	
도비보조금 효과	$I_{(lt+ig+ag+lg)} / D_{pg}$	

주: 기준재정수입(I_{lt}), 기준재정수요(D_{pg}), 교부세(I_{ig}), 조정교부금(I_{ag}), 도비보조금(I_{lg})

- 재정력 역전 현상 분석

〈표 2〉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력 역전 현상 분석

구분	분석 기준	분석 방법
현 상태	$Inc = I_{lt} - D_{pg}$	제도 단계별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증가액이 발생될 경우 해당 자원과 이 자원이 기준재정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 분석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각 제도별 지니계수, 변이계수, 순위분석
교부세 효과	$\Delta Inc = I_{(lt+ig)} - D_{pg} > 1$	
조정교부금 효과	$\Delta Inc = I_{(lt+ig+ag)} - D_{pg} > 1$	
도비보조금 효과	$\Delta Inc = I_{(lt+ig+ag+lg)} - D_{pg} > 1$	

주: ΔInc 는 재정력지수 1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비중

■ 현행 재정조정제도 효과 분석

○ 형평화 효과

- 최근 11년간 지방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은 재정형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조정교부금은 부정적 영향을 미침.
- 2011년 대비 2021년 수원시 순위는 현 상태에서 지방교부세 배분시 5단계 하락, 조정교부금 배분시 15단계 하락, 도비보조금 배분시 12단계 하락

○ 재정력 역전 효과

- 지방교부세가 재정력 역전을 가장 강하게 발생시키며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은 이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 이상의 재원 확보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동일하게 증가되지 못함. 즉, 재정력 역전 현상은 지속됨

○ 분석결과 종합

- 제도별로 재정형평화 효과가 발생되었으나 초과액에 따른 순위 변동 발생. 초과액 비중이 자치단체별로 동일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재정력 역전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표 3〉 분석결과의 종합

구분		재정력지수 기준	초과액 기준	초과 비중 기준
'11년 대비 '21년	지방교부세	형평화	형평화(번이) 불균형(지니)	형평화
	조정교부금	형평화	형평화	형평화
	도비보조금	형평화	형평화	형평화
	순위변동	지방교부세 +5 조정교부금 +15 도비보조금 +12	지방교부세 -1 조정교부금 -2 도비보조금 -2	지방교부세 +5 조정교부금 +15 도비보조금 +12
11년간 평균	지방교부세	형평화	불균형	불균형
	조정교부금	불균형	형평화	형평화
	도비보조금	형평화	형평화	형평화
	순위변동	지방교부세 +1 조정교부금 +3	지방교부세 +1 조정교부금 -1	지방교부세 +1 조정교부금 +3

주: 순위 변동은 수원시 순위를 의미함('+'는 순위 하락, '-'는 순위 상승을 의미)

■ 시뮬레이션 설정 및 최적대안 도출 부분은 비공개로 함

■ 결론 및 향후과제

○ 결론

-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제도를 다양한 주체가 차별화된 기준으로 재정을 배분한 결과 당초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교부세 배분 이후 추가배분 되는 구조를 가진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은 교부세의 목적을 희석시키는 상황 발생
- 정부간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개선점 마련 필요

○ 향후과제

- 본 연구는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제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향후 중앙-지방,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제도 전반의 종합적 분석과 대안 마련 위한 특례시 공동 연구 필요
- 향후 재정력지수의 대체 지표 연구, 재정력지수 산정의 타당성 연구 필요

주제어: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형평화, 재정력 역전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및 자료 구득	6
 제2장 이론 검토와 분석 방법	 9
제1절 정부 간 재정관계의 논리와 주요 수단	11
1. 정부 간 재정관계	11
2. 재정조정 목적과 방식	16
제2절 재정격차와 재정형평성	25
1. 재정격차와 발생원인	25
2. 재정형평성과 재정력의 역전	27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 방법	30
1. 선행연구의 검토	30
2. 분석 방법	35
 제3장 도-시·군간 재정조정제도 운영 현황	 39
제1절 조정교부금제도 운영 현황	41
1. 제도도입 목적과 운영 기준	41
2. 조정교부금 배분 현황	44
제2절 도비보조금제도 운영 현황	49
1. 제도도입 목적과 운영 기준	49
2. 도비보조금 자원배분 현황	52

제3절 재정조정제도의 효과 검토	57
1.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검토	57
2. 재정력 역전 현상 분석	62
3. 분석 결과의 종합	68
제4장 내용 비공개	
제5장 결론	73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75
제2절 정책 제언	78
참고문헌	81
부 록	86

표 차례

본 문

〈표 2-1〉 재정조정제도별 비교	21
〈표 2-2〉 재정격차 발생 원인	26
〈표 2-3〉 재정형평성과 재정력 역전에 대한 정의	29
〈표 2-4〉 조정교부금 선행연구 요약	32
〈표 2-5〉 도비보조금 선행연구 요약	34
〈표 2-6〉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력지수의 형평화 효과 분석	36
〈표 2-7〉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력 역전 현상 분석	37
〈표 3-1〉 조정교부금 주요 제도 변화	43
〈표 3-2〉 연도별 조정교부금 배분 현황	45
〈표 3-3〉 지방세 대비 조정교부금 비중	46
〈표 3-4〉 1인당 조정교부금 배분액	46
〈표 3-5〉 조정교부금과 1인당 배분액, 지방세 대비 비중간 상관성	47
〈표 3-6〉 조정교부금 연평균 증감률	48
〈표 3-7〉 수원시 연도별 조정교부금 배분액 증감률	48
〈표 3-8〉 경기도 보조금 기준보조율 구간	50
〈표 3-9〉 경기도 보조금 차등보조율 구간	51
〈표 3-10〉 경기도 보조금 차등보조율 결정 산식	52
〈표 3-11〉 연도별 도비보조금 배분 현황	53
〈표 3-12〉 지방세 대비 조정교부금 비중	53
〈표 3-13〉 1인당 도비보조금 배분액	54
〈표 3-14〉 도비보조금과 1인당 배분액, 지방세 대비 비중간 상관성	54
〈표 3-15〉 도비보조금 연평균 증감률	55
〈표 3-16〉 수원시 연도별 도비보조금 배분액 증감률	56
〈표 3-17〉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결과(변이계수)	58
〈표 3-18〉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결과(지니계수)	60

〈표 3-19〉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결과(순위변동)	61
〈표 3-20〉 초과액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변이계수·지니계수)	63
〈표 3-21〉 초과액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순위변동)	64
〈표 3-22〉 초과 비중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변이계수·지니계수)	66
〈표 3-23〉 초과 비중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순위변동)	67
〈표 3-24〉 분석결과의 종합	69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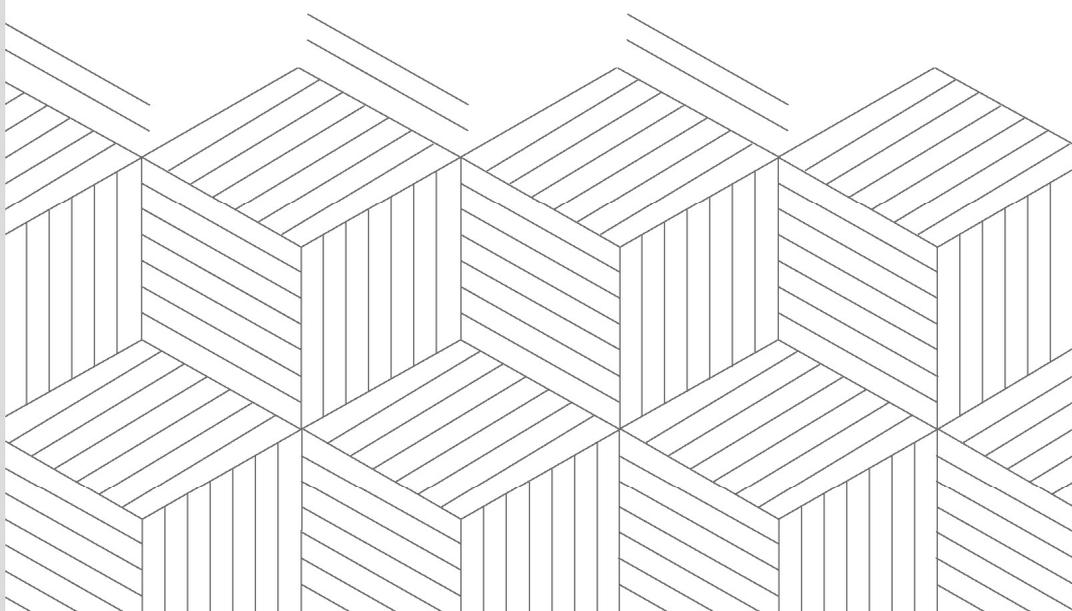
〈부록 1〉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조정교부금 현황	85
〈부록 2〉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조정교부금 전년 대비 증감률	87
〈부록 3〉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도비보조금 현황	89
〈부록 4〉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도비보조금 전년 대비 증감률	91
〈부록 5〉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입액 현황	93
〈부록 6〉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입 대비 조정교부금 비중	95
〈부록 7〉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입 대비 도비보조금 비중	97
〈부록 8〉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인구 현황	99
〈부록 9〉 최근 자치단체별 1인당 조정교부금 배분 현황	101
〈부록 10〉 최근 자치단체별 1인당 도비보조금 배분 현황	103
〈부록 11〉 경기도 31개 시·군 연도별 재정력지수 및 순위	105
〈부록 12〉 경기도 31개 시·군 연도별 재정력지수 1이상 발생 금액 및 순위	116
〈부록 13〉 경기도 31개 시·군 연도별 재정력지수 1이상 발생 금액의 비중 및 순위	127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7
〈그림 2-1〉 정부간 재정관계 흐름	13
〈그림 2-2〉 Fisher의 보조금 종류	17
〈그림 2-3〉 OECD의 보조금 종류	18
〈그림 2-4〉 우리나라 재정조정 제도	20
〈그림 2-5〉 재정불균등이 발생하는 조건	25
〈그림 3-1〉 1인당 조정교부금 배분 현황	47
〈그림 3-2〉 지방세 대비 조정교부금 배분 현황	47
〈그림 3-3〉 1인당 도비보조금 배분 현황	55
〈그림 3-4〉 지방세 대비 도비보조금 배분 현황	55
〈그림 3-5〉 최근 11년간 형평화 효과(변이계수)	59
〈그림 3-6〉 최근 11년간 형평화 효과(지니계수)	60
〈그림 3-7〉 최근 11년간 형평화 효과(순위변동)	61
〈그림 3-8〉 초과액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변이계수)	63
〈그림 3-9〉 초과액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지니계수)	63
〈그림 3-10〉 초과액 기준 최근 11년간 재정력 역전 현상(순위변동)	64
〈그림 3-11〉 초과 비중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변이계수)	66
〈그림 3-12〉 초과 비중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지니계수)	66
〈그림 3-13〉 초과 비중 기준 최근 11년간 재정력 역전 현상(순위변동) ..	6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한 국가 내에서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과 지방 간 재정관계는 완벽하게 독립적일 수 없다. 단체자치에서 출발한 배경을 갖고, 주민의 지역간 이동성이 빈번하여 역외 유출에 따른 외부성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상급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이 크다(정재진, 2009). 조세행정상 지방은 중앙과 비교해 세원의 빈약성, 조세행정의 열위 등으로 완벽한 독립을 유지하기 어렵다(Musgrave & Musgrave, 1989). 세원분포의 집중성,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 특정 지역의 인구 감소 등은 세입 측면에서의 불균형을 발생시킨다. 자치단체 구역의 크기, 도시화에 따른 추가적 행정 서비스의 필요성, 인구밀도 등은 세출 측면에서의 불균형을 발생시킨다.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중앙-광역-기초 간 세원 불균형에 따른 수직적 재정조정 필요성과 지방-지방 간 세원 분포의 편차, 최소공공재 공급의 차이 등에 따른 수평적 재정조정의 필요성이 발생된다. 정부 간 재정관계는 과세권한의 이양,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공동세 방식 등 세원의 재배분 방식과 교부세나 보조금 등 재정이전의 방식을 통해 수직적 형평화와 수평적 형평화를 도모한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후자의 수단을 선호한다. 재정분권 등을 통해 세원의 재배분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 역시 과세권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세원 재배분이라 정의하기 어렵다.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선호되는 이유는 상급 정부가 자신의 재원을 일정한 산식 또는 필요에 의해 배분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재정조정제도는 재정이전을 통해 세원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공재 공급을 유도하며, 과소 또는 과잉 공급될 수 있는 공공재의 외부효과를 시정하고, 형평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재정조정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발생시킨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세입에 대한 책임이 낮은 반면 세출에 대한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효율을 꾀할 유인이 부족하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지방의 매칭부담을 키운다는 공통적 속성과 차등보조를 통해 재정균형을 유도하는 등 지방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추가하여 재정균형을 유도한다. 다양한 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보전 보다는 기술적 재정형평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력 역전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황소하, 2017). 당초 제도의 목적에 정치적 요구가 반영되어 본래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¹⁾.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재정분권은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는데, 누구도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지방은 지방으로 이전된 재정의 양이 적었다고 비판하고, 중앙은 너무 많은 재정이 이전되었다고 한다. 수도권은 상생기금 출연이 역차별이라고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위주의 재정분권이라고 한다(이상범, 2019a). 여기에 더해 지방은 해당 자치단체로 이전된 재정의 순증분만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불만족을 표현한다.

재정분권과 재정조정제도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재정을 둘러싼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된다. 재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며 선택과 집중 그리고 다양성의 인정 보다는 균형발전에 많은 초점을 두고 배분된다. 그러다 보니 재정조정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본연의 목적 중 어느 것 하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정재진, 2020b).

최근 들어 발생하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갈등은 수직적 형평화 보다는 수평적 형평화에 초점이 지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조정제도가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효과에 대한 판단은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시기만을 대상으로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대한민국은 앞으로 저성장에 직면할 것이며, 국가나 지방 모두 세입의 증가율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 재정조정제도를 둘러싼 재정보호 경쟁은 갈등으로 진화될 소지가 충분하다. 갈등은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중심으로 재정형평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재정형평화의 과도함은 자칫 재정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전국 모든

1)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대도시 집중인구들의 주거 여건이나 복지수준이 사실상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 우선 지원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서 또 다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나라 정부 간 재정상황이다(김현아, 2007)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실태를 재정형평화와 재정력 역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정의한 형평성은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크게 고려하지 못한 기계적 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재정조정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 간 세입의 규모를 같게 하거나 세출의 양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치단체 간 다양한 세입과 세출 구조 속에서 세입과 세출의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세입 또는 세출 측면에서의 결과로서 형평성 분석은 자칫 형평이 아닌 평등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과도한 평등 우선은 재정의 역전 현상을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재정의 형평화와 재정력 역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한 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앙-지방으로 이원화 되어 분석되어졌다. 광역과 기초 간의 재정조정제도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학문적 수준에서 미세한 지방재정의 구조와 배분체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은 현장성과 실무성을 이해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

광역과 기초 간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연계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도비보조금은 학문적·이론적 개념이 아니고, 도비보조금에 포함된 통계목이 매우 다양하며, 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조례를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어 도비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광역과 기초 간 재정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현상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자원보장과 재정형평을 목적으로 한다. 도비보조금은 재정형평화 보다는 재정보전의 측면이 강한데 경기도의 경우 차등보조제도를 두고 있어 재정형평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이 연구의 범위는 내용, 시간,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적 범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이론 검토를 통해 제도의 취지, 방향성 등을 정립하고, 현 제도에 대한 한계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선행연구 등을 통해 재정형평성, 재정력 격차, 역전 등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하고, 연구 방법론 등을 벤치마킹한다. 경기도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제도에 따른 재정이전의 규모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효과 분석 단계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재정형평화와 역전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재정조정제도가 당초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이다. 2011년을 시작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2010년 지방세 체제개편에 따라 2011년 설정된 지방세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이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자치단체 재정상태를 기준재정수입과 수요의 차이 또는 지수를 기준으로 각 제도별 영향을 추가하여 효과 분석하기 때문에 지방세입에 대한 안정성이 중요하다.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으로 한정한다. 정부 간 재정관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경기도내 조정교부금의 변화는 지방교부세 산식인 기준재정수입에 산입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미친다. 엄밀히는 재정력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재정력지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액의 배분은 조정률 등 당해 연도 내국세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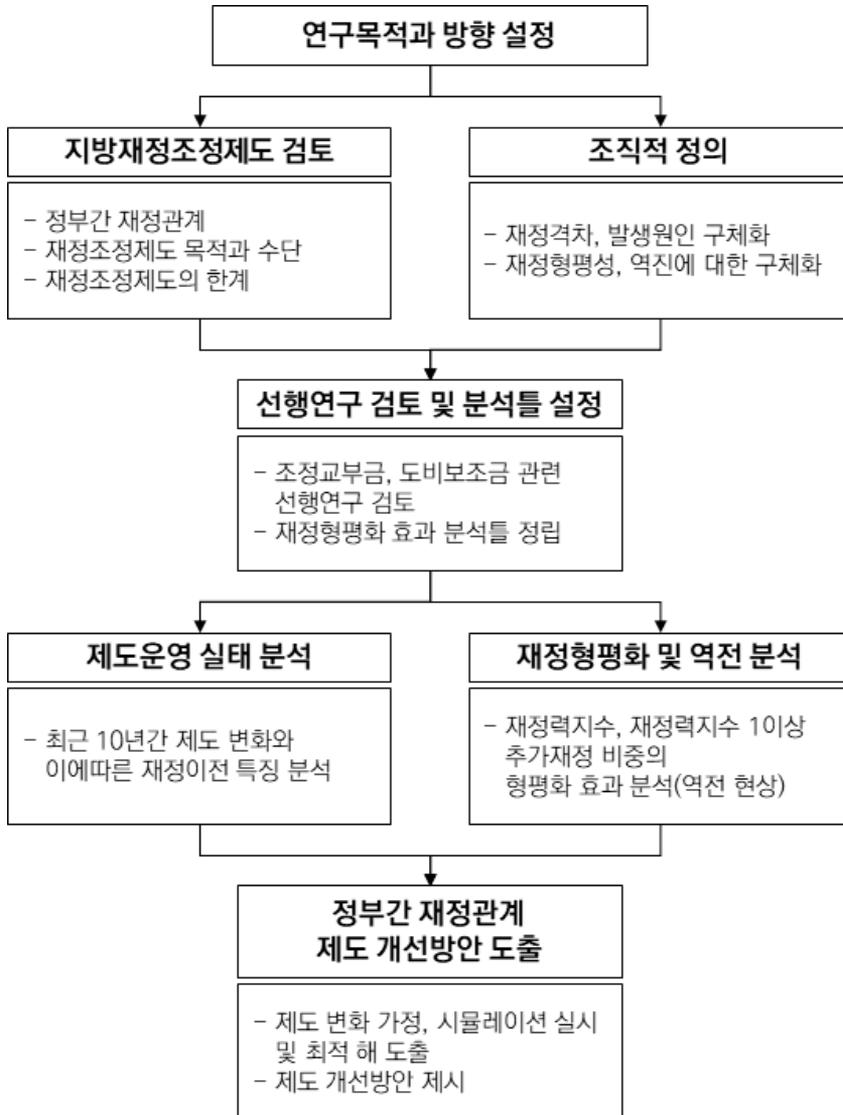
2. 연구 방법 및 자료 구득

이 연구는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을 추진하였다. 재정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형평화와 역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니계수, 변이계수, 순위변동 등 통계적 분석을 이용한다. 그리고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은 지방재정 전문가(교수 및 연구원 등) 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부족한 자료는 해당 자치단체 예산서를 통해 구득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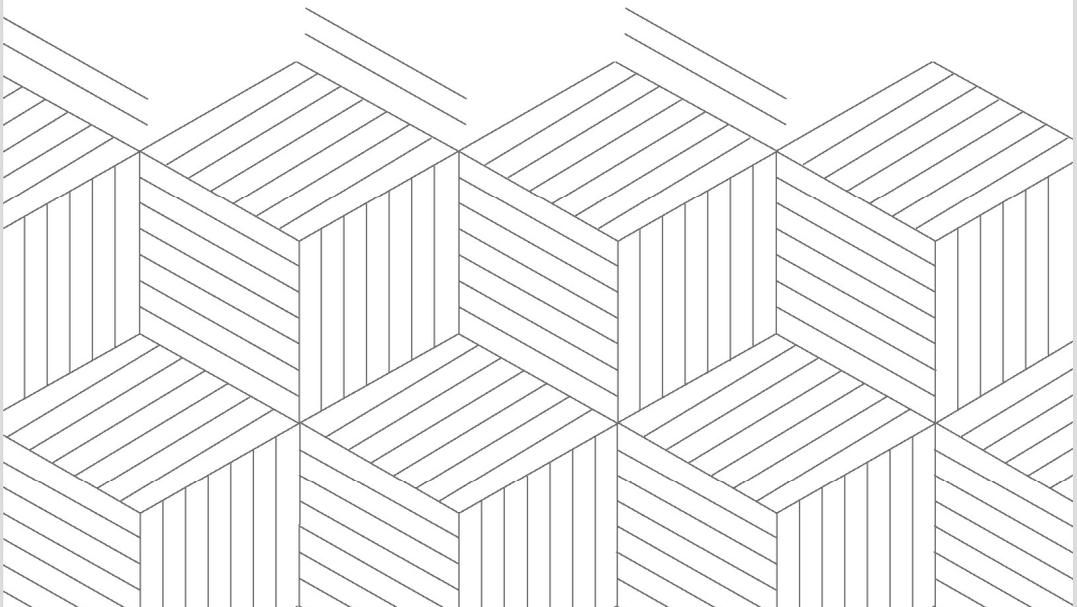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제2장

이론 검토와 분석 방법

- 제1절 정부 간 재정관계의 논리와 주요 수단
- 제2절 재정격차와 재정형평성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 방법



제2장 이론 검토와 분석 방법

제1절 정부 간 재정관계의 논리와 주요 수단

1. 정부 간 재정관계

1) 정부 간 관계

정부 간 재정관계는 각급 정부별 권한과 기능의 관계 등에 관심을 둔 정부 간 관계 이론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홍근석·김봉근, 2019). 정부 간 관계이론은 각 급 정부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서 또는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응하는 협력, 협조, 조정, 경쟁, 갈등, 파트너십 등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Anderson(1960), Wright(1978), Shafritz(1985)으로 대표되는 연방국가의 정부 간 관계와 Elcok(1994)과 Wilson & Game(1998)으로 대표되는 단방국가의 정부 간 관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연구 대상 국가의 정체가 연방체제인지 단방체제인지에 따라 정부 간 관계의 모델은 달리 설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주로 각 급 정부들의 역할과 권한의 상호작용 과정을 설명하고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면서 발전되어 왔다²⁾. 뿐만 아니라 연방과 단방 모형은 서로 이질적이지 않고, 유사성을 띤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포괄모형과 단방정부 차원에서의 대리인 모형은 그 강도의 차이를 둘뿐 상급 기관에 의해 하급 기관이 종속된다는 맥락에서 유사하다.

정부 간 관계의 연구는 현실적 고민의 산물이다. 미국 등 지방자치가 일찍부터 시작된 국가에서 정부 수준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정부 간 관계의 논의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앙과 광역,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기능과 권한의 배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 연방국가의 정부 간 관계 모델은 대표적으로 Wright(1978)가 정의한 협력모형(coordinate-authority model), 포괄모형(inclusive-authority model), 중첩모형(verlapping-authority model) 등이 있으며, 단방국가의 정부 간 관계 모델은 대표적으로 Wilson과 Game(1998)이 제시한 대리인모형(agency model), 권력의존모형(power-dependent model), 지배인모형(stewardship model) 모형 등이 있다. 이들 모형은 모두 각급 정부 간(연방-주-지방 또는 중앙-지방)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연계되며, 종속성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등에 대해 설명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부 간 관계 연구는 그 확장성이 크다. 지방자치가 다양성과 차별성 그리고 경쟁을 기반으로 발전한다는 맥락에서 함께 발생하는 지역간 갈등, 분쟁 등의 해소에까지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홍준형, 1998; 사득환, 2002). 우리가 최근 들어 고민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의 사무 발굴과 권한 이양 역시 정부 간 관계에서 진행되는 논의라 하겠다.

2) 정부 간 재정관계

정부 간 재정관계는 정부 간 관계의 논의 선상에서 재정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재정의 연계성에 관심을 둔다(김현아, 2008). 정부 간 재정관계는 주로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 이론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재정연방주의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 이론과 동일한 범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1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은 1940-50년대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출발한다. 이 시기에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공정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데 관심이 컸다. 이를 위해 희소한 재원으로 공공재 공급의 효율을 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동급의 자치단체들 간에 경쟁을 통한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확보 가능성, 사무와 기능이 분류된 정부 수준별 맞춤형 공공재 공급과 이에 적합한 수준의 자원 배분, 규모의 경제와 지리적 통합을 고려한 최적 공공재 공급 방식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Tiebout(1956)의 “발로 뛰는 투표³⁾” Musgrave(1959)의 “정부 수준별 기능과 자원배분⁴⁾”, Oates(1972)의 “재정연방주의”, “분권화 정리⁵⁾”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공공선택론과 대비되며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외연 역시 크게 확장 되었다(Oates, 2005).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활용되는 수단과 관련하여 우명동(2019)은 기능배분, 세원배분, 재정조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부 수준별 합당한 사무와 기능이 배분되고, 주어진 기능에 맞는 공공재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자주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자주재원의 확보는 정부 수준에 맞는 세원의 분배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 그런데 세원배분 이후에

3) Samuelson(1954)의 적정 공공재 공급의 가정에 대한 반론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원과 사람이 지역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분권적 공급으로 인한 사회 후생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며, 주민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지역으로 이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정부가 가장 효율적인 정부 규모라고 제시

4) 공공재 공급의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지출과 누진적 조세를 활용하는 소득재분배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활용하는 경제안정화 정책은 중앙 정부가 수행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공공재는 공급 주체에 따라 사회 후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가장 제고 시킬 수 있는 수준의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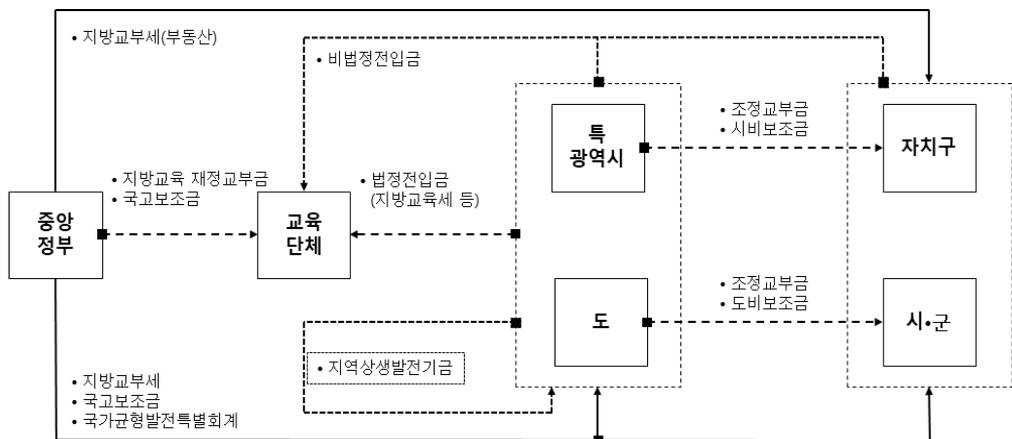
5) 정부 간 기능분담에 따른 공공재 공급의 효율화를 정리한 것으로 ① 특정 공공재의 소비가 지리적으로 전체인구 중의 일부 주민에만 한정되고, ② 각 행정구역(jurisdiction)에서 소비될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에서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구역에서 획일적으로 정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 보다 지방정부가 해당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중앙정부만큼 효율적이라고 정리

정부 수준별 또는 동일 정부 수준 내에서 세원의 편제와 보편성 차이가 발생되어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전국 수준의 보편적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또는 위임된 사무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 재정 이전과 조정이 필요해지게 된다.

우명동(2019)이 정의한 정부 간 재정관계의 기능배분, 세원배분, 재정조정은 하나의 흐름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1단계 재정분권 추진시 8.5조원 규모의 지방소비세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한다. 지방에서는 지방소비세라는 자주재원이 순증되는 반면, 중앙은 지방소비세가 증가된 만큼 부가가치세가 감소한다. 이에 중앙은 약 3.6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기능을 배분한 것이다. 3.6조원을 선 공제한 후 4.9조원은 지방으로 이전된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기 때문에 재정의 순증 효과는 광역에 집중된다. 지방소비세는 자주재원인데, 자주재원의 증가는 전적으로 광역에 한정된다. 기초자치단체도 일정부분 증가한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순증 효과는 자주재원이 아닌 조정교부금과 같은 이전재원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비세는 배분시 지역균형을 위해 최종소비지수를 수도권 100, 광역 200, 도 300을 적용하여 배분한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와 시·군이 배분산식이 다르긴 하지만 시·군의 경우 인구 50%, 징수실적 20%, 재정력 역지수 30%를 적용한다. 이 역시 어느 정도 균형을 꾀하고자 하는 맥락이다. 그런데 지방소비세의 이전효과는 자치단체마다 동일하지 않다. 균형에 대한 정의는 추후에 논의하겠으나 세원이전과 기능배분의 수단인 재정분권으로 지역간 불균형 효과가 발생된다(박근후, 2019; 이상범, 2019b).

한편 정부 간 재정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제도 변화는 다른 재정에 충격을 주게 된다.

〈그림 2-1〉 정부 간 재정관계 흐름



따라서 기능배분과 세원배분 그리고 재정조정은 치밀한 검토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재정조정 중요성이 커지는 대목이라 하겠다. 재정조정에 대한 방식과 구체적 사례는 이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3) 재정조정의 필요성

재정조정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 이전이라는 수단을 통해 추진된다. 정부 간 재정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 구역과 그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법령 등에 의해 부여된 합법적 자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우리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민은 자치단체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합법적으로 부여된 자치권의 행사 영역도 해당 구역에 한정된다.

구역으로 범위가 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세입으로 공공재 공급을 충당해야 한다. 그런데 세입은 유한하고 증세는 더욱 어렵다. 자치단체는 공공재 공급비용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며, 보다 양질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경쟁을 통해 확보한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과 높은 수준의 공공재 공급 체계가 형성되면 담세력이 큰 주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치단체는 담세력이 높은 지역주민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 담세력이 큰 주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의 정향을 결정하게 된다(Tiebout, 1956; Peterson, 1981). 동급의 자치단체 간 비교우위에 있는 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세입을 확충할 기회가 커진다. 잘 사는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발전 속도를 증가시키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때문이다(Groves & Kahn, 1952; Williamson, 1965; 김리영, 2013; 김병석·서원석, 2014; 현승현·함요상, 2017). 인구의 유입은 관리비용의 증가를 불러오기는 하지만, 한번 인구 유입을 통해 상대적 우위를 점한 자치단체는 상급 정부로부터의 재정 이전 효과까지 수월해 질 수 있다(조택희, 2011; 라휘문, 2014).

전술한 경쟁을 통한 공공재 공급의 효율은 경쟁의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조건이 동일할 때 경쟁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동일하지 않다. 2021년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6.6%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7.7%이다.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서울 본청은 78.9%인데, 전북 본청은 23.9%이다.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경기 과천시 70.7%인데, 경북 봉화군은 6.7% 수준이다(행정안전부, 2021). 인두세적 성격이 강한 보유 및 거래세의 비중이 큰 지방 세입구조상 인구와 산업 등 물적 기반에 의해 세입 여건은 크게 달라지진다. 즉, 구조적 한계로 인해 애초에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거나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는 자치단체와 재정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불균형은 이제 공공재 공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범주를 벗어나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07개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이러한 현실에서 수직적 재정형평화와 수평적 재정형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재정조정제도가 활용된다.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 다양성과 차별성 그리고 경쟁에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 최저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보장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이 유사하게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의 고도화에 따라 지방재정의 기능은 이제 과거 Musgrave(1959)가 국가기능이라고 정의했던 기능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포함한다. 이제 국가는 경제안정화, 자원배분,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을 단독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실행한다. 대표적으로 국가 최저 수준의 동일한 공공재 공급은 국가의 기능이었고 하나 현재 기초생활생계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가정양육수당 등 주요 재분배 기능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조세경쟁, 재분배, 조세행정 규모 및 업무에 있어 열세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세수의 신장성이 높은 세목이 대부분 국세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Musgrave & Musgrave, 1989). 더군다나 단체자치에서 지방자치가 출발할 경우 조세자율권이 지방에 이전되지 않아 자주재원 확보만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국가 최저 수준의 공공재 공급이 가능하게 하고, 중앙 또는 상급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상급 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사무 처리에 따른 비용의 측면을 넘어서 상급 정부와 하위 정부 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목적도 함께 갖는다.

종합하면 자치단체 간 세입과 세출의 여건이 상이하고 공정한 경쟁의 조건이 마련되지 못 해 재정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중앙과 지방이 연계해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은 중앙과 비교해 재정 여력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의 주어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 간 재원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재원의 보장과 불균형의 조정이 라는 두 가지 목적 하에 재정이전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2. 재정조정의 목적과 방식

1) 재정조정의 목적과 방식

정부 간 수직적 불균형과 수평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단은 각국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조정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 세원배분⁶⁾과 재정이전 방식이 주로 활용되는데 이하에서는 재정이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이 지방으로 또는 광역이 기초로 재정을 이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갖는다. 첫째, 세원 편중 현상의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공공재 공급을 유도하는데 있다. 자치단체별로 세원의 편차가 클 경우 공공재 공급의 안정성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세입 편차가 심하여 공공재 공급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정을 이전한다. 둘째, 외부효과의 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공공재 공급의 외부효과(과소공급 또는 과잉공급)는 다양하게 발생된다. 외부효과는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가가 외부성의 시정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재를 공급한다. 기초와 광역의 관계도 유사하다. 셋째, 이 연구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재정형평화 기능이다.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고 지방과 지방 간 수평적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이전이 활용된다(Oates, 1972; Bhal & Linn, 1994; Bhal 2000; 김현아, 2007).

재정이전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다는 중복적인 목적을 갖는다(윤태섭, 2020). 재정이전의 방식은 통상 보조금(grants)이라 일컬어지며 보조금의 운영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Fisher(2007)는 보조금을 사용조건(Conditions of use), 배분방식(Allocation method), 매칭여부(Matching), 보조금 규모의 한정성(Limit in grant size)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사용조건에 따라 특정보조금(Categorical grants)과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으로 구분된다. 특정보조금은 특정 목적이나 사업에 배분되어야 한다. 일명 꼬리표가 붙은 보조금(Earmarked grants)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일반보조금은 사용용처를 정하지 않고 지원되는 재원으로 무조건부 보조금(Non-earmarked grants)이라고도 한다. 배분방식은 크게 공식(Formula)과 사업(Project)으로 구분된다. 공식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등을 활용해 배분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사업에 따른 배분 방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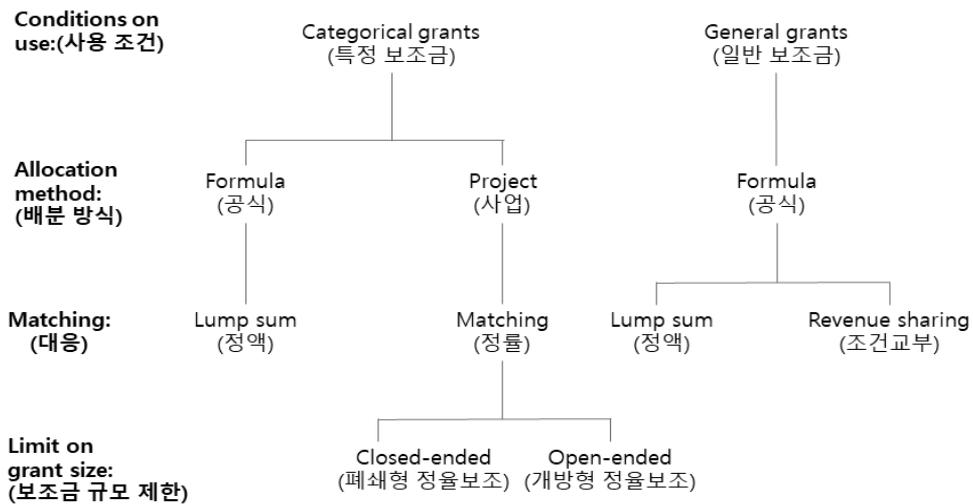
6) 세원배분은 전술한 Musgrave(1959)의 기능배분에 따른 적절한 세원배분 이론을 중심으로 Boadway(1993), Bird & Mintz(2000) 등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대표적으로 누진적 조세의 형태인 소득세 등은 중앙이, 누진세가 약한 소득세나 간접세 등은 광역이, 재산 또는 자산, 수익자 부담 등에 과세하는 것은 기초수준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 중 일부를 배분 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특정보조금과 일반보조금 모두에 활용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배분시 적용하는 재정력 지수 또는 국고 보조사업이나 시·도비 보조사업 배분시 활용하는 차등보조 등이 해당된다. 후자는 각 부처의 주요 사업 - 예를 들면 환경부의 에너지 그린정책 사업과 연계된 사업 중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행하는 에너지 정책 - 에 국비 또는 시·도비를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예라 할 수 있다.

매칭과 관련해서는 정액교부, 정률교부, 조건교부가 사용된다. 정액교부는 보조금 배분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반면 정률교부는 중앙과 광역, 기초 간 정해진 부담률에 따라 배분하는 형태이다. 조건교부는 세입확보 노력 등 자치단체가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등을 고려해 배분되는 형태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특정 보조금의 폐쇄형 정율보조(Closed-ended)는 자치단체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보조액의 상한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반면 개방형 정율보조(Open-ended)는 자치단체의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수준의 보조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그림 2-2〉 Fisher의 보조금 종류



자료 : Fisher, R. C(2007).,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 Thomson South Wes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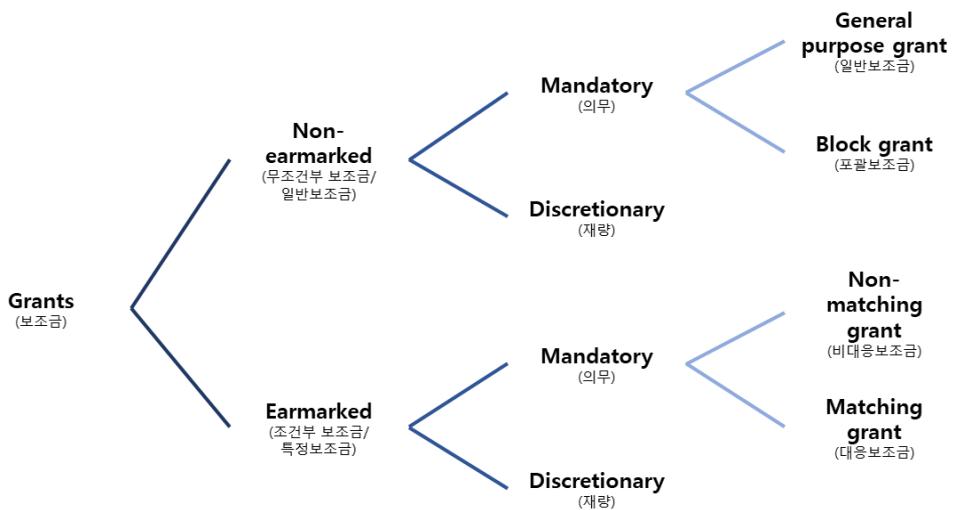
Fisher(2007)의 보조금 유형 분류와 함께 OECD(2006)에서도 이전재원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 명칭만 다를 뿐 Fisher(2007)의 분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OECD는 이전재원을 크게 무조건부 보조금과 조건부 보조금으로 나누며, 공여의 방식으로 의무와 재량으로 구분한다.

의무적 공여는 법정경비와 같은 맥락에서 반드시 법령 등에 의해 이전해야 하는 보조금이고, 재량적 공여는 공여자가 법적인 의무를 질 필요는 없으나 재정관계상의 목적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여하는 재원이다.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육세 전액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은 의무에 해당되는 반면, 교육청 연계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재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무조건부 보조금중 법령에 따라 재정을 이전함에 있어 다시 일반보조금과 포괄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보조금의 용도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이 지원되는 방식이며, 후자는 재정 이전을 받는 하위 정부가 일정 부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조건부 보조금 중 법령에 따라 재정을 이전함에 있어 다시 비대응 보조금과 대응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비대응 보조금은 정액 보조금과 유사하며 대응보조금은 정률 보조금과 유사하다.

〈그림 2-3〉 OECD의 보조금 종류



자료 : OECD.(2006),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Decentralized Public Spending, Working Paper No 3.

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⁷⁾

7)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검토에 앞서 OECD 주요 국가의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간단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조정제도는 국가마다 정부 간 기능의 차이, 중앙과 지방 간 관계의 역사 등 제반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다양성은 각 국가별 중앙-지방 간(연방국가인 경우 연방-주-지방) 자주재원(세입) 규모의 국가별 차이와 국가내에서 자주재원과 세출부담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기준 국가별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방정부인 미국은 연방이 67.1%, 주가 19.8%, 지방이 13.6%를 차지한다. 캐나다는 연방이 49.4%, 주가 40.3%, 지방이 10.3%를 차지한다. 독일은 연방이 67.3%, 주가 23.7%, 지방이 9.0%를 차지한다. 단방국가의 경우 프랑스는 중앙이 86.5%, 지방이 13.5%를 차지하며, 영국은 중앙이 95.1%를, 지방이 4.9%를 차지한다. 옆 나라 일본은 중앙이 76.1%, 지방이 23.9%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은 중앙이 64.3%, 지방이 35.7%를 차지하고, 노르웨이는 중앙이 83.8%, 지방이 16.2%를 차지하며, 핀란드는 중앙이 76.9%, 지방이 23.1%를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방국가의 중앙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다. 그러나 연방국가 내에서도 연방-주-지방 간 세입 비중의 차이가 발생된다. 이러한 특징은 단방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출 구조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미국은 연방이 51.6%, 지방이 48.4%를 차지한다. 캐나다는 연방이 31.9%, 주가 47.4%, 지방이 20.7%를 차지한다. 독일은 연방이 59.9%, 주가 22.8%, 지방이 17.3%를 차지한다. 단방국가의 경우 프랑스는 중앙이 80.6%, 지방이 19.4%를 차지하며, 영국은 중앙이 75.9%를, 지방이 24.1%를 차지한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은 중앙이 49.9%를 지방이 50.1%를 차지하고, 노르웨이는 중앙이 67.0%, 지방이 33.0%를 차지하며, 핀란드는 중앙이 60.7%, 지방이 39.3%를 차지한다.

국가별 내재화된 정부 간 세입의 구조적 차이와 국가내 정부 수준간 세입 세출의 차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 간 재정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의 형태와 규모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캐나다의 경우 2004년 기준 보조금 총액은 754억불 규모이고, 이중 특정보조금이 423억불로 56.1%를, 포괄보조금이 331억불로 43.9%를 차지한다. 이 중 주 정부 보조금은 387억불로 전체 보조금의 51.3%를 차지하고, 지방정부 보조금은 367억불로 48.7%를 차지한다. 주정부 보조금은 특정보조금이 18.6%인 71억불 규모이고, 포괄보조금이 81.4%인 315억불 수준이다. 지방정부 보조금은 특정보조금이 95.7%인 351억불 규모이고, 포괄보조금이 4.3%인 15억불 수준이다. 단방국가 중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일본의 경우 2010년 기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보조금 총액은 38조엔 규모이다. 이 중 특정보조금이 21조엔 규모로 전체 보조금의 54.9%를 차지한다. 반면 포괄보조금은 17조엔 규모로 전체 보조금의 45.1%를 차지한다. 특정보조금중 법적 의무적 경비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19조엔 규모로 88.2%를, 재량적 경비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2조엔 규모로 11.8%를 차지한다. 포괄보조금은 법적 의무적 경비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100%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2006년 기준 보조금 총액이 682억유로이며, 이 중 특정 보조금이 130억 유로로 19.1%를 포괄보조금이 552억 유로로 80.9%를 차지한다. 특정보조금은 다시 법적 의무적 경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93억 유로, 재량적 경비지원 보조금이 37억유로로 구성된다. 포괄보조금은 일본과 동일하게 법적 의무적 경비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10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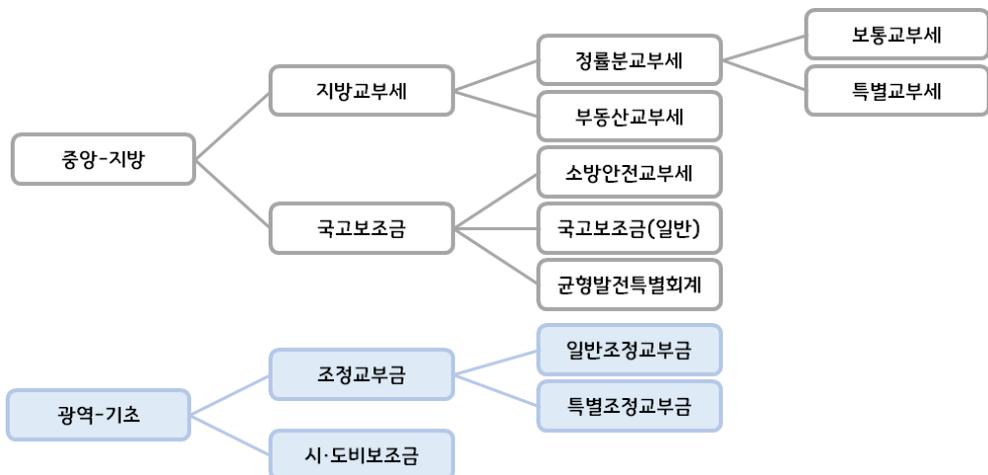
이렇듯 정부 간 재정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국가별 비교를 통해 단순히 어느 국가의 정부 간 재정제도가 우월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OECD국가 중 주요 단방국가의 중앙-지방 간 세입 구조를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인 중앙(8) 지방(2)의 구조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프랑스, 영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국가의 평균 세입 구조는 중앙이 80.5%, 지방이 19.5% 수준에 있다. 중앙의 세입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영국으로 95.1%이고, 지방의 세입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스웨덴으로 35.7%이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기능 등에 의해 각 국가에 맞는 효율적인 세입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정부 간 세출에 대한 부담 비중도 국가별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현재 기준 중앙과 지방 간 세출 비중은 중앙이 40.8%, 지방이 45.0%이다. 나머지 14.2%는 교육재정이다.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하면 지방의 세출 비중은 59.2%이다. OECD국가 중 주요 단방국가의 평균 세출 비중을 살펴보면 중앙이 66.8% 지방이 33.2%를 차지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자주재원 대비 자체세입의 규모가 작다. 따라서 단순히 중앙과 지방 간 세입 규모 차이의 문제가 아닌 하는 일 또는 역할 대비 자주재원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세입 대비 세출의 비중이 월등히 크다 보니 중앙으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정부 간 재정 지속성을 심화시켜 자치재정권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 하겠다. 이전재원의 양을 줄이기 어려운 조건이라 한다면 장기적으로 포괄보조금의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정부분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지방의 재정 자율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전술한 Fisher(2007)와 OECD(2006)와 유사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분권이 두 차례 진행되면서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는 매우 복잡해졌다. 지방소비세 10%p 인상분에 대한 상생기금의 연장, 3.6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이양,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설치 등 다양한 목적을 갖는 제도들이 설치되었다.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갖는다. 여기에 더해 재정조정제도가 아닌 지방의 자주재원도 지방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예가 지방소비세이다. 지방소비세는 광역의 자주재원인데, 광역자치단체로 배분하는 시기부터 최종소비지지수를 차별화 하여 수평적 균형을 도모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단체는 이전된 지방소비세의 30%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전출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방재정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전술한 현행의 제도들은 이하에서 논의하게 되는 정부 간 재정조정 기본적인 틀에 포함시키지 않고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인 정부 간 재정관계의 원칙에서 볼 때 재정조정제도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핵심 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정조정제도로는 중앙과 지방 간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고, 광역과 기초 간에 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있다. 이고 이들은 다소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정률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며,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조정교부금도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분류된다.

〈그림 2-4〉 우리나라 재정조정 제도



〈표 2-1〉 재정조정제도별 비교

구분	중앙-지방		지방-지방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근거 법령	· 지방교부세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 지방재정법 제29조	·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목적	· 자치단체 자원보장 · 재정력 불균형 완화	· 국가목적 사업의 이행 ·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특정사업 또는 지출지원	· 자치단체 자원보장 · 재정력 불균형 완화	· 광역 사업의 이행 ·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특정사업 또는 지출지원
재원 구성	· 정률분: 내국세 총액의 19.24% - 보통교부세 : 97% - 특별교부세 : 3% · 소방안전교부세 : 담배·별산세액의 20% ·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전액	·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 시·도세의 일정률 (지방교육세 제외) - 자치구는 조례에 따라 - 시·군은 인구에 따라 50만 이상 47%, 미만 27%	· 시·도의 일반재원
용도	·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용	· 용도지정 - 특정한 지원대상 사업 재정 수요 총당	· 시·군의 일반재원	· 시·도가 지정하는 용도 · 국고보조에 따른 일부 부담
배분 방법	· 자치단체별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배분	· 지원사업별 사업 우선 순위 등에 의거 지원	· 인구수 · 징수실적 · 재정력 역지수	· 시·도비보조기준을 적용 · 시·도 시책사업은 지원 사업별로 자율결정
성격	자주재원	지정재원	자주재원	지정재원

자료 :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자료 재작성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공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재원이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이전에 대해 추가적 재정부담을 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교부세가 이전된 뒤에 사용은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방교부세는 일반보조금 형식을 따른다. 조정교부금도 「지방세법」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공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이전되는 재원이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조정교부금 이전에 대해 추가적 재정부담을 할 필요가 없으며, 조정교부금이 이전된 뒤 사용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진다.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같은 형태이다. 그러나 배분 산식에 있어 자치단체의 징수실적 등이 반영된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모두 하위 정부의 재정을 보전하는 수직적 형평성과 자치단체 간 최소수준의 재정 균등화를 도모하는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나 광역 사무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고,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재원을 이전한다. 다만

이전된 재원은 주어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중앙-광역-기초가 일정부분 재원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정률보조 형식을 취한다. 정률보조는 대체로 재원의 보장기능이 강하여 수직적 형평성에 초점을 두는 수단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중 일부는 차등보조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차등보조는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중을 가감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간 수평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김정완, 2019; 박지현, 2020).

3) 재정조정제도의 한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지방-지방 간 재정관계 속에서 재정이전 방식을 통한 재정조정 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된다. 경제학적 맥락에서 정부 간 재정이전은 상급 정부와 하급 정부 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동급 자치단체 간 수평적 불균형을 완화하며, 역외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Jun Ma, 1997; Bahl, 2000; Bird & Smart, 2002). 그러나 한편으로 이전재원의 확대는 중앙 또는 상급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심화시킨다는 한계에 직면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역사적으로 정부계층간 권한과 책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분권을 경험해 보지 않은 국가에서의 재정의존성 심화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한다(Randall & Tadashi, 2005). 게다가 하나의 재정이전제도가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크다(Bergvll & Charbit & Kraan & Meka, 2006).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모두 재정보전기능과 재정균형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재정조정을 위한 재정이전제도는 순효과와 역효과가 공존하며 아직도 많은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이하에서는 재정조정제도가 갖고 있는 주요 한계를 재정책임성과 재정력 역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 스스로 자치권을 행사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자치권은 행정, 재정 등 전반에 연계되어 있다. 재정은 자기부담 하에 세입을 확보해 지출할 때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이현우, 2010). 재정조정을 위한 재정이전은 세출의 책임성과 세입확보의 노력성을 낮춘다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 등의 문제에 의해 또는 자원 배분 수단의 부적절성 등에 의해 재정형평화가 오히려 재정상태의 역전을 불러오기도 한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원이다. 일정한 공식에 의해 자치단체로 재정이 이전되면 이는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재원이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세입에 있어서 부담이 없이 세출의 자율성만 커지게 된다. 증세라는 부담 또는 지방세 징수 실적 증진이라는 노력을 할 유인이 작아지게 된다. 조세의 가격효과가 존중되어지지 못한다. 두 제도가 공통적

으로 사용하는 배분 기준은 재정력지수이다.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측정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형태이다. 물론 조정교부금은 재정력지수가 반영되는 수준이 30%밖에 되지 않으나 재정력지수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다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정력지수가 낮을수록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정을 이전해 주는 중앙 또는 광역은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대략적으로 파악 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합리적인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재정수요를 늘리거나 기준재정수입을 줄여야 한다. 즉, 세입확대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고, 세출을 늘릴 유인만 있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정재진, 2018; 2020a).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정환상(fiscal illusion)과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Tanzi, 1996).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무조건부 보조금의 지나친 형평화에 대한 관심은 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가용재원의 역전 현상을 발생시킨다. 단적인 예로 2020년 경기도 기본소득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재정력지수가 낮은 자치단체가 1인당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력지수가 27위였던 포천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재정력지수가 30위였던 연천군은 1인당 2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재정력지수가 5위인 하남시는 1인당 5만원을 지급했다(정재진, 2020b).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대부분 특정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반보조금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비해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다. 그러나 보조금제도 역시 실질적인 현장의 정보는 지방이 갖고 있고, 재정을 지원해 주는 중앙 또는 광역은 지방의 현장을 정확히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김현아, 2008). 특히 다양한 목적을 갖는 제도의 다원화 문제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수직·수평적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배분 시 차등보조율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인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적 측면은 크게 고려되지 못한다. 결국 1차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곳이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을 더 받게 됨에 따라 재정지원을 많이 받는 자치단체는 더욱더 열심히 세입을 확보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차등보조율을 균형이라는 맥락에서 확대하게 되는 재정력 역전 현상이 발생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만수(2013)는 복지사업 등에서 실행되고 있는 차등보조율의 적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정력이 역전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차등보조율은 재정자주도를 활용하는데, 현 상태에서의 재정자주도를 고정된 것으로 인지

8) 현행 지방교부세는 전국 자치단체를 유형화 하여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를 측정하여 도출된 재정력지수를 전적으로 활용한다. 조정교부금은 인구수 50%, 징수실적 20%, 재정력지수 30%가 활용되어 지방교부세에 비해 그나마 도덕적 해이의 기회가 축소될 수는 있겠으나 재정력지수를 중복사용함에 따라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고, 반복 사용할 경우 최종에 가서 재정력이 역전될 수 있다. 최병호·이근재·정종필(2008)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보다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우리나라 재정제도들과의 관계를 서로 얽혀 있고, 다양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나친 재정형평성에 대한 관심은 재정의 효율과 재정의 역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제2절 재정격차와 재정형평성

1. 재정격차와 발생원인

재정격차(fiscal disparities)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다양한 정의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재정격차 또는 재정상태격차(fiscal condition disparities), 재정력격차(fiscal capacity disparities)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그 의미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격차는 동일하다. 즉, 무엇을 가지고 측정했는지에 대한 차이 - 예를 들면, 세입과 세출 둘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또는 가용재원이나 채무 등 부담에 초점을 두느냐 - 에 따라 달라질 뿐 격차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임성일, 1997; 권오성 2004; 오시환·한동효, 2009).

재정격차는 세입과 세출 측면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입여력이 높은 반면 세출부담이 작은 자치단체는 필요한 공공재를 적정 배분하고도 잉여재원이 발생된다. 반면 세입여력은 낮는데, 세출부담이 매우 큰 자치단체는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된다. 전자는 재정여력이 높다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재정여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정여력이 높은 자치단체의 세입규모가 재정여력이 낮은 자치단체의 세입규모 보다 높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대체적으로 앞의 논리가 맞는 경우일지라도 확신할 수는 없다.

재정격차는 세입과 세출로부터 발생하는 종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만약 세입과 세출 한 측면만 가지고 비교할 경우 격차의 의미는 매우 중립적이다. 절대적 세입규모는 작을 지라도 재정투입의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세입규모는 클지라도 세출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입과 세출을 모두 고려한 격차의 의미는 중립성을 넘어 불균형이라는 의미로 진화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결과로서의 상태이다.

아래 그림에서 재정상태가 가장 양호한 곳은 B이고, 열악한 곳은 D이다. A와 C의 세입과 세출 규모가 동일할 경우 이는 균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하나의 국가에서 B형태와 D형태의 자치단체가 발생하는 원인은 역시 세입과 세출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림 2-5〉 재정불균등이 발생하는 조건

세 입 규 모	(큼)	B	C
	(작음)	A	D
		(작음)	(큼)
		세 출 수 요	

재정격차가 발생하는 원인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Ladd & Yinger(1989)는 재정격차가 발생하는 조건을 크게 세입과 세출 측면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세입 측면에서의 격차는 재정력격차와 세입확보 노력의 격차에 의해 발생되고, 세출 측면에서의 격차는 공공재에 대한 수요 격차와 공공재 생산비용의 격차에 의해 발생된다.

〈표 2-2〉 재정격차 발생 원인

구분	격차요인	내용
세입격차	재정력(fiscal capacity)	세입으로 연계되는 경제·인구·산업 등 물적 기반과 지역의 소득, GRDP, 조세수출율 등
	세입확보노력(revenue effort)	징수실적, 미납액율, 1인당 GRP, 탄력세율의 행사 정도
세출격차	지역주민의 공공재 수요(need)	인구 통계적 속성(성별, 나이, 소득 등) 등
	공공재 생산비용(cost)	세출로 연계되는 사회·경제·지리·환경적 조건 등

자료 : 박근후.(2019).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해소방안. 국회예산정책처. 참조 재작성

재정격차 발생원인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노력해 극복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세입확보노력 등은 일정부분 극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그 외에 재정력, 공공재 수요, 공공재 생산 비용은 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한다고 해도 쉽게 해소하기 어렵다. 이러한 재정력격차는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역대 모든 정권(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부세율의 인상, 분권교부세 설치,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지역소멸기금 설치, 균특회계(광특회계, 지특회계) 설치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노력은 자원보전이 아닌 결과의 형평에 치중하였고(윤태섭, 202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의 유인을 추동하지 못하였다. 재정조정제도가 단순히 세입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최소한 비슷한 세율수준으로 동등한 수준의 공공재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Ladd & Yinger, 1994)는 당초의 목적 가치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였다.

2. 재정형평성과 재정력 역전

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및 재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맥락에서 형평성은 수단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로서의 의미로 접근할 수 있다. 즉, 종속적인 맥락에서의 형평은 투입 측면과 과정 측면이 강조되는 균등, 평등과는 다른 의미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재정형평성에 대해서는 재정격차 해소 방안 연구와 함께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분석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 이미애(2014), 황소하(2017)의 연구에서는 학문별로 유사하게 정의되는 평등, 사회적 정의, 기회균등, 공평성 등을 망라해 제시한 뒤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정의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가치가 내포된 것으로 정의한다. 황소하(2017)는 이미애(2014)의 연구에 더해 수단적 측면을 포함하여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구분해 정리하였다. 수직적 형평성은 재원배분 과정에 대한 고려가 낮은 반면, 수평적 형평성은 재원배분의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해외 연구의 경우 Musgrave(1984)와 Ladd & Yinger(1994)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세율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공공재가 공급되는 상태가 재정형평성을 확보했다고 정의한다. 이들의 논리는 전술한 국내연구와 동일하다. 즉, 재정이 형평화 된 상태를 전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조정제도는 중앙-지방 간 재정형평화와 지방-지방 간 재정형평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이를 통해 재정형평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재정형평성에 대한 정의와 수단에 대해서는 형평화가 필요한 이유와 수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수준에 대한 정의는 쉽지 않다. 최근에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의 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형평성을 균형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를 인상 하였더니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이 낮아졌다고 하며, 이를 국가가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기능과 재정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균형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한편에서는 재정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이양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이전된 재정의 양이 적다고 하여 이를 조정해 달라는 것은 원점을 돌게 만들 뿐이다.

재정형평성의 범주 내에서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재정분권논의와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수평적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환(2016)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획일화 하는 것이 재정형평성이 아니라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자치단체 간 재정력 형평은 공공재 공급비용, 자치단체의 재정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배분되는 것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재정형평화의 수준과 관련해서 Akinson(1981)과 Plotnick(1985)은 최소한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형평성은 최초의 순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형평성이 타당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하여 해석하면 최소한 동일한 세목을 구성하고 있는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은 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배분이 되는 것이 형평한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균등은 크게 절대적 균등(absolute equal)과 비례적 균등(proportional equal), 그리고 한계적 균등(marginal equal)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균등은 자치단체별 지역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면서 희생한 크기가 균등해야 함을 말한다. 비례적 균등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희생한 비율이 균등해야 함을 말하고 한계적 균등은 지역주민들이 모두 세금을 납부한 결과 소득의 크기가 균등해야 함을 말한다(김우철, 2021). 물론 전술한 균등의 원칙은 현 조세체계상 실현불가능하다.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 진공상태에서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희생의 순위와 편익의 순위는 같아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정력 역전 현상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재정력 역전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을 해결하고,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정조정제도의 시행이 당초의 상태를 위배한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Akinson(1981)과 Plotnick(1985)의 정의에 입각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의 순위가 역전된다면 재정력이 역전되었다고 본다.

재정력 역전은 재정형평화를 위한 노력이 과도해질 경우 발생된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별 세입과 세출 여건이 다양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공공재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가 있다. 재정수요 대비 재정수입이 작을 경우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재정수요를 충당할 만큼의 재정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배분의 주체와 방식이 다양한 제도들이 현 시점에서의 부족 재원을 인식해 중복 지원을 하다보면 기준재정수요 대비 더 많은 재원이 이전된다. 만약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할 만큼 재정이 지원되어 모든 자치단체가 기준재정수요 대비 기준재정수입의 부족액이 0이 된다면 이는 수평적으로 형평화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재정력 역전 현상은 발생되지 않는다. 만약 기준재정수요를 넘어서서 이전되는 재원은 자치단체별로 당초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동일 비율로 증가될 때 재정형평화가 달성된다. 만약 이 비율이 동일하지 않다면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고, 비율의 증가폭이 당초의 순위를 위배할 경우 재정의 역전 현상이 발생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표 2-3〉 재정형평성과 재정력 역전에 대한 정의

구분	정의
재정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별 공공재 공급비용, 특수 수요 등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공공재 공급이 가능토록 기준재정수요 대비 수입을 맞추어 주는 것 - 단순히 이전되는 재원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공공재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이전을 통해 지수상 기계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
재정력 역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공공재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자원만큼을 확보해 기준재정수입/기준재정수요의 값이 1이 된 상태에서 추가 이전되는 재원이 당초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 대비 동일 비율로 증가되지 않거나 증가된 비율이 당초의 재정력 순위를 보전하지 못하는 상태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 방법

1. 선행연구의 검토

재정조정제도의 효과가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방재정 분야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각 정권별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재정분권 논의는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재정조정제도 중 광역과 기초 간의 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을 대상으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검토도 이 분야에 한정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조정교부금 형평화 효과 분석

조정교부금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조정교부금 제도 변화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가장 최근에 조정교부금 제도가 변화한 시점은 2016년이다. 2000년 재정보전금이 도입되었고, 2014년 배분산식을 변경해 2015년부터 조정교부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경기도에서만 적용되었던 불교부단체 우선보전제도의 단계별 폐지가 제도화되었고 2019년 우선보전제도의 폐지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검토는 제도의 현행화 차원에서 2016년 이후로 한다. 한편 조정교부금은 2015년부터 명칭이 통일되었다. 2014년까지는 시·군은 재정보전금으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으로 이원화 되었으나 2015년부터 통합되었다. 제도의 통합은 연구의 양 증가를 가져왔다. 이하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주제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제외하고, 시·군조정교부금을 대상으로 형평화 또는 역전 등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조기현(2016; 2018)은 조정교부금 제도가 변화되는 시점마다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6년 연구에서는 당초 재정보전금 중 불교부단체에 이전하던 특별재정보전금 제외와 반대 급부로 경기도가 마련한 우선보전 90% 적용에 따른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보전 90% 적용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기능이 왜곡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방교부세와의 관계에서 지방교부세의 한계효과가 크게 발휘되고 있어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기능 왜곡효과가 상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8년 연구는 2016년부터 도입된 우선보전제도가 16년 90%, 17년 80%, 18년 70%, 19년 폐지됨에 따라 나타나는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배분제도의 폐지는 순위 변동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도 내 시·군의 세입격차 완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기초단체간 세입격차 완화는 지방교부세의 경기도 유출을 발생시켜 비경기도권 시·군의

지방교부세 수입을 확충하는데 기여해 경기도와 비경기도 시·군간 세입 격차가 완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배분 시 재정여건 반영비율을 높일수록 재정형평성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황소하(2016)는 2014년 조정교부금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를 연계해 자치단체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정교부금 및 보통교부세는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대부분 순위변동효과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체재원의 분포와는 반대방향으로 격차를 확대시키는 재정력 역전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정교부금을 주제로 한 연구 중 유일하게 재정력 역전을 설명한 연구이다. 재정력 역전 현상은 보통교부세 제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조정교부금 제도개편 이전보다 이후에서 더욱 가속화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지은·전지성·장봉진(2018)은 정부 간 재정형평화를 목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제도를 대상으로 각각의 제도 변화로 인한 형평화 효과 변화를 검증하였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모두 거시적인 맥락에서 형평화 효과를 유도하고 있으나 광역·기초 수준간 형평화 효과는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방교부세 산정시 조정교부금 배분액이 포함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두 재원 모두 재정조정제도로써 정책변화에 부합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제도 변화 이후 몇 년간은 형평화 효과로 연계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지자체의 자체재원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윤조·이용모(2019)는 2017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개정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액기준에서는 기존 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성을 악화시키나 개정된 배분기준에서는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인당 세입기준으로는 기존 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키고, 개정된 배분기준은 재정형평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불교부단체에 90%까지 적용되던 우선보전율을 10%씩 낮춰 가며 실시한 시뮬레이션분석 결과, 우선보전율의 변화가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들의 분석 대상은 전국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며 추진한 연구와 특정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미시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로 구분된다. 분석 자료 역시 시계열 분석 방법과 단년도 분석방법이 모두 활용되었다. 분석의 방법은 지니계수 분석과 순위변동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혹 변이계수 방법이 활용되었다. 시뮬레이션은 주로 현재 상태(지방세 또는 1인당 지방세)에서 재정조정제도를 산입하면서 발생하는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표 2-4〉 조정교부금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분석 자료 및 방법
이윤조·이용모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2016년 자료 - 경기도 한정 - 지니계수, 변이계수, 순위변동효과 - 자치단체 세입 총액과 1인당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이전됨에 따른 형평화 효과 비교 분석
최지은·전지성·장봉진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2016년 자료 - 전국 분석 - 지니계수 - 자체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이전됨에 따른 형평화 효과 비교 분석
조기현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결산치 자료 - 전국 분석 - 지니계수 분해 기법 - 자체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이전됨에 따른 형평화 효과 비교 분석
황소하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년도(2015년 결산) 자료 - 경기도 한정 - 지니계수 분해기법 - 자체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이전됨에 따른 형평화 효과 비교 분석
조기현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에서 교부세과에 제출한 엑셀 통계 중 2014년도 결산치 - 전국 분석 - 가중변이계수, 지니계수 - 자체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이전됨에 따른 형평화 효과 비교 분석

종합하면 황소하(2016)와 이윤조·이용모(2019)의 연구가 순위변동에 의한 재정력 역전을 설명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적용하여 순위변동 효과를 살펴 보고는 있으나 역전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는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떠한 이전재원도 재정력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 도비보조금 형평화 효과 분석

도비보조금은 실정법 상의 용어⁹⁾이고, 하나의 제도 안에 다양한 보조제도가 있다¹⁰⁾는 특징과 보조금 자체가 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중앙 단위 사업별 보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나마 최근 들어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시·도비보조금 제도 운영상에 있어 발생하는 수직적 재정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본래 보조금제도가 수평적 재정형평화 보다는 수직적 재정형평화를 위해 사용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범(2019b)은 1단계 재정분권 이후 재정이전이 광역위주로 집중되고, 광역의 잉여재원은 시·군에 의무적 매칭을 부담하게 만드는 보조금 확대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시·도비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의 재정 관계에서 조건부 보조금의 확대와 보조율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 대한 지방대응 자금의 증가로 이어져 예산집행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광역-기초 간 시도보조사업 심의기구 신설을 통해 재정운영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휘문(2020)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도비보조금의 보조율 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준보조율제도의 개선, 기준보조사업과 차등보조사업의 조정, 차등보조율 설정 방식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준보조율은 도지사가 증액할 수 있는 보조율의 한계를 60%로 한정하고, 현재 기준 보조율 30% 이하로 지원하는 사업을 모두 최소 30%까지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기준 보조사업과 차등보조사업은 기준보조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 차등보조사업을 최소 35%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차등보조율 설정 방식은 현재 인건비 총당지수와 재정력지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이후의 재정력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장욱·이채영·이현우(2021)는 재정조정제도 중 보조금제도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비

9) 지방보조금은 학문적·이론적 개념이 아닌 실정법상의 용어로 과거 민간이전경비에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합쳐진 개념이다(김성주·윤태섭, 2018; 이장욱, 2021).

10) 행정안전부(2021) 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대상별로 공공단체 보조와 민간보조로, 내용별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되며, 공공단체 보조는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세분화 되고, 민간보조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로 나누어진다

보조금 운영 실태 분석 결과 도비보조사업 선정 및 운영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상 적정수준에서 보조사업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과 현재 형해화 되어 있는 경기도 도비보조금조례의 개선 그리고, 차등보조율 산정과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지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직접적인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지 않았고, 대부분 보조금 규모의 변화 추세, 또는 단년도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위, 실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 등을 통해 운영상 개선점을 도출하는 방식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2-5〉 도비보조금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분석 자료 및 방법
이장욱·이채영·이현우 (2021)	- 2008-2019년 자료 - 전국 광역·기초 재원별 세입결산 자료 비교 분석 - 지방자치단체 필수경비를 제외하여 가용재원 구조화 후 자치단체별 가용재원대비 보조금 추계 분석
라휘문(2020)	- 2016-2018년 자료 - 경기도 자료 - 자치단체별 차등보조율과 기준보조율 비교 분석 - 차등보조율을 기준보조율로 전환 한 효과 분석
이상범(2019b)	- 2019년 자료 - 전국 광역·기초 재원별 세입결산 자료 비교 분석 -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 분석

한편 이 연구가 도비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다는 맥락에서 비록 선행연구가 없을지라도 국가 수준에서의 차등보조율이 재정형평화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박지현(2020)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가 재정력 역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지니계수분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전술한 황소하(2016)의 연구와 유사하다. 분석 결과 차등보조율제는 재정력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고 재정력 역전 현상은 전체적으로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군 단위에서는 순위변동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정완(2019)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차등보조율제도가 재정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앞서 설명한 조정교부금과 달리 상관성 분석을 통해 형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즉, 국비부담률과 재정자립도간에 상관성 여부를 통해 형평화 효과를 추론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차등보조에 따른 부담도 증가 된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추진하였는데, 이 둘 사이의 상관성이 역으로 도출됨에 따라 재정 형평화 효과가 일정부분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2. 분석 방법

1) 측정 대상

재정형평성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형평화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활용한 대상은 세입 총액, 1인당 세입, 자체세입 비중 등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전술한 변수를 상수로 설정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이전됨에 따른 재정규모의 변화를 기준으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주로 변이계수와 지니계수 또는 상관관계 및 회귀 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자치단체 간 절대적 균등을 분석하는데 타당한 분석 방법이나 앞서 살펴본 이 연구에서의 형평에 대한 정의와 차이가 발생된다.

재정형평성은 결과로서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동일해 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공공재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수요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즉, 재정조정제도는 표준적인 공공재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 중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만약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세입 총액 또는 1인당 세입을 기준으로 이전되는 재정 규모를 부가하여 형평화 효과를 분석한다면 이는 공공재 공급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1인당 세입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일하다고 한다면 계수상에는 변량이 존재하지 않아 완전평등(지니계수 또는 변이계수 = 0)한 결과가 도출된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공공재 공급의 양과 공공재 생산 가격은 상이하다.

재정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측면 뿐 아니라 공공재 공급비용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의 재정형평과 역전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모든 자치단체마다 세입과 세출규모가 다른 상태에서 표준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 수요를 D_{pg} 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진 세입조건 하에서 자치단체가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체세입을 I_{lt} 라 정의한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I_{lt}-D_{pg}$ 는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 음의 값을 갖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정이전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재정력이 형평화 된다는 것은 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I_{lg}), 조정교부금(I_{ag}), 도비보조금(I_{dg})을 통해 $I_{(lt+ig+ag+lg)}-D_{pg}$ 의 값이 0 또는 양의 값을 갖도록 조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각 자치단체별 0에 도달하는 수준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을 순서대로 이전하는 조건에서 달리 나타나게 된다.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이전된 재원의 증가분은 당초 각 자치단체별 필요액인 D_{pg} 에 대한 비중으로 측정되며, 이 비중이 모든 자치단체 간 동일할 때 역전이 발생되지 않는 완전 균등 상태가 된다. 만약 이 비중이 달라진다면 특정 자치단체에게는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재정이 이전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서 재정력이 역전되었다는 것은 재정이전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차액의 순위 ($I_{lt}-D_{pg}$)가 당초의 순위와 달라질 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초 세입과 세출의 차액 순위상 1위였던 자치단체 A의 순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재정력 역전 현상은 그 대상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측정 기준인 세입(I_{lt})과 세출은(D_{pg})은 자치단체 예산서상의 세입과 세출규모가 아닌 지방교부세 산정시 활용되는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이다. 기준재정수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수입의 합이다. 그리고 기준재정수요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행정수요이다(행정안전부, 2022). 그리고 기준재정수요에 기준재정수입의 미달여부를 지수화한 것이 재정력지수이며, 이 지수를 근거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논리상 재정형평화를 위한 기준이 되는 세입 대비 세출차이의 0을 구현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에 이전된 재원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정력지수는 조정교부금 배분시 재정력 역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기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정력지수에 활용되는 기준인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의 활용은 논리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측정 방법과 자료

연구 수행을 위한 측정 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법을 필요시 이용하였으나 연도별 자료의 변화 과정을 통해 재정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정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① 기준재정수입(I_{lt}) 대비 기준재정수요(D_{pg})의 비중인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분석
- ② 지방교부세(I_{ig}), 조정교부금(I_{ag}), 도비보조금(I_{ig})을 순서대로 기준재정수입액에 추가함으로써 각 수단별 재정이전에 따른 재정력지수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재정형평화 효과를 검토
- ③ 앞의 ②를 통해 도출된 단계별 재정력지수의 순위를 기준으로 순위의 변화 현상을 분석

〈표 2-6〉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력지수의 형평화 효과 분석

구분	분석 기준	분석 방법
현 상태	I_{lt} / D_{pg}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각 제도별 지니계수, 변이계수, 순위분석
지방교부세 효과	$I_{(lt+ig)} / D_{pg}$	
조정교부금 효과	$I_{(lt+ig+ag)} / D_{pg}$	
도비보조금 효과	$I_{(lt+ig+ag+lg)} / D_{pg}$	

주. 기준재정수입(I_{lt}), 기준재정수요(D_{pg}), 지방교부세(I_{ig}), 조정교부금(I_{ag}), 도비보조금(I_{lg})

- ④ 기준재정수입(I_{lt})과 기준재정 수요(D_{pg})의 차이를 기준으로 분석
- ⑤ $I_{lt} - D_{pg}$ 가 0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이전되는 재정규모(순증분)를 기준으로 형평화 효과 분석
- ⑥ 추가로 이전된 재정의 양이 당초 기준재정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형평화 효과 분석

〈표 2-7〉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력 역전 현상 분석

구분	분석 기준	분석 방법
현 상태	$Inc = I_{lt} - D_{pg}$	제도 단계별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증가액이 발생될 경우 해당 자원과 이 재원이 기준재정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 분석
지방교부세 효과	$\Delta Inc = I_{(t+ig)} - D_{pg} > 1$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각 제도별 지니계수, 변이계수, 순위분석
조정교부금 효과	$\Delta Inc = I_{(t+ig+ag)} - D_{pg} > 1$	
도비보조금 효과	$\Delta Inc = I_{(t+ig+ag+lg)} - D_{pg} > 1$	

주. ΔInc 는 재정력지수 1을 초과하는 액 또는 비중

분석방법은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와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의 연도별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제도별로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재정력지수가 1이 넘어선 이후부터는 기준재정 수요 대비 증가율을 분석함으로써 재정력 역전 현상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지니계수는 원래 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다. 인구를 누적화 하여 소득이 평등할 경우 누적소득 비율은 비례적으로 증가되나 실제 소득은 비례적으로 증가되지 않는다. 이론상 소득의 평등 수준과 실제의 소득수준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누적된 면적의 크기로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지수상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완전 평등한 상태를 의미하며, 1로 갈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한다. 지니계수에 대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Gini = \frac{1}{2\bar{X}} \frac{1}{n(n-1)} \sum_{i=1}^n \sum_{j=1}^n |X_i - X_j|$$

변이계수는 관측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관측값 간의 산점도를 수치로 전환한 것으로 관측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불평등 수준을 측정한다(이윤조·이용모, 2019). 변이계수도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해석도 지니계수와 동일하다. 변이계수 산식은 다음과 같다.

$$C. V. = \frac{\sigma}{\bar{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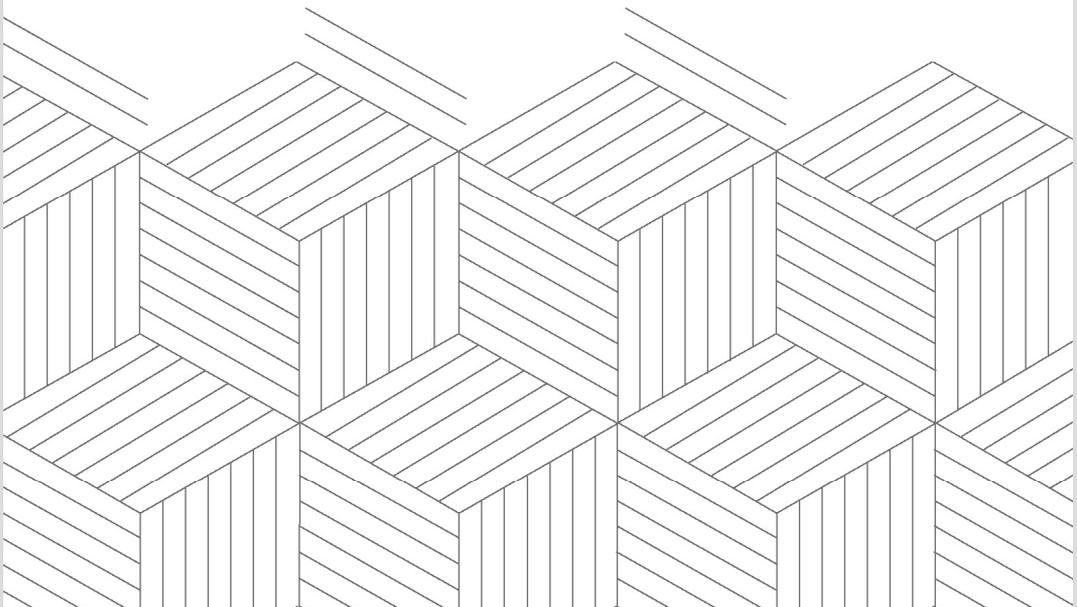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의 자료이다. 분석기간을 11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할 목적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세 체계 개편을 통해 2011년 현재 지방세목이 구성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결산자료를, 2021년은 최종예산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통계 자료는 “지방재정 365”에 공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재정형평성과 재정력 역전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준 재정수요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기준재정수요는 지방교부세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에서 시의성, 대표성, 포괄성 등의 제약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재정수요의 활용은 보편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비록 개별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 자치단체를 특·광역시, 도, 시·군으로 구분하여 범주화 했을 때 평균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체불가 지수라고 판단된다. 즉, 표준행정수요 4개 항목 16개 지표의 산식에 인구, 대상, 면적, 공무원 수, 도로, 환경 등 기본적인 자치단체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하여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정계수도 활용하고 있으며, 재정력지수의 산정은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해 도출한다는 맥락에서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제3장

도·시·군간 재정조정제도 운영 현황

- 제1절 조정교부금제도 운영 현황
- 제2절 도비보조금제도 운영 현황
- 제3절 재정조정제도의 효과 검토



제3장 도·시·군간 재정조정제도 운영 현황

제1절 조정교부금제도 운영 현황

1. 제도도입 목적과 운영 기준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에 명시된바와 같이 도관할 시·군의 재정력격차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고,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킨다.”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목적과 일정부분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정교부금은 수평적 형평화의 기능을 단일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교부세는 재원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간 형평화를 함께 도모한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제도는 당초 징수교부금제도가 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력격차를 확대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조정교부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99년까지 징수교부금 제도는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 도세징수액의 50%를, 50만 미만일 경우 도세징수액의 30%를 도세징수 처리비용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였다. 이 구조에서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고, 세원확보가 용이한 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된다. 즉, 재정상태가 양호한 자치단체일수록 징수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1999년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징수교부금은 인구와 상관없이 3%로 고정하고, 나머지 47%와 27%를 조성재원으로 하여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배분하는 재정보전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재정보전금제도 도입과 함께 마련된 배분기준은 크게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뉜다. 일반재정보전금은 전체 재원의 90%로 구성하고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와 유사하게 일정 산식을 통해 배분된다. 배분 산식은 인구수 60%, 징수실적 40%가 활용되었다. 배분산식은 이후 2006년 들어 인구수, 징수실적에 재정력지수가 추가되었으며, 산식에 포함된 항목은 비율의 조정만 있을 뿐 2022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전체 재원의 10%로 구성하고,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와 유사하게 시·군의 재정상태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재정보전금제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일반재정보전금을 다시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나누어 배분한다는 점이다. 일반재정보전금 90%를 100%로 환산하고, 이중 75%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산식에 의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 지원된다. 나머지 25%는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배분된다. 도입 초기에는 전술한 배분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인식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한계와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갈등은 특별재정보전금 배분비중을 둘러싸고 발생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0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불교부단체는 7개¹¹⁾에서 8개, 9개로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 부터는 6개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특별재정보전금이 불교부단체 9개에 배분되다가 6개 단체에 배분됨에 따라 불교부단체는 조성재원보다 더 많은 재원을 배분받게 되었다. 이에 경기도내 교부단체들은 재정보전금 제도의 개편을 행안부에 요구하였고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2014년부터 추진되었다.

재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쉽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불교부단체의 입장과 교부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달랐고, 제도 개편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불교부단체 입장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교부세를 배분받지 못하는 희생을 특별재정보전금을 통해 그나마 보전했는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소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대응하였다. 교부단체에서는 합리적이고 표준적인 산식을 통해 전국적 차원에서의 형평화가 필요하다는 대승적인 논리를 강조하며 대응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정보전금은 광역과 기초 간의 재정조정제도임을 강조하며, 불교부단체에 대한 재정보전 규모에 대한 결정권한을 도에 위임하였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불교부단체가 받는 재정보전금의 규모가 재정보전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도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불교부단체에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는 자체 분석을 추진하였다. 수원, 남양주, 용인 등 주요 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그런데 지방재정은 각 제도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경기도는 내부 시·군의 재정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의 타 시·도 유출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하였다. 경기도 내에서 교부단체로 이전되는 재정보전금이 커질수록 지방교부세 산정공식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증가시켜 지방교부세는 타 시·도로 유출된다. 따라서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보전의 규모를 가장

11) 2000년 불교부단체는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과천, 용인 등 7개이며, 2001년에는 부천시도 포함되어 총 8개 단체가 불교부단체로 전환됨. 그리고 2006년에는 화성이 포함되어 총 9개가 불교부단체였음. 2007년에는 부천시 다시 교부단체로 전환되었고 2009년부터는 안산과 안양이 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6개로 불교부단체의 수가 대폭 감소함.

크게 설정하고, 교부단체를 설득하였다. 그 결과 불교부단체에는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보전하고, 남은 재원으로 재정보전금을 배분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 경기도의 이러한 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15년부터 명칭과 산식이 변경된 체계가 만들어졌다.

2015년부터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으로 전환 되었다. 재원도 기존 일반재정보전금이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에 앞서 불교부단체에 대해 우선보전을 한 뒤 남은 재원은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를 활용해 배분되었다.

경기도의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보전을 선정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지방교부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중 지방교부세 유출 최소화의 전략은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명시된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위배한 결과가 되었다. 제도 개편이후 1년 만에 다시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개편의 핵심 화두로 자리매김하였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례에 의해 우선보전할 수 있다는 근거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 우선보전 폐지는 경과규정을 두어 2016년 90%, 2017년 80%, 2018년 70%, 2019년 전면폐지를 결정하였다. 우선보전 폐지와 더불어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이 당초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에서 인구수 50%, 징수실적 20%, 재정력 30%로 변화되었다¹²⁾. 그만큼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되었다. 2016년 8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끝으로 현재까지 조정교부금제도는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최병호·정종필, 2013; 전지성·이용환·정재진, 2014; 최병호, 2014; 조기현, 2016; 황소하 2016; 최지은·전지성·장봉진, 2018; 조기현, 2019).

〈표 3-1〉 조정교부금 주요 제도 변화

구분	주요 내용	시기
도세 징수교부금	〈도입목적〉 - 도세 징수에 따른 시·군의 필요경비 보전 〈재원조성 및 배분〉 - 도세 징수교부율 30%	1980.01.01
	〈재원조성 규모 변경〉 - 50만 이상 대도시 징수교부율 50%로 인상	1990.07.26

12) 성남, 수원, 화성시는 우선보전을 폐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년 4월 특례 삭제행위는 무효가 아니라는 기각 결정이 났다.

구분	주요 내용	시기
재정보전금	<도입목적> - 도내 시·군간 재정형평화 <자원조성> - 인구 50만 미만 : 27%, 인구 50만 이상 : 47% ※ 도세징수교부금은 3%로 통일 <자원종류> - 일반 : 재정보전금 총액의 90%, 시책 : 재정보전금 총액의 10% - 특별 : 시도조례로 정함(일반재정보전금의 25%) <배분기준> - 인구 60%, 징수실적 40%	2000.01.12
	<배분기준 변경> - 인구 50%, 징수실적 40%, 재정력지수 10%	2006.11.23
조정교부금	<자원종류 변경> - 일반 : 조정교부금의 90% - 특별 : 조정교부금의 10% - 일반조정교부금 불교부단체 우선보전비율 도 조례 위임 <배분기준 변경> - 인구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	2014.01.01
	<자원종류 변경> - 우선보전 연차적 축소 및 폐지 ('16년 90%, '17년 80%, '18년 70%, '19년 폐지) <배분기준 변경> - 인구 50%, 징수실적 20%, 재정력지수 30%	2017.01.01

2. 조정교부금 배분 현황

2021년 최종예산 기준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은 54,769억원이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4%가 증가되었다¹³⁾¹⁴⁾.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는 2021년으로 2020년 대비 37.1% 증가하였고, 2013년은 전년 대비 22.8%가 감소하였다. 2013년은 취득세 영구감면

13) 조정교부금 및 도비보조금 배분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록 1>부터 <부록 10>을 참고하기 바람. 본고 본문에서는 저술 공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원자료 중 일부만 추출하여 설명하고자 함.

14) 이 연구에서 조정교부금은 도로부터 시·군에 배분된 조정교부금 총액이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분류되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전체 재원의 10%에 해당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같이 지역간 균형이라는 목적에 따라 산식에 의해 배분되지는 않으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제6조에 따르면 광역적 사업의 추진, 재해 및 재난 대응, 도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인센티브, 재정형평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일정부분 재정균형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2015년 이전 재정보전금 당시의 시책추진보전금 자료가 부재하다. 이러한 연유로 조정교부금은 총액 개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등으로 인해 경기도가 재정절벽에 직면, 감액추경을 추진했던 해이다. 최근 11년 동안 조정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된 해는 2013년이 유일하다. 매년 증감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정교부금의 재원구성 특징 때문이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이 징수한 도세의 일부와 지방소비세의 일부가 조성재원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유사하다.

〈표 3-2〉 연도별 조정교부금 배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3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조정교부금	20,359	17,601	25,525	29,888	35,435	35,702	39,888	39,938	54,769	10.40
전년 대비 증감률		-22.8	45.0	2.5	18.6	0.8	11.7	0.1	37.1	

자료 : 지방재정 365 전문 통계 활용. 이하 분석 자료는 특별한 설명이 없을 경우 동일한 출처임을 밝힘.

2021년 최종예산 기준 조정교부금이 가장 많이 배분된 자치단체는 수원시로 3,489억원이 배분되었으며, 이는 전체 조정교부금의 6.4%에 해당된다. 반면 가장 적은 금액이 배분된 지역은 과천시로 644억원이 배분되어 전체 조정교부금의 1.2%가 배분되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수치로서 각 자치단체별 세입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년 최종예산 기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세입 총액은 12조 852억원이다. 이중 성남시가 1조 4,447억원으로 지방세입 규모가 가장 크고 화성시가 1조 1,784억원으로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반면 동두천시는 508억원으로 세입 규모가 가장 작고, 그 다음이 연천군으로 596억원 규모이다. 수원시는 1조 970억원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세 번째로 지방세입 규모가 크다.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입액 대비 조정교부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동두천시에 배분된 조정교부금이 지방세입액의 229.6%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시에 배분된 조정교부금은 지방세입액의 19.9%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원시 지방세입액 대비 조정교부금의 비중은 3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입 대비 조정교부금의 배분액 비중액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하 4장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겠지만 단순히 배분된 총액으로 조정교부금의 배분양태를 판단해서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정교부금의 비중이 지방세입액 보다 월등하게 큰 자치단체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기간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이다.

〈표 3-3〉 지방세 대비 조정교부금 비중

구분	조정교부금 배분액		지방세입액		지방세 대비 조정교부금 비중	
	단체	배분액(억원)	단체	배분액(억원)	단체	비중(%)
상위 5개 단체	수원	3,489	성남	14,447	동두천	229.60
	고양	2,967	화성	11,784	가평	217.70
	성남	2,879	수원	10,970	연천	212.70
	용인	2,765	용인	9,705	양평	154.70
	남양주	2,760	고양	6,853	여주	103.80
하위 5개 단체	구리	1,144	구리	1,270	수원	31.80
	오산	1,096	양평	1,017	평택	29.90
	안성	1,077	가평	635	용인	28.50
	의왕	945	연천	596	화성	21.30
	과천	644	동두천	508	성남	19.90

한편 1인당 공공재 공급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자치단체별 1인당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1년 말 경기도내 총 인구수는 1,356만 5,450명이며, 수원시가 118만 3,714명으로 가장 크고, 연천군이 4만 2,271명으로 규모가 가장 작다. 배분된 조정교부금을 시민 1인당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천군이 1인당 638천원으로 가장 크고, 용인, 군포가 동일하게 1인당 257천원으로 가장 작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1인당 295천원이 배분되어 31개 시·군 중 파주시와 함께 2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1인당 조정교부금 배분액

구분	조정교부금 배분액		인구수		1인당 조정교부금 배분액	
	단체	배분액(억원)	단체	인구(백명)	단체	배분액(천원)
상위 5개 단체	수원	3,489	수원	11,837	연천	638
	고양	2,967	고양	10,794	가평	550
	성남	2,879	용인	10,775	과천	495
	용인	2,765	성남	9,309	양평	473
	남양주	2,760	화성	8,870	포천	431
하위 5개 단체	구리	1,144	여주	1,122	화성	283
	오산	1,096	동두천	936	김포	275
	안성	1,077	과천	733	고양	275
	의왕	945	가평	623	군포	257
	과천	644	연천	427	용인	257

조정교부금의 배분 상태를 인구와 지방세를 통제변수화 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3-5〉 조정교부금과 1인당 배분액, 지방세 대비 비중간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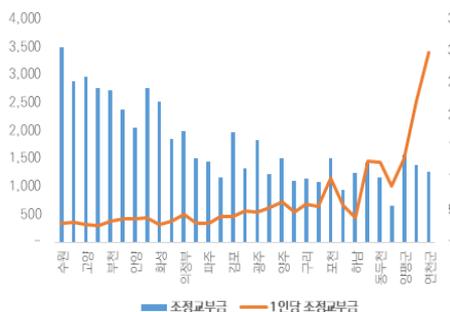
구분		조정교부금 배분액	1인당 조정교부금 배분액	지방세 대비 조정교부금 비중
조정교부금 배분액	Pearson 상관	1	-.386*	-.371*
	유의확률 (양측)	.	0.032	0.040
	N	31	31	31
1인당 조정교부금 배분액	Pearson 상관	-.386*	1	.869**
	유의확률 (양측)	0.032	.	0.000
	N	31	31	31
지방세 대비 조정교부금 비중	Pearson 상관	-.371*	.869**	1
	유의확률 (양측)	0.040	0.000	.
	N	31	31	31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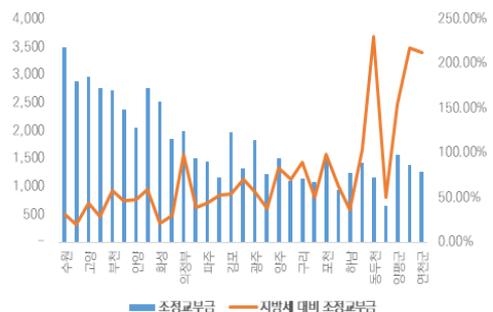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

상관관계분석 결과 인구와 조정교부금 배분액 간에는 유의확률 .032에서 -.386의 상관성이 있고, 지방세입 대비 조정교부금 배분액의 비중 역시 유의확률 .040에서 -.371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력¹⁵⁾과 반대방향으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평적 형평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1〉 1인당 조정교부금 배분 현황



〈그림 3-2〉 지방세 대비 조정교부금 배분 현황



15) 일반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두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을수록 대체로 지방세입액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다시 말해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세입 측면에서 세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기본 자료를 근거로 인구와 지방세입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두 변수간 상관성은 유의확률 .000에서 .883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에 배분된 조정교부금의 최근 11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10.4%이며, 가평군이 18.9%로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과천시가 -2.4%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원시는 연평균 증가율이 8.7%로 증가율이 31개 시·군 중 25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조정교부금 연평균 증감률

(단위 : %)

구분	상위 5개 단체					하위 5개 단체				
	가평	여주	연천	양평	동두천	화성	성남	고양	용인	과천
연평균 증감률	18.88	18.55	18.27	17.56	16.99	5.05	4.10	3.54	2.61	-2.35

수원시를 대상으로 연도별 증가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달라지는데, 수원시의 경우 1차 재정개편이 추진된 이후 2015년에 전년 대비 11.5%가 증가되었다. 비록 2015년 증가율은 2014년 증가율인 31.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우선보전 90% 적용을 통해 직전년도 대비 조정교부금이 감소되는 상황은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15.3%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세 징수실적의 큰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선보전 90%가 70%로 축소된 2018년에는 직전년도 대비 22.6%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수원시 연도별 조정교부금 배분액 증감률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3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조정교부금	1,515	1,893	2,498	2,360	2,864	2,217	2,311	2,489	3,489	8.70
전년 대비 증감률		-19.5	31.9	-15.3	21.4	-22.6	4.2	5.1	43.7	

제2절 도비보조금제도 운영 현황

1. 제도도입 목적과 운영 기준

도비보조금은 학문적·이론적 맥락에서의 정의라기보다는 실무적·행정적 측면에서의 정의이다(김성주·윤태섭, 2018).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보조금은 도비보조금만을 한정하지 않는다. 법령상 정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출자금, 출연금,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법령상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금 항목에 포함되는 세목으로 지방보조금 전체를 아우른다. 대상별로는 공공단체와 민간으로 나누어지고, 내용적으로는 경상적 보조와 자본적 보조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등 총 12개 통계목에 의한 재정지출을 포함한다.

전술한 통계목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의도적으로 시·군에 재원을 이양하는 항목이다. 이를 일반적으로 시·도비보조금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있다. 「지방재정법」 제23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도비보조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목적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함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조정적인 재정 지원을 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시·도비보조금은 그 운영 및 설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직적 형평화와 수평적 형평화라는 두 가지 목적 갖는다. 두 가지 형평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은 보조율에 대한 설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조율은 크게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로 나누어진다. 보조율은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준보조율은 기초자치단체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인구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공히 똑같은 수준에서 보조율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는 재정이전을 통한 수직적

형평화를 도모하는 수단이다. 한편 차등보조율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율이 달라지는 구조이다. 대체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지역은 낮은 보조율을, 재정력이 낮은 지역은 높은 보조율을 보전 받는다.

도비보조금의 운영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안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이장욱·이현우(2020)의 연구에 따르면 도 단위 자치단체 중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개 자치단체에서 보조율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차등보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차등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는 보조금의 대상 사업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 분야별 최소 30%~70%까지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보조율은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액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8〉 경기도 보조금 기준보조율 구간

분야	보조율
보건·사회	30% ~ 70%
산업·경제	30% ~ 50%
도로·교통	30% ~ 70%
상하수·치수	30% ~ 50%
청소·환경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소방	
일반행정	

자료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013년 경기도 당초예산이 편성될 시기까지는 조례에 규정한대로 분야별 보조율의 범위 내에서 보조율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 취득세 영구감면 등에 따른 세수 절벽에 직면하여 취득세가 급락하였고, 경기도는 최초로 감액추경을 실행하였다. 쉽게 재정여건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기도는 2014년 당초예산 편성부터는 사업 분야와 무관하게 기준보조율을 30%로 결정하였다. 기준보조율을 30%로 결정한 근거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행규칙」 제3조에 있다.

한편 기준보조율을 30%로 대폭 인하 고정시키면서 함께 추진된 차등보조율은 최저보조율 구간을 당초 20%에서 10%로 하향 시키고, 최고보조율 구간을 50%에서 40%로 하향 시켰다. 이후 경기도 재정압박이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차등보조율 중 최고구간을 다시 50%로 10%p 상향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3-9〉 경기도 보조금 차등보조율 구간

구 분		'13년	'14년 ~ '15년	'16년 ~ '22년
기준보조율		30~50%	30%	30%
차등보조율		20~50%	10~40%	10~50%
인하 보조	10%(△20%)	-	6市	6市
	20%(△10%)	6市	14市	6市
기준 보조	30%	15市	5市	7市
인상 보조	40%(+10%)	5市	6市郡	7市
	50%(+20%)	5市郡	-	5市郡

자료 : 경기도 내부 자료

차등보조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재정력지수와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으로 구분된다. 재정력지수는 90%를 반영하고,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은 10%를 반영하는 구조이다.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이 적용된 재정력지수를 그대로 활용한다. 그리고 인건비 충당능력지수는 지방세 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공무원 인건비를 얼마나 충당하고 있는지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활용자료는 전전년도 최종예산상의 지수와 전년도 당초 예산상의 지수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표 3-10〉 경기도 보조금 차등보조를 결정 산식

지 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1) 인건비 자체총당 능력지수 ※ 가중치 10%	$\text{① 산식 : } \frac{\text{지방세수입} + \text{경상적세외수입}}{\text{공무원 인건비}} \times 100$ ② 경상적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목 분류상의 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수수료수입·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의 합계액,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 분류상의 기본급·수당·기타직보수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지수와 전년도의 당초 예산상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2) 재정력지수 ※ 가중치 90%	$\text{① 산식 : } \frac{\text{기준재정수입액}}{\text{기준재정수요액}} \times 100$ ②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을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의 지방교부세를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자료를 사용한다.

자료 : 경기도 내부 자료

2. 도비보조금 자원배분 현황

2021년 최종예산 기준 경기도 도비보조금 총액은 3조 6,229억원으로 전술한 조정교부금 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8%가 증가되는 등 조정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는 2020년으로 2019년 대비 65.6% 증가하였고, 2014년은 전년 대비 22.4%가 감소하는 등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 동안 도비보조금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된 해는 2014년이 유일하다. 앞서 살펴본 조정교부금의 감소율은 2013년에 가장 컸던 것에 비해 도비보조금은 2014년에 가장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

두 제도가 시차를 두고 증감하는 형태인데 이는 재정운영 절차와 연계된 결과이다. 조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실적을 최종 정산하여 당해 연도에 배분하는 구조이다. 반면 도비보조금은 정산 개념이 아니라 사전 배분 개념이다. FY1년의 예산 편성을 위해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모두 FY-1년에 자원배분 계획을 내시하면, 시·군은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FY1년의 예산을 편성한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도세 징수 실적 등이 하락하면 당초 내시액보다 감소된 수정배분 방안을 다시 내시한다. 당해 연도의 세입 실적이 당해 연도에 반영된다. 그러나 도비보조금은 한번 내시가 시달되면 직접적인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내시된 규모

만큼의 재정이전이 필요하다. 하반기에 들어 세입이 크게 감소했다 하더라도 당초 내시된 금액을 축소시키기 어렵다. 축소는 곧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금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대대적인 감축 또는 충원을 하게 되는 구조이다.

〈표 3-11〉 연도별 도비보조금 배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3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도비 보조금	13,055	19,964	15,490	18,179	20,131	22,180	27,254	45,140	36,229	10.75
전년 대비 증감률		16.4	-22.4	4.4	10.7	10.2	22.9	65.6	-19.7	

2021년 최종 예산 기준 도비보조금이 가장 많이 배분된 자치단체는 수원시로 2,540억원이 배분되었으며, 이는 전체 도비보조금의 7.0%에 해당된다. 반면 가장 적은 금액이 배분된 지역은 과천시로 201억원이 배분되어 전체 도비보조금의 0.6%를 배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입액 대비 도비보조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동두천시에 배분된 도비보조금이 지방세입액의 94.7%로 가장 큰 반면 성남시에 배분된 도비보조금은 지방세입액의 12.9%를 차지하여 가장 작은 규모이다. 한편 수원시 지방세입액 대비 도비보조금의 비중은 2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지방세 대비 조정교부금 비중

구분	도비보조금 배분액		지방세입액		지방세 대비 도비보조금 비중	
	단체	배분액(억원)	단체	배분액(억원)	단체	비중(%)
상위 5개 단체	수원	2,540	성남	14,447	동두천	94.69
	용인	2,385	화성	11,784	연천	73.86
	고양	2,325	수원	10,970	가평	67.88
	화성	2,150	용인	9,705	양평	67.82
	남양주	1,912	고양	6,853	의정부	63.10
하위 5개 단체	동두천	481	구리	1,270	수원	23.15
	의양	456	양평	1,017	하남	21.76
	연천	440	가평	635	화성	18.24
	가평	431	연천	596	과천	15.83
	과천	201	동두천	508	성남	12.91

배분된 도비보조금을 시민 1인당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천군이 1인당 1,030천원으로 가장 크고, 성남시가 1인당 200천원으로 가장 작게 배분되었다. 수원시는 1인당 215천원이 배분되어 되어 고양시와 함께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1인당 도비보조금 배분액

구분	도비보조금 배분액		인구수		1인당 도비보조금 배분액	
	단체	배분액(억원)	단체	인구(백명)	단체	배분액(천원)
상위 5개 단체	수원	2,540	수원	11,837	연천	1,030
	용인	2,385	고양	10,794	가평	692
	고양	2,325	용인	10,775	여주	598
	화성	2,150	성남	9,309	포천	571
	남양주	1,912	화성	8,870	양평	569
하위 5개 단체	동두천	481	여주	1,122	부천	224
	의왕	456	동두천	936	용인	221
	연천	440	과천	733	고양	215
	가평	431	가평	623	수원	215
	과천	201	연천	427	성남	200

도비보조금의 배분 상태를 인구와 지방세를 통제변수화 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3-14〉 도비보조금과 1인당 배분액, 지방세 대비 비중간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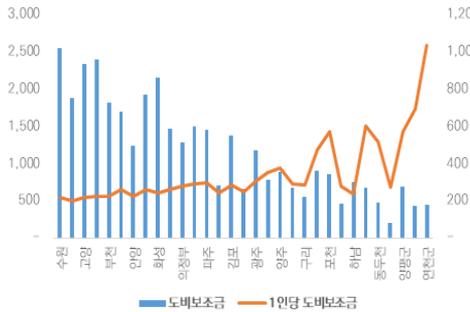
구분		도비보조금 배분액	1인당 도비보조금 배분액	지방세 대비 도비보조금 비중
도비보조금 배분액	Pearson 상관	1	-.516**	-.435*
	유의확률 (양측)		0.003	0.015
	N	31	31	31
1인당 도비보조금 배분액	Pearson 상관	-.516**	1	.723**
	유의확률 (양측)	0.003		0.000
	N	31	31	31
지방세 대비 도비보조금 비중	Pearson 상관	-.435*	.723**	1
	유의확률 (양측)	0.015	0.000	
	N	31	31	31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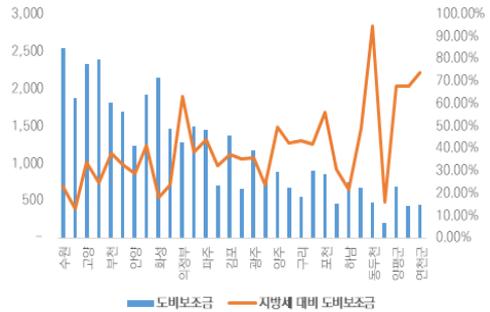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

상관관계분석 결과 인구나 도비보조금 배분액 간에는 유의확률 .000에서 -.516의 상관성이 있고, 지방세입 대비 도비보조금 배분액의 비중 역시 유의확률 .015에서 -.435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조정교부금보다 더욱 강한 영향력으로 재정상태에 역방향으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3〉 1인당 도비보조금 배분 현황



〈그림 3-4〉 지방세 대비 도비보조금 배분 현황



시·군별 최근 11년 동안 배분된 도비보조금의 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화성시가 14.6%로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연천군이 1.4%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원시는 연평균 증가율이 9.9%로 증가율이 31개 시·군 중 20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도비보조금 연평균 증감률

(단위 : %)

구분	상위 5개 단체					하위 5개 단체				
	화성	시흥	김포	오산	안양	양평	포천	양주	가평	연천
연평균 증감률	14.58	14.26	13.91	13.70	13.68	7.00	6.97	6.13	3.04	1.38

수원시를 대상으로 연도별 증가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2021년 들어 다시 도비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간 감소폭이 가장 큰 해는 2021년으로 2020년 대비 23.8%가 감소되었다. 반면 증가폭이 가장 큰 해는 2020년으로 2019년 대비 72.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수원시 연도별 도비보조금 배분액 증감률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3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도비 보조금	987	1,453	1,224	1,314	1,452	1,491	1,928	3,332	2,540	9.92
전년 대비 증감률		-1.2	-15.8	8.2	10.4	2.7	29.3	72.9	-23.8	

제3절 재정조정제도의 효과 검토¹⁶⁾

1.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검토

앞의 2장 연구방법에서 논의했듯이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계열 비교와 재정조정제도의 누적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한다. 시계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 대비 현재 각각의 제도별 도입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평적 형평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조정교부금제도의 시행으로 2011년 대비 2021년의 수평적 형평화 수준이 높아졌다면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재정조정제도의 누적 효과는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재정이 이전되기 전인 시점(이하 현 시점) 대비 지방교부세 이전(이하 1차), 조정교부금 이전(이하 2차), 도비보조금 이전(이하 3차)에 따라 시차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한다. 각각의 효과는 누적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가 도와 시·군간 재정조정제도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를 포함하는 이유는 첫째, 지방교부세는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을 압도하는 규모로서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를 통한 형평화 효과가 가장 클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재정형평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은 세입과 세출 능력을 모두 고려한 재정력지수이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배분은 재정력지수를 활용해 자치단체에 배분된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이 연구에서 설계한 재정형평화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셋째,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이전은 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당 회계 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경에 지방교부세 산정이 완료되고, 11월 경에 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가 내시된다. 내시된 규모를 근거로 조정교부금 배분을 위한 잠정 내시가 시달된다. 그리고 회계 연도 시작 후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와 재정력지수가 배포되면 이를 근거로 조정교부금도 확정내시를 시달한다. 도비보조금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당해 연도 재정력지수를 활용하여 총 규모를 산정하되, 지방교부세 내시가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차등보조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지방교부세 배분시 사용되는 재정력지수는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배분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변이계수를 통해 각 제도별 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형평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간 재정개편(재정분권 등) 등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현 시점에서의 형평화 수준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의 재정형평화 수준은 최근 11년간 0.1131만큼 개선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6) 이하 재정형평성 및 재정력 역전 현상에 대한 연도별, 자치단체별 세부 자료는 〈부록 11〉, 〈부록 12〉, 〈부록 13〉을 참고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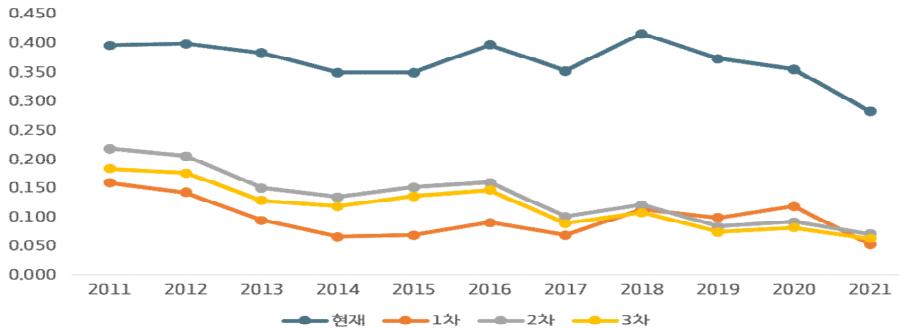
0.1066만큼 개선되었다. 조정교부금은 0.1478만큼 개선되었고, 도비보조금은 0.1204만큼 개선되었다. 최근 11년간 재정형평화에 기여한 수준이 가장 큰 제도는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지방교부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간 재정형평화 수준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의 재정형평화 수준은 0.3682이고, 지방교부세가 이전됨에 따라 재정형평성은 0.0975수준으로 향상된다. 이후 조정교부금이 이전되면 0.1352 수준으로 변화되고, 도비보조금이 추가됨으로써 재정형평성은 0.1187 수준이 된다. 현 시점에서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이전이 형평화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계수값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 시점 대비 지방교부세는 0.2706만큼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교부세가 배분된 이후 추가적인 보완 없이 재정력지수를 반복 사용하고, 조정교부금만의 특수 산식을 포함해 배분하게 되면 오히려 불균형성이 0.0376만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배분된 이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배분될 경우 재정형평성은 0.0165만큼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비보조금이 형평화 효과에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현 시점 대비 지방교부세를 통해 균형화된 수준만큼으로 회귀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결과(변이계수)

구분	현 시점	1차		2차		3차	
		효과	변화량	효과	변화량	효과	변화량
2011	0.3954	0.1587	-0.2367	0.2182	0.0595	0.1830	-0.0352
2012	0.3986	0.1427	-0.2560	0.2059	0.0632	0.1758	-0.0301
2013	0.3827	0.0940	-0.2887	0.1502	0.0562	0.1292	-0.0210
2014	0.3494	0.0659	-0.2835	0.1349	0.0690	0.1189	-0.0160
2015	0.3493	0.0688	-0.2805	0.1512	0.0824	0.1366	-0.0146
2016	0.3962	0.0905	-0.3057	0.1592	0.0687	0.1465	-0.0127
2017	0.3525	0.0686	-0.2839	0.1014	0.0328	0.0888	-0.0126
2018	0.4164	0.1134	-0.3030	0.1212	0.0078	0.1081	-0.0131
2019	0.3723	0.0994	-0.2729	0.0832	-0.0162	0.0741	-0.0091
2020	0.3547	0.1190	-0.2357	0.0914	-0.0276	0.0817	-0.0097
2021	0.2823	0.0521	-0.2302	0.0704	0.0183	0.0626	-0.0078
평균	0.3682	0.0975	-0.2706	0.1352	0.0376	0.1187	-0.0165
2011년 대비 2021년	-0.1131	-0.1066		-0.1478		-0.1204	

(그림 3-5) 최근 11년간 형평화 효과(변이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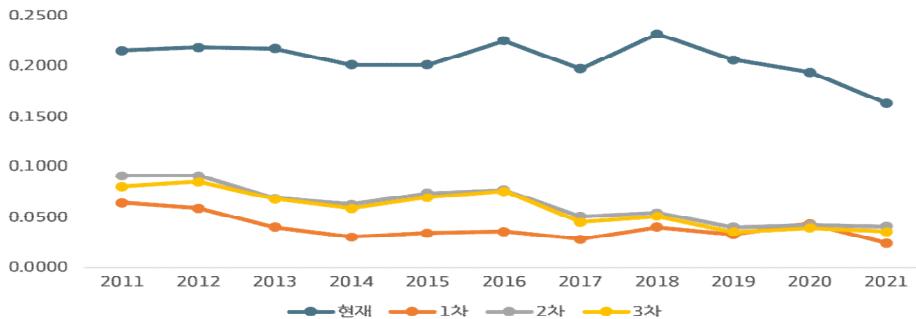
지니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도 변이계수와 비교해 계수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형평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의 형평화 수준은 최근 11년간 0.0518만큼 개선되었고, 지방교부세는 0.0397만큼 개선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0.0498만큼, 도비보조금은 0.0442만큼 재정형평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간 재정형평화에 기여한 수준이 가장 큰 제도는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지방교부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간 재정형평화 수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의 재정형평화 수준은 0.2061이고, 지방교부세가 이전됨에 따라 재정형평성은 0.0392수준으로 전환된다. 이후 조정교부금이 이전되면 0.0628 수준으로 변화되고, 도비보조금이 추가됨으로써 재정형평성은 0.0584 수준이 된다. 현 시점에서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이전이 형평화를 어떻게 변화 시키고 있는지 계수값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 시점 대비 지방교부세는 0.1668만큼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면 불균형성이 0.0235만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배분된 이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배분될 경우 재정형평성은 0.0044만큼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결과(지니계수)

구분	현 시점	1차		2차		3차	
		효과	변화량	효과	변화량	효과	변화량
2011	0.2148	0.0639	-0.1509	0.0905	0.0266	0.0800	-0.0105
2012	0.2178	0.0586	-0.1593	0.0906	0.0320	0.0847	-0.0059
2013	0.2169	0.0400	-0.1770	0.0688	0.0288	0.0679	-0.0009
2014	0.2008	0.0305	-0.1703	0.0627	0.0322	0.0588	-0.0039
2015	0.2007	0.0344	-0.1663	0.0736	0.0392	0.0693	-0.0043
2016	0.2245	0.0359	-0.1886	0.0765	0.0406	0.0756	-0.0009
2017	0.1971	0.0280	-0.1691	0.0507	0.0226	0.0448	-0.0059
2018	0.2313	0.0400	-0.1913	0.0542	0.0142	0.0505	-0.0037
2019	0.2059	0.0326	-0.1733	0.0399	0.0073	0.0354	-0.0045
2020	0.1937	0.0435	-0.1502	0.0422	-0.0013	0.0394	-0.0029
2021	0.1630	0.0242	-0.1388	0.0407	0.0165	0.0358	-0.0049
평균	0.2061	0.0392	-0.1668	0.0628	0.0235	0.0584	-0.0044
2011년 대비 2021년	-0.0518	-0.0397		-0.0498		-0.0442	

〈그림 3-6〉 최근 11년간 형평화 효과(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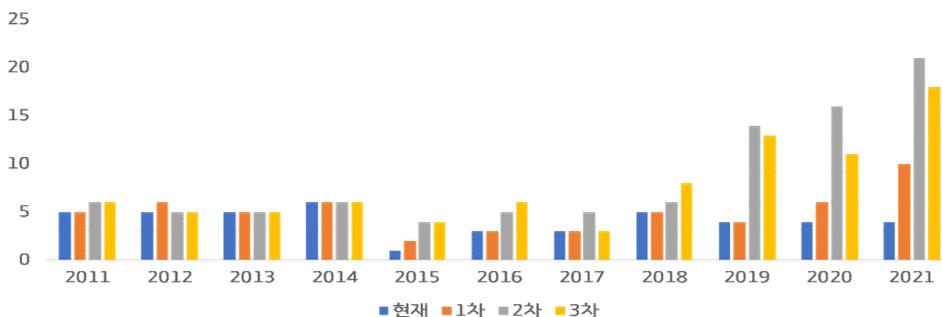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력지수의 순위변동 결과를 살펴보면 수원시 뿐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들에서 순위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현 시점에서 재정력지수의 순위는 2011년 대비 2021년에 한 단계 상승하였다. 11년의 기간 동안 수원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최상일 경우 1위에, 최하일 경우 6위에 위치하였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는 수원시의 재정력지수 순위를 5단계 하락 시켰고, 조정교부금은 15단계 하락 시켰다. 도비보조금은 12단계 하락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간 수원시 재정력지수의 평균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의 재정력지수 순위는 평균 4위이고, 지방교부세가 이전됨에 따라 5위로 한 단계 하락하며, 조정교부금이 추가 배분되면 수원시 순위는 8위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비보조금이 추가 배분되어도 8위가 유지된다. 종합하면 현 시점 대비 4단계 하락한다. 특히 2019년 이후 수원시의 순위 변동은 이전과 달리 매우 큰 폭으로 변동되고 있다. 2021년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원시의 현 시점 재정력지수 순위는 4위인데, 지방교부세가 배분되면 10위로 6단계 하락되고, 조정교부금까지 배분되면 21위로 11단계 하락된다. 도비보조금이 배분되면 다시 18위로 3단계가 상승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3-19〉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결과(순위변동)

구분	현 시점	1차		2차		3차	
		효과	변화량	효과	변화량	효과	변화량
2011	5	5		6	1	6	
2012	5	6	1	5	-1	5	
2013	5	5		5		5	
2014	6	6		6		6	
2015	1	2	1	4	2	4	
2016	3	3		5	2	6	1
2017	3	3		5	2	3	-2
2018	5	5		6	1	8	2
2019	4	4		14	10	13	-1
2020	4	6	2	16	10	11	-5
2021	4	10	6	21	11	18	-3
평균	4	5	1	8	3	8	
2011년 대비 2021년	-1	5		15		12	

〈그림 3-7〉 최근 11년간 형평화 효과(순위변동)



2. 재정력 역전 현상 분석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의 이전은 각 제도별 재정이전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모두가 최소한 필요로 하는 공공재 공급이 가능하도록 실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킨 다음 추가적으로 이전되는 재정의 양은 비례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만약 비례적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재 공급의 비효율 뿐 아니라 자치단체 간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이전되는 재정의 양은 절대 금액보다 추가되는 재정의 비중이 비례적이어야 하고, 만약 재정이전이 비례적으로 정확히 배분된다면 형평화계수의 값은 0이 되어야 한다.

1) 재정력지수 1 초과액 기준

재정력지수가 1이 넘어서는 시점부터 추가로 이전된 재정의 절대 값을 근거로 형평화 효과와 순위변동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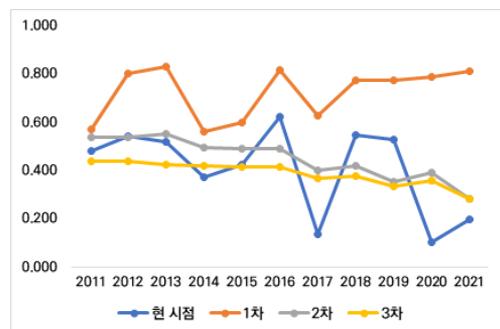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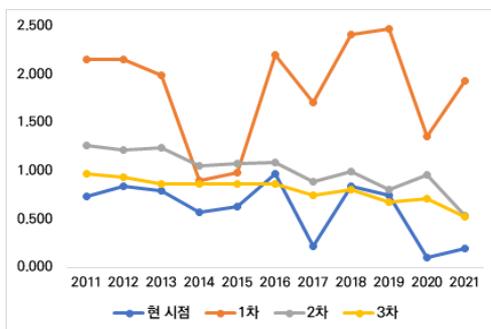
변이계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1년간 현 시점의 형평화 수준은 0.5389만큼 개선되었고, 지방교부세는 0.2181만큼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교부금은 0.7190만큼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켰고 도비보조금은 0.4419만큼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간 평균 재정형평화 수준은 현 시점이 0.6043이고, 지방교부세 이전 시 1.8398로 재정불균형이 증가된다. 조정교부금 배분 시에는 1.0091로 재정형평성이 향상되고, 도비보조금까지 배분하면 0.7996으로 재정형평성이 향상된다.

지니계수도 전술한 변이계수와 계수값의 크기만 차이 날 뿐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1년간 현 시점의 형평화수준은 0.2829만큼 개선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0.2381만큼 재정불균등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교부금은 0.2582만큼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켰고 도비보조금은 0.1534만큼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간 평균 재정형평화 수준은 현 시점이 0.4076이고, 지방교부세 이전 시 0.7237로 재정불균형이 증가된다. 조정교부금 배분 시에는 0.4507로 근소하게 재정형평성이 향상되고, 도비보조금까지 배분하면 0.3895로 재정형평성이 향상된다.

〈표 3-20〉 초과액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변이계수·지니계수)

구분	현 시점	1차		2차		3차		
		효과	변화량	효과	변화량	효과	변화량	
변 이 계 수	2011	0.7366	2.1518	1.4153	1.2597	-0.8922	0.9632	-0.2965
	2012	0.8356	2.1515	1.3159	1.2198	-0.9317	0.9347	-0.2851
	2013	0.7958	1.9885	1.1927	1.2338	-0.7547	0.8685	-0.3653
	2014	0.5664	0.8929	0.3265	1.0487	0.1558	0.8579	-0.1909
	2015	0.6337	0.9840	0.3503	1.0743	0.0904	0.8599	-0.2144
	2016	0.9705	2.1948	1.2242	1.0828	-1.1120	0.8591	-0.2237
	2017	0.2195	1.7052	1.4857	0.8909	-0.8143	0.7514	-0.1395
	2018	0.8413	2.4115	1.5702	0.9937	-1.4178	0.8000	-0.1937
	2019	0.7444	2.4687	1.7243	0.8007	-1.6680	0.6737	-0.1270
	2020	0.1063	1.3552	1.2489	0.9554	-0.3998	0.7058	-0.2496
	2021	0.1977	1.9338	1.7361	0.5406	-1.3932	0.5214	-0.0193
	평균	0.6043	1.8398	1.2355	1.0091	-0.8307	0.7996	-0.2096
	2011년 대비 2021년	-0.5389	-0.2181		-0.7190		-0.4419	
지 니 계 수	2011	0.4807	0.5738	0.0931	0.5406	-0.0332	0.4392	-0.1014
	2012	0.5415	0.8052	0.2638	0.5369	-0.2683	0.4392	-0.0978
	2013	0.5205	0.8327	0.3122	0.5521	-0.2807	0.4229	-0.1292
	2014	0.3746	0.5603	0.1856	0.4978	-0.0624	0.4225	-0.0753
	2015	0.4238	0.5983	0.1745	0.4918	-0.1065	0.4159	-0.0759
	2016	0.6254	0.8159	0.1904	0.4895	-0.3263	0.4162	-0.0733
	2017	0.1350	0.6261	0.4912	0.4032	-0.2229	0.3703	-0.0329
	2018	0.5477	0.7748	0.2272	0.4190	-0.3558	0.3769	-0.0421
	2019	0.5305	0.7751	0.2446	0.3535	-0.4215	0.3365	-0.0170
	2020	0.1063	0.7869	0.6806	0.3907	-0.3963	0.3590	-0.0317
	2021	0.1977	0.8119	0.6142	0.2824	-0.5295	0.2858	0.0034
	평균	0.4076	0.7237	0.3161	0.4507	-0.2730	0.3895	-0.0612
	2011년 대비 2021년	-0.2829	0.2381		-0.2582		-0.1534	

〈그림 3-8〉 초과액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변이계수) 〈그림 3-9〉 초과액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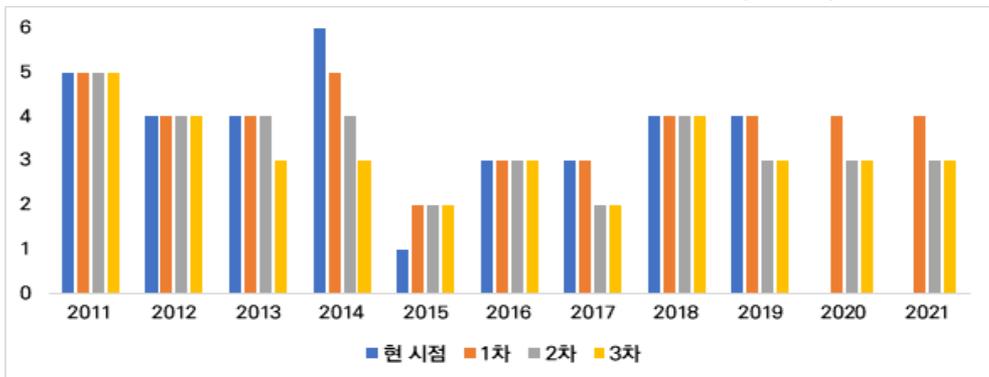


수원시 기준 순위 변동 효과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재정력지수가 1이 넘어 현 시점에서 순위가 부여되었으나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순위가 부여되지 않았다. 최근 11년간 평균 순위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 3위였으며, 지방교부세 배분 시 4위로 1단계 하락하였다. 이후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면 도내에서 3위로 전환되고, 도비보조금을 배분받아도 3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초과액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순위변동)

구분	현 시점	1차		2차		3차	
		효과	변화량	효과	변화량	효과	변화량
2011	5	5		5		5	
2012	4	4		4		4	
2013	4	4		4		3	-1
2014	6	5	-1	4	-1	3	-1
2015	1	2	1	2		2	
2016	3	3		3		3	
2017	3	3		2	-1	2	
2018	4	4		4		4	
2019	4	4		3	-1	3	
2020		4	4	3	-1	3	
2021		4	4	3	-1	3	
평균	3	4	1	3	-1	3	
2011년 대비 2021년		-1		-2		-2	

〈그림 3-10〉 초과액 기준 최근 11년간 재정력 역전 현상(순위변동)



2) 재정력지수 1 초과비중 기준

재정력지수가 1이 넘어서는 시점부터 추가로 이전된 재정이 당초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근거로 형평화 효과와 순위변동 효과를 살펴보았다. 전술했듯이 초과 재정의 비중은 동일하게 증가되어야 하고, 비중의 동일성이 확보된 상태를 균형화가 되었다고 본다.

분석 결과 변이계수와 지니계수 모두 그 계수값이 0 이상으로 재정력은 형평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발생되고, 그 결과 재정력 역전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하에서는 재정력 역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변이계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1년간 현 시점의 형평화 수준은 0.4584만큼 개선되었고, 지방교부세 제도는 0.4395만큼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교부금은 0.6394만큼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켰고 도비보조금은 0.3981만큼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간 평균 재정형평화 수준은 현 시점이 0.5266이고, 지방교부세 이전 시 1.4556으로 재정불균형이 증가된다. 조정교부금 배분 시에는 0.6008로 재정형평성이 향상되고, 도비보조금까지 배분하면 0.3723으로 재정형평성이 대폭 향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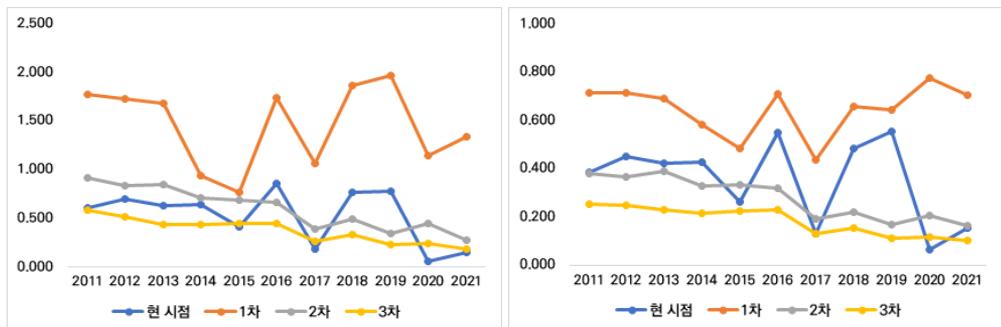
지니계수도 전술한 변이계수와 계수값의 크기만 차이 날 뿐 방향성은 동일하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1년간 현 시점의 형평화 수준은 0.2337만큼 개선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0.0095만큼 재정형평성을 향상시켰다. 조정교부금은 0.2199만큼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켰고, 도비보조금은 0.1498만큼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간 평균 재정형평화 수준은 현 시점이 0.3524이고, 지방교부세 이전 시 0.6464로 재정불균형이 증가된다. 조정교부금 배분 시에는 0.2786으로 재정형평성이 향상되고, 도비보조금까지 배분하면 0.1832로 재정형평성이 향상된다.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이 지방교부세에 비해 시계열적으로나 제도의 누적적 추진 모두에서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이 두 제도가 지방교부세로 인해 발생된 재정의 역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데 기여를 하고는 있으나 당초 가정한 비례적 순증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전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초과 비중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변이계수·지니계수)

구분	현 시점	1차		2차		3차		
		효과	변화량	효과	변화량	효과	변화량	
변이계수	2011	0.6099	1.7726	1.1627	0.9175	-0.8551	0.5783	-0.3392
	2012	0.7029	1.7267	1.0238	0.8310	-0.8958	0.5128	-0.3182
	2013	0.6241	1.6851	1.0610	0.8502	-0.8348	0.4371	-0.4132
	2014	0.6373	0.9371	0.2998	0.7102	-0.2269	0.4371	-0.2732
	2015	0.4170	0.7716	0.3545	0.6852	-0.0864	0.4425	-0.2427
	2016	0.8600	1.7409	0.8810	0.6599	-1.0811	0.4459	-0.2140
	2017	0.1855	1.0669	0.8815	0.3849	-0.6820	0.2596	-0.1253
	2018	0.7612	1.8663	1.1051	0.4945	-1.3718	0.3320	-0.1625
	2019	0.7802	1.9640	1.1838	0.3490	-1.6150	0.2300	-0.1190
	2020	0.0629	1.1472	1.0843	0.4485	-0.6987	0.2403	-0.2082
	2021	0.1515	1.3330	1.1816	0.2781	-1.0550	0.1802	-0.0979
	평균	0.5266	1.4556	0.9290	0.6008	-0.8548	0.3723	-0.2285
	2011년 대비 2021년	-0.4584	-0.4395		-0.6394		-0.3981	
지니계수	2011	0.3851	0.7147	0.3296	0.3807	-0.3340	0.2528	-0.1279
	2012	0.4504	0.7126	0.2622	0.3657	-0.3468	0.2471	-0.1187
	2013	0.4197	0.6895	0.2699	0.3892	-0.3004	0.2295	-0.1597
	2014	0.4246	0.5809	0.1563	0.3299	-0.2511	0.2161	-0.1137
	2015	0.2597	0.4834	0.2237	0.3337	-0.1497	0.2246	-0.1091
	2016	0.5490	0.7099	0.1609	0.3170	-0.3929	0.2299	-0.0871
	2017	0.1320	0.4360	0.3040	0.1924	-0.2436	0.1310	-0.0614
	2018	0.4851	0.6584	0.1732	0.2211	-0.4373	0.1552	-0.0660
	2019	0.5560	0.6451	0.0891	0.1673	-0.4779	0.1097	-0.0576
	2020	0.0629	0.7747	0.7118	0.2071	-0.5676	0.1158	-0.0913
	2021	0.1515	0.7052	0.5538	0.1608	-0.5444	0.1031	-0.0578
	평균	0.3524	0.6464	0.2940	0.2786	-0.3678	0.1832	-0.0955
	2011년 대비 2021년	-0.2337	-0.0095		-0.2199		-0.1498	

〈그림 3-11〉 초과 비중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변이계수) 〈그림 3-12〉 초과 비중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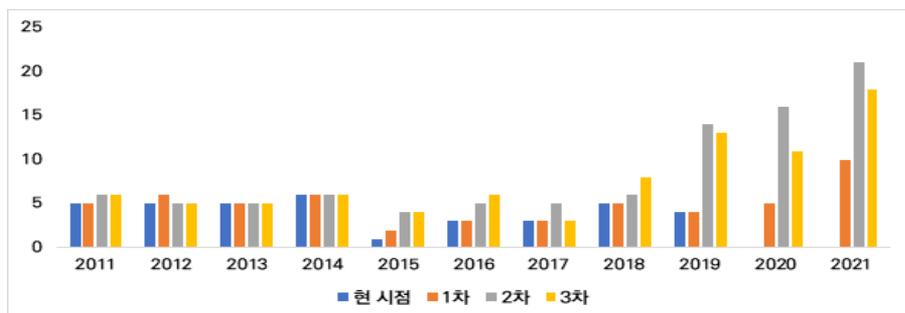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정력 역전 현상은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최근 11년간 순위의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수원시의 현 시점에서 순위는 4위이나 지방교부세가 이전됨에 따라 1단계가 하락한 5위에 위치하게 된다. 조정교부금이 배분된 뒤 8위로 3단계 하락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배분 되어도 그 순위는 변동이 없다. 수원시의 이러한 순위 변동 폭은 2019년 이후 커져 왔다. 201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 시점에 수원시는 4위 수준이었으나 지방교부세가 배분된 이후에도 4위로 변동 없었으며, 조정교부금이 배분된 이후 14위로 대폭 하락한다. 이후 도비보조금을 통해 1단계가 상향된 13위 수준으로 순위가 상향된다. 초과액이 아닌 초과액이 기준재정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환될 경우 역전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초과 비중 기준 재정력 역전 현상(순위변동)

구분	현 시점	1차		2차		3차	
		효과	변화량	효과	변화량	효과	변화량
2011	5	5		6	1	6	
2012	5	6	1	5	-1	5	
2013	5	5		5		5	
2014	6	6		6		6	
2015	1	2	1	4	2	4	
2016	3	3		5	2	6	1
2017	3	3		5	2	3	-2
2018	5	5		6	1	8	2
2019	4	4		14	10	13	-1
2020		5	5	16	11	11	-5
2021		10	10	21	11	18	-3
평균	4	5	1	8	3	8	
2011년 대비 2021년		5		15		12	

〈그림 3-13〉 초과 비중 기준 최근 11년간 재정력 역전 현상(순위변동)



3. 분석 결과의 종합

재정력지수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각 제도별 재정형평화 효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각 제도들은 운영을 통해 최소한 11년 전 대비 현재로 올수록 재정형평화 효과를 유도했다. 둘째, 각 제도별로 형평화 효과를 도모하는 수준이 달리 나타난다. 최근 11년간 평균 계수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은 재정형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정교부금은 재정형평화를 악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1년 대비 2021년 수원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5단계를, 조정교부금은 15단계를 하락시켰고, 도비보조금도 12단계를 하락시켰다. 넷째, 11년 평균 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단계를, 조정교부금은 3단계를 하락시켰다.

재정력 역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이전된 재정의 초과액과 그 금액이 기준재정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먼저 초과액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 첫째, 분석방법과 관계없이 11년 전 대비 현재의 재정형평화 수준은 현 시점에서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최근 2단계 재정분권 등을 통해 지역간 형평화가 어느 정도 구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변이계수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재정형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지니계수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은 분석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재정형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최근 11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재정조정제도의 시행에 따른 효과를 보면 지방교부세는 현 시점 대비 재정형평화를 악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모두 재정형평화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원시를 기준으로 2011년 대비 2021년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2021년 현 시점은 수원시가 교부단체였기 때문에 순위 밖에 위치해 있어 그 변화량을 판단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모두 2011년 대비 수원시의 순위를 끌어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최근 11년간 순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정교부금은 순위를 끌어 올리나 지방교부세는 순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력지수 1을 초과하는 이전재원의 양이 기준재정수요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변이계수와 지니계수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이전재원의 초과 비중은 동일하지 않아 재정력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1년 대비 2021년의 재정형평화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 등 모든 제도에 의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근 11년간 평균 계수값을 근거로 제도별 효과를 살펴보면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은 재정형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방교부세는 재정형평성을 악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원시를 기준으로

2011년 대비 2021년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등 모두 순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최근 11년간 순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단계 순위를 하락시키고, 조정교부금은 3단계 순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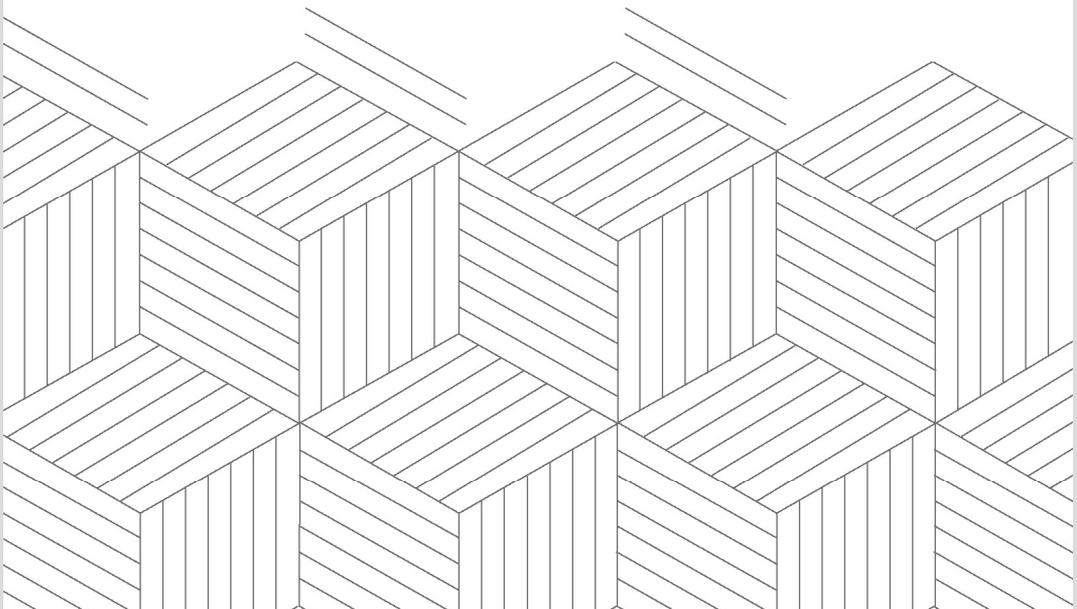
〈표 3-24〉 분석결과의 종합

구분		재정력지수 기준	초과액 기준	초과 비중 기준
'11년 대비 '21년	지방교부세	형평화	형평화(변이) 불균형(지니)	형평화
	조정교부금	형평화	형평화	형평화
	도비보조금	형평화	형평화	형평화
	순위변동	지방교부세 +5 조정교부금 +15 도비보조금 +12	지방교부세 -1 조정교부금 -2 도비보조금 -2	지방교부세 +5 조정교부금 +15 도비보조금 +12
11년 평균	지방교부세	형평화	불균형	불균형
	조정교부금	불균형	형평화	형평화
	도비보조금	형평화	형평화	형평화
	순위변동	지방교부세 +1 조정교부금 +3	지방교부세 +1 조정교부금 -1	지방교부세 +1 조정교부금 +3

주: 순위변동은 수원시 순위를 의미함('+는 순위 하락, '-'는 순위 상승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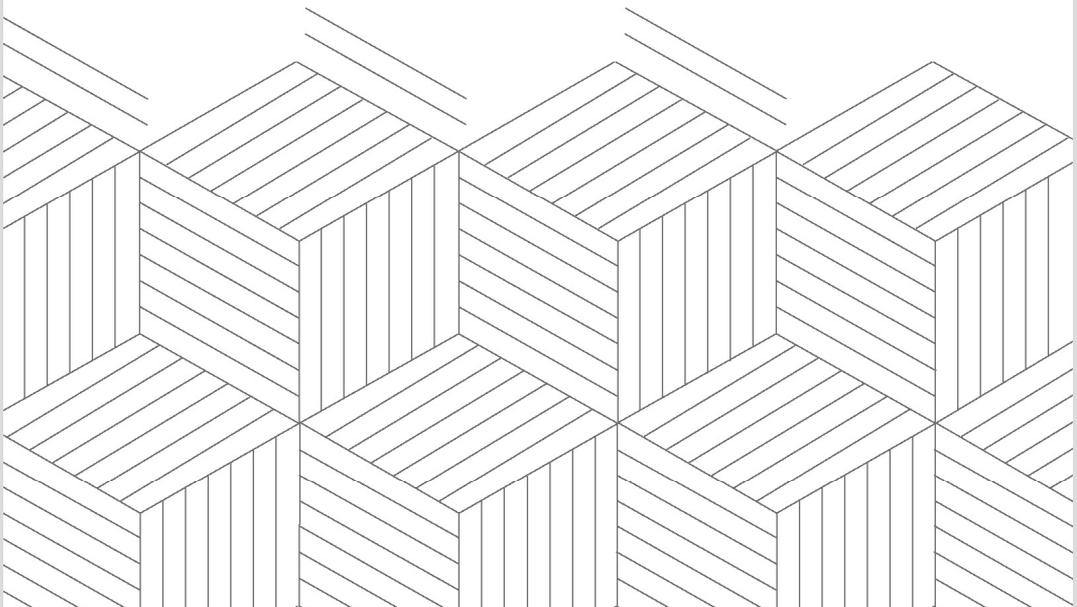
그러나 비록 제도별 재정형평화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첫째, 초과액에 따른 순위의 변동이 발생된다는 점, 둘째, 초과액의 비중이 자치단체별 동일하게 증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정력 역전은 심각하게 발생된다.

제4장
내용 비공개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단체자치에서 출발한 역사적 배경을 갖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의 양 역시 증가되고 있다. 지방재정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은 중앙과 지방을 이원화하여 정부 간 재정관계를 연구해 왔다. 그만큼 지방 내에서 광역과 기초 간 재정관계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정부 간 재정관계 규모를 볼 때 당연한 것일 수 있다. 2021년 결산 기준 지방교부세는 58.4조원, 국고보조금은 84.2조원 규모이다. 반면 조정교부금은 13.6조원, 시·도비보조금은 20.9조원 규모이다.

그러나 재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방과 지방 간 재정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과 자원배분의 결정 주체가 제도 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제도의 목적과 주체의 다양성은 희소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재정력 역전 현상을 발생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광역과 기초 간 협업의 증가, 기초자치단체의 다양성 가속화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재정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재정을 이전받아 사용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재정은 항상 부족하다. 재정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풍족했던 적이 없다. 여기서의 풍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준재정수요 만큼의 절대적 수입의 부족이 아니라 상대적 부족을 말한다.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고, 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공공재 공급의 효율을 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보다는 부족한 재원을 요청해 배분 받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증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자치단체는 재정을 둘러싼 갈등을 하게 되며,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갈등의 완화와 바람직한 재정조정제도의 설정은 지방재정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비록 재정조정제도가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경기도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은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도모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면서 도비보조금은 사업 추진의 효율을 피하기 위한 재정지원이라는 차별화된 목적을 갖는다. 이들 각각의 제도들이 자치단체의 재정형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재정력 역전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분석한 뒤,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의 대상은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이지만 지방교부세는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그 재원의 규모가 워낙 크고, 자치단체의 부족재원 보전과 균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전되는 무조건부 보조금이기 때문이다.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입에 지방교부세가 추가된 상태에서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이 각각 누적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형평성은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재정형평성과 재정력 역전 현상을 분석하였다.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를 통한 재정형평성은 절대적 균등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척도이다. 그러나 절대적 균등은 자치단체별 공공재 공급 비용과 특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해 자칫 재원배분의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최소한 이전되는 재원을 모두 배분 받은 상태는 이전재원이 배분되기 이전의 자치단체 간 재정상태의 순위를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예로 수원시의 2023년 재정자립도는 44.2%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0위이다. 그러나 이전재원이 포함된 재정자주도는 55.7%로 137위가 된다. 순위가 127위나 하락된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재정력 역전 현상이다. 재정력 역전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은 이전되는 재원이 기준재정수요를 넘어설 때 그 증가분은 반드시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 대비 동일 비율이어야 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지방교부세는 재정형평화(절대적 균등화)에 도움을 준 반면, 재정력 역전 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교부금은 재정형평화(절대적 균등화)는 축소 시켰으나 재정력 역전 현상은 완화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도비보조금은 절대적 재정형평화를 향상 시키고, 재정력 역전 현상을 완화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석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재정력 역전 현상은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에 의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뿐 재정력 역전 현상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연구에서 설정한 재정력 역전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은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일부는 자체세입에 지방교부세가 보전된 이후에도 동일한 재정력지수를 사용하는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에 의해 기준재정수요를 초과하는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반면 일부 시·군은 해당 자치단체의 공공재 공급 비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준에서의 재원을 배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2절 정책 제언

지방자치의 고도화와 자치단체 간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차별화된 공공재 공급 요구에 자치단체는 매우 민감하고 영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과거 포디즘으로 대변되던 동일 공공재의 대량공급은 이제 포스트 포디즘의 맥락에서 다양한 소량의 공공재 공급을 필요로 한다. 공공재 생산 및 공급에 있어 규모의 경제는 사라지고, 그만큼 재정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국가 총량의 재정은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고정되어 있다. 매년의 한계적 증가분은 공공재 공급의 수요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다. 그만큼 정부 간 재정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떠한 재정관계도 재정총량의 순증이 없다면 제로섬 게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자치단체 간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을 둘러싼 정책의 결정은 편익과 부담이 명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Boadway와 Hobson(1993)이 말한 바와 같이 누구나 만족하는 정책은 수립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구조적 한계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현 제도의 효율성이다. 정부 간 재정관계가 희소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자치단체에는 과소 지원되고 어떤 자치단체에게는 과잉 지원된다면 재정은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이전재원은 많은 경우 재정환상과 끈끈이 효과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잘못 지원된 재정은 국가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재원의 배분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자치단체는 자체 수익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악순환의 지속이 발생된다. 재정의 형평을 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최소한 재정력 역전 현상을 발생시켜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신의성실성을 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수원시는 2023년부터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 받았다. 2023년 현재 수원시의 재정력지수는 상위권에 있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지위에 있다. 수원시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재정력지수가 높으니 특례시의 특수 수요는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재정력지수의 동일 사용은 형평을 가장한 재정력 역전 현상을 가속 시킨다.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재정이전의 규모를 판단하는 시기는 당초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수입 대비 수요이다. 그러나 이 기준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지방교부세 배분에서도, 조정교부금 배분에서도, 도비보조금 배분에서도 역차별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재정여건을 비교하던 시기에는 상대적 우월성을 가지나 재원이 배분되고 난 뒤에는 상대적 열위에 놓이게 된다.

민선 8기가 시작과 함께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논의가 확대될 것이다. 수원시는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제시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1995년 민선 자치 실시 이후 지방세 확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15년 동안 노력한 결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었다. 이 연구를 경기도와 기초 간 재정관계 개선 논리 개발의 출발점으로 삼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권오성. (2004). 재정분권화가 도시정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2호. pp. 83-101.
- 김리영. (2013) 인구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5권 4호. pp. 1-19.
- 김병석, 서원석. (2014). 지역의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6권 4호. pp. 1-14.
- 김성주, 윤태섭. (2018).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우철. (2021). 「미시자료를 활용한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김정완. (2019).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재정적 형평화와 효율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4권3호. pp. 199-233.
- 김현아. (2007). 형평화 보조금에 대한 논의. 『재정포럼』, 통권 128호. pp. 26-42.
- _____. (2008).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 OECD주요국가의 보조금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pp. 187-210.
- 김홍환. (2016).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1권 3호. pp.127-152.
- 라휘문. (2014).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지방세입의 연계구조 설계: 대산임해산업지역(대산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4권 4호. pp. 105-126.
- _____. (2020). 경기도 지방보조금 보조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학회보』, 제34권 1호. pp. 141-169.
- 박근후. (2019).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해소방안」. 국회예산정책처
- 박지현. (2020).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 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니계수 분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5권 1호. pp. 73-109.
- 사득환. (2002). 정부 간 관계 변화와 지방정부 간의 환경 협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4권 제1호. pp. 123-144.
- 오시환, 한동효.(2009). 재정분권화가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3권2호. pp. 51-73.
- 우명동. (2019). 「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윤태섭. (2020).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월간공공정책』, 통권174호. pp. 22-25.
- 이미애. (2014). 정부 간 재정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평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 제1호. pp. 337-366.
- 이상범. (2019a). 지방재정의 현 실태와 재정분권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pp. 21-47.
- _____. (2019b). 광역-기초 간 시·도비 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4호. pp. 165-195.
- 이윤조, 이응모. (2019).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제28권 1호. pp. 249-274.
- 이장욱. (2021).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 환경변화 증가에 따른 중장기 지방재정 운용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pp. 473-484.
- 이장욱, 이채영, 이현우. (2021).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간 도비보조금제도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 이현우. (201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경기연구원.
- 임성일. (199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지성, 이용환, 정재진. (2014). 재정보전금 제도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화량 분석: 경기도 변화에 따른 전국 변화 효과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9권 3호. pp. 61-88.
- 정재진. (2009). 재정분권이 지방재정 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경상적 지출과 투자적 지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 _____. (2018).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지방재정」. 제2권. pp. 10-25
- _____. (2020a).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경쟁과 확산에 관한 연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6권 2호. pp. 133-168.
- _____. (2020b). 코로나19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그리고 지방재정의 논제.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총권 31호. pp. 48-61.
- 조기현. (2016).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재정형평화 실태와 정책대응.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 자료집」. pp. 3-18.
- _____. (2018).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이용한 시군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 우선배분제도 폐지와 배분기준 변경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3권 2호. pp. 179-206.
- 조택희. (2011). 경제활동과 지방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총복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6권 2호. pp. 67-85.
- 최병호, 이근재, 정종필. (2008). 지역균형수요는 보통교부세의 형평화 기능을 제고시키는가?.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3권 3호. pp. 33-58.
- 최병호, 정종필. (2013). 재정보전금제도 개편의 자원 재배분 효과와 함의.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8권 2호. pp. 27-56.
- 최병호. (2014). 재정보전금제도의 개편과 자치단체 간 자원배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1호. pp. 169-192.

- 최지은, 전지성, 장봉진. (2018).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3권 2호. pp. 151-177.
-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행정안전부.
- _____. (2022). 「2022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행정안전부.
- 현승현, 함요상. (2017). 지역산업구조의 생산성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정부연구』. pp. 25-45.
- 홍근석, 김봉균. (2019). 「중앙-광역-기초 간 재정관계 재정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홍준형. (1998).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복기능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황소하. (201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 경기도 조정교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1권 3호. pp. 93-125.
- _____. (2017).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수원시정연구원.

〈영문 자료〉

- Anderson, W. (1960).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Review』.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Atkinson, A., Henry, A. and Michael, B.(eds) (1981). 『Horizontal equity and the tax burden distribution: in the Economics of Taxation』. Washington, Il .C.: The Brookings Institution.
- Bahl, R. W. and Linn, J. F. (1994). Fiscal Decentralization and Intergovernmental Transfer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Journal of Federalism』. 24(1): pp. 1-19.
- Bahl, R. W. (2000). 『Intergovernmental Transfers in Developing and Tradition Countries: Principles and Practi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21097. pp. 1-26.
- Daniel, B., Claire, C., Dirk-Jan K., and Olaf M. (2006).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Decentralized Public Spending. 『OECD Journal on Budgeting』. 5(4): pp. 111-158.
- Bird, R. M. and Smart, M. (2002).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International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0(6): pp. 899-912.
- Bird, R. M., Jack M. M. and Harvey L. K. (ed). (2000). 『Tax Assignment in Canada: A Modest Proposal in Toward a Mission Statement for Canadian Fiscal Federalism』, Ontario: Institut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 Boadway, R. W. and Hobson, P. (1993). 『Intergovernmental Finance in Canada』 Toronto: Canadian tax foundation.
- Elcock, H. (ed). (1994). 『Local Government』. (3rd ed). London: Routledge.

- Fisher, R. C. (2007).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 Thomson South Western.
- Groves, H. M. and C. Harry. Kahn. (1952). The stability of state and local tax yield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2(1): pp. 87-102.
- Jay. M. S. (1985). 「The Fact of File Dictionary of Public Administration」. Facts on File Publications(New York).
- Jun, M. (1997).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in Nine Countries: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Ladd, H. F. & Yinger, J.(1989). 「America's Ailing Cities: Fiscal Health and the Design of Urban Polic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usgrave, R. (1959).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ew York: McGraw-Hill.
- Musgrave, R. A. & Musgrave. P. B. (1989).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McGraw-Hill.
- Oates. W. E. (2005). Toward A Second-Generation Theory of Fiscal Federalism.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2. pp. 349-373.
- Oates, W. E. (1972). 「Fiscal Federalism」.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OECD. (2006).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Decentralized Public Spending 「Working Paper」 No. 3.
- Peterson, P. E. (1981). 「City Limits」. Boston: Little&Brown.
- Plotnick, Robert. (1985). 「A Comparison of Measures of Horizontal Inequity」. In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 Well-Being edited by Martin David and Timothy Smeed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ndall, S. J. and Tadashi. Y. (2005). Getting The Most Out of Public Sector Decentralization In Korea Economics. 「OECD Working Paper」 No. 468.
- Tanzi. V. (1996). Fiscal Federalism and Decentralization: A Review of Some Efficiency and Macroeconomic Aspect. in Sruno and B. Pleskovic(eds.). 「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The World Bank. pp. 295-316.
-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ol. 64.(5): pp. 416-424.
- Williamson, J. G. (1965). Regional Inequality and the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A Description of the Pattern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3(4): pp. 158-200.
- Wilson, D. and Game, C. (1998).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England U.K: Macmillan Press LTD.

Wright, D. (197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North Scituate. MA: Duxbury.

〈인터넷자료〉

OECD 통계, <https://stats.oecd.org/>, 2022.8.1. - 9.12.

| 부 록 |

〈부록 1〉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조정교부금 현황

(단위 : 억원, %)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수원시	1,515	2,351	1,893	2,498	2,785	2,360	2,864	2,217	2,311	2,428	3,489	8.70
성남시	1,926	2,105	1,574	2,721	2,583	3,073	3,176	2,756	2,093	2,049	2,879	4.10
고양시	2,096	1,827	1,475	2,282	2,367	2,571	1,972	1,903	2,668	2,589	2,967	3.54
용인시	2,137	2,107	1,638	2,232	2,734	2,429	2,770	2,785	2,204	2,287	2,765	2.61
부천시	843	949	676	1,031	1,070	1,330	1,552	1,573	1,878	1,849	2,727	12.45
안산시	752	850	663	955	987	1,107	1,291	1,279	1,388	1,575	2,378	12.20
안양시	604	693	523	773	849	887	1,284	1,130	1,397	1,401	2,042	12.96
남양주시	664	854	696	877	934	1,102	1,374	1,517	1,864	1,875	2,760	15.31
화성시	1,534	1,816	1,373	1,945	2,961	2,891	2,949	2,904	2,094	1,870	2,510	5.05
평택시	545	609	487	712	773	958	1,205	1,187	1,396	1,422	1,838	12.93
의정부시	455	520	401	566	715	701	968	1,043	1,262	1,337	1,997	15.94
시흥시	486	510	416	687	769	774	986	1,123	1,262	1,312	1,496	11.91
파주시	535	646	538	728	687	738	942	1,143	1,439	1,606	1,436	10.37
광명시	590	574	433	609	747	780	896	881	998	920	1,156	6.95
김포시	426	496	411	594	549	699	928	1,041	1,246	1,364	1,979	16.61
군포시	338	359	280	410	483	461	712	675	938	906	1,329	14.66
광주시	428	463	317	476	519	578	853	1,093	1,296	1,248	1,831	15.65
이천시	333	370	293	410	477	455	632	636	782	765	1,228	13.92

(단위 : 억원, %)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양주시	320	379	253	388	458	443	695	855	1,029	1,086	1,508	16.78
오산시	272	302	220	311	402	464	646	704	788	780	1,096	14.94
구리시	269	303	210	317	391	386	541	579	782	761	1,144	15.56
안성시	333	351	286	398	423	461	716	831	1,027	1,084	1,077	12.45
포천시	319	351	264	453	464	460	719	801	1,001	1,042	1,498	16.74
의왕시	248	256	225	318	348	373	440	449	691	691	945	14.32
하남시	278	318	272	431	476	658	669	831	885	844	1,236	16.10
여주시	259	294	211	306	390	376	691	773	931	950	1,423	18.55
동두천시	243	274	193	281	487	419	554	554	795	754	1,166	16.99
과천시	817	996	714	749	850	892	653	543	583	475	644	-2.35
양평군	312	343	259	385	502	417	720	683	1,035	968	1,573	17.56
가평군	245	279	202	397	450	367	505	584	868	849	1,382	18.88
연천군	237	255	206	285	517	281	532	630	957	849	1,268	18.27
합계	20,359	22,798	17,601	25,525	29,146	29,888	35,435	35,702	39,888	39,938	54,769	10.40

〈부록 2〉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조정교부금 전년 대비 증감률

단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원시	55.2%	-19.5%	31.9%	11.5%	-15.3%	21.4%	-22.6%	4.2%	5.1%	43.7%
성남시	9.3%	-25.2%	72.8%	-5.1%	19.0%	3.4%	-13.2%	-24.1%	-2.1%	40.5%
고양시	-12.8%	-19.3%	54.8%	3.7%	8.6%	-23.3%	-3.5%	40.2%	-3.0%	14.6%
용인시	-1.4%	-22.3%	36.2%	22.5%	-11.2%	14.0%	0.5%	-20.8%	3.8%	20.9%
부천시	12.5%	-28.7%	52.4%	3.8%	24.3%	16.7%	1.3%	19.4%	-1.5%	47.5%
안산시	13.0%	-22.0%	44.1%	3.3%	12.2%	16.6%	-0.9%	8.5%	13.5%	51.0%
안양시	14.8%	-24.5%	47.8%	9.9%	4.4%	44.8%	-12.0%	23.7%	0.3%	45.8%
남양주시	28.6%	-18.5%	26.0%	6.5%	18.0%	24.6%	10.5%	22.9%	0.6%	47.2%
화성시	18.4%	-24.4%	41.7%	52.2%	-2.3%	2.0%	-1.5%	-27.9%	-10.7%	34.2%
평택시	11.7%	-20.0%	46.2%	8.6%	23.9%	25.8%	-1.5%	17.6%	1.8%	29.3%
의정부시	14.2%	-22.8%	41.0%	26.3%	-1.9%	38.1%	7.7%	21.0%	6.0%	49.3%
시흥시	5.0%	-18.5%	65.2%	11.9%	0.7%	27.4%	14.0%	12.3%	4.0%	14.1%
파주시	20.6%	-16.7%	35.3%	-5.7%	7.4%	27.7%	21.4%	25.9%	11.6%	-10.6%
광명시	-2.8%	-24.5%	40.7%	22.6%	4.4%	14.9%	-1.7%	13.3%	-7.8%	25.7%
김포시	16.5%	-17.2%	44.8%	-7.6%	27.3%	32.8%	12.2%	19.6%	9.5%	45.1%
군포시	6.1%	-22.1%	46.7%	17.7%	-4.5%	54.5%	-5.2%	38.9%	-3.3%	46.6%
광주시	8.3%	-31.6%	50.4%	9.1%	11.3%	47.6%	28.1%	18.6%	-3.7%	46.6%
이천시	10.8%	-20.7%	39.9%	16.4%	-4.7%	39.1%	0.6%	22.9%	-2.2%	60.6%
양주시	18.5%	-33.4%	53.6%	18.0%	-3.2%	56.7%	23.2%	20.3%	5.5%	38.9%
오산시	11.0%	-27.2%	41.3%	29.0%	15.5%	39.4%	9.0%	11.8%	-1.0%	40.5%

단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구리시	12.4%	-30.5%	50.6%	23.4%	-1.2%	40.1%	7.0%	35.1%	-2.7%	50.3%
안성시	5.3%	-18.3%	38.8%	6.4%	9.0%	55.3%	16.1%	23.6%	5.5%	-0.6%
포천시	10.1%	-24.8%	71.7%	2.5%	-1.0%	56.5%	11.4%	25.0%	4.1%	43.8%
의왕시	3.4%	-12.3%	41.4%	9.6%	7.0%	18.1%	1.9%	53.9%	0.1%	36.6%
하남시	14.4%	-14.4%	58.4%	10.6%	38.1%	1.7%	24.2%	6.6%	-4.6%	46.3%
여주시	13.1%	-28.0%	44.8%	27.5%	-3.7%	84.1%	11.9%	20.3%	2.1%	49.8%
동두천시	12.8%	-29.5%	45.6%	73.2%	-13.9%	32.1%	0.0%	43.5%	-5.2%	54.7%
과천시	21.9%	-28.3%	5.0%	13.4%	4.9%	-26.8%	-16.8%	7.4%	-18.5%	35.5%
양평군	10.1%	-24.5%	48.6%	30.2%	-16.9%	72.6%	-5.1%	51.7%	-6.5%	62.5%
가평군	14.0%	-27.9%	97.2%	13.2%	-18.5%	37.7%	15.6%	48.7%	-2.1%	62.7%
연천군	7.9%	-19.4%	38.5%	81.4%	-45.7%	89.6%	18.3%	51.9%	-11.3%	49.3%
합계	12.0%	-22.8%	45.0%	14.2%	2.5%	18.6%	0.8%	11.7%	0.1%	37.1%

〈부록 3〉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도비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수원시	987	1,471	1,453	1,224	1,214	1,314	1,452	1,491	1,928	3,332	2,540	9.92
성남시	518	802	1,072	929	1,015	1,023	1,118	1,221	1,467	2,641	1,865	13.67
고양시	946	1,051	1,311	1,092	1,138	1,114	1,233	1,371	1,727	3,009	2,325	9.41
용인시	664	1,063	1,339	1,152	1,210	967	1,085	1,402	1,773	3,145	2,385	13.63
부천시	566	716	1,001	839	997	859	994	1,050	1,340	2,340	1,807	12.30
안산시	614	845	1,025	765	807	934	990	1,042	1,297	2,137	1,692	10.66
안양시	343	546	738	594	636	642	777	762	923	1,578	1,235	13.68
남양주시	649	911	1,052	526	607	987	1,058	1,264	1,471	2,349	1,912	11.40
화성시	551	751	906	738	807	865	1,123	1,201	1,561	2,654	2,150	14.58
평택시	485	588	695	564	704	670	824	830	1,076	1,800	1,461	11.65
의정부시	404	529	623	568	576	616	676	774	938	1,601	1,279	12.23
시흥시	394	479	634	440	594	647	698	835	1,028	1,707	1,497	14.26
파주시	659	879	801	579	756	717	725	861	1,084	1,767	1,441	8.15
광명시	226	319	440	367	402	430	471	474	560	933	701	12.01
김포시	372	519	503	435	438	552	587	656	860	1,565	1,366	13.91
군포시	231	343	407	317	326	348	409	396	489	851	663	11.13
광주시	416	592	436	470	542	598	671	739	879	1,399	1,166	10.85
이천시	395	470	714	490	514	518	576	583	707	1,004	781	7.05
양주시	491	544	383	261	472	441	525	594	711	1,008	891	6.13

(단위 : 억원, %)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오산시	184	329	340	298	311	323	382	416	492	792	664	13.70
구리시	154	263	250	221	231	166	206	308	384	645	550	13.58
안성시	356	301	490	383	382	414	553	527	670	1,098	892	9.63
포천시	433	578	491	436	512	503	562	586	715	948	850	6.97
의왕시	138	201	261	251	229	221	244	276	338	585	456	12.69
하남시	271	246	287	196	177	289	278	381	488	869	749	10.70
여주시	279	292	411	257	315	358	455	485	557	774	670	9.16
동두천시	220	432	493	232	554	732	166	360	407	512	481	8.16
과천시	56	103	94	83	100	129	143	118	153	244	201	13.63
양평군	351	228	439	358	418	354	451	399	485	748	690	7.00
가평군	319	359	771	256	232	211	405	393	342	555	431	3.04
연천군	384	396	101	169	191	239	294	390	406	548	440	1.38
합계	13,055	17,146	19,964	15,490	17,407	18,179	20,131	22,180	27,254	45,140	36,229	10.75

〈부록 4〉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도비보조금 전년 대비 증감률

단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원시	49.1%	-1.2%	-15.8%	-0.8%	8.2%	10.4%	2.7%	29.3%	72.9%	-23.8%
성남시	54.9%	33.7%	-13.3%	9.2%	0.8%	9.2%	9.2%	20.2%	80.1%	-29.4%
고양시	11.2%	24.7%	-16.7%	4.3%	-2.1%	10.7%	11.2%	26.0%	74.2%	-22.7%
용인시	60.0%	26.0%	-13.9%	5.0%	-20.1%	12.1%	29.2%	26.4%	77.4%	-24.2%
부천시	26.4%	39.8%	-16.1%	18.8%	-13.8%	15.7%	5.7%	27.6%	74.6%	-22.8%
안산시	37.5%	21.4%	-25.4%	5.5%	15.8%	6.0%	5.2%	24.5%	64.7%	-20.8%
안양시	59.3%	35.3%	-19.6%	7.1%	1.0%	21.0%	-1.9%	21.0%	71.0%	-21.8%
남양주시	40.2%	15.6%	-50.1%	15.5%	62.6%	7.2%	19.5%	16.4%	59.7%	-18.6%
화성시	36.3%	20.6%	-18.5%	9.2%	7.2%	29.9%	6.9%	30.0%	70.0%	-19.0%
평택시	21.1%	18.3%	-18.9%	24.9%	-4.8%	23.0%	0.7%	29.7%	67.3%	-18.9%
의정부시	31.2%	17.7%	-8.9%	1.5%	6.9%	9.8%	14.4%	21.3%	70.6%	-20.1%
시흥시	21.4%	32.4%	-30.5%	34.8%	8.9%	8.0%	19.5%	23.2%	66.0%	-12.3%
파주시	33.5%	-8.8%	-27.8%	30.6%	-5.1%	1.1%	18.8%	25.9%	63.0%	-18.5%
광명시	41.4%	37.9%	-16.7%	9.6%	7.1%	9.4%	0.7%	18.2%	66.7%	-24.9%
김포시	39.6%	-3.1%	-13.4%	0.7%	25.9%	6.4%	11.6%	31.3%	81.9%	-12.7%
군포시	48.3%	18.8%	-22.2%	2.9%	6.7%	17.6%	-3.1%	23.5%	74.0%	-22.0%
광주시	42.3%	-26.4%	7.7%	15.3%	10.3%	12.3%	10.2%	18.9%	59.2%	-16.7%
이천시	19.0%	51.8%	-31.3%	4.8%	0.8%	11.2%	1.2%	21.3%	42.1%	-22.2%
양주시	10.7%	-29.5%	-31.9%	80.7%	-6.6%	19.1%	13.2%	19.6%	41.8%	-11.6%
오산시	79.1%	3.4%	-12.3%	4.3%	3.7%	18.5%	8.8%	18.3%	61.0%	-16.2%

단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구리시	71.1%	-5.2%	-11.6%	4.8%	-28.4%	24.5%	49.0%	24.7%	68.2%	-14.8%
안성시	-15.4%	62.6%	-21.8%	-0.3%	8.4%	33.5%	-4.7%	27.1%	64.1%	-18.8%
포천시	33.4%	-15.0%	-11.3%	17.5%	-1.9%	11.8%	4.2%	21.9%	32.7%	-10.3%
의왕시	45.8%	29.7%	-4.0%	-8.5%	-3.6%	10.5%	13.0%	22.4%	73.3%	-22.1%
하남시	-9.0%	16.7%	-31.9%	-9.6%	63.0%	-3.8%	37.2%	28.0%	78.2%	-13.8%
여주시	4.8%	40.6%	-37.3%	22.5%	13.4%	27.3%	6.4%	14.9%	39.0%	-13.5%
동두천시	96.6%	14.3%	-53.0%	139.0%	32.0%	-77.3%	116.4%	13.0%	25.8%	-6.1%
과천시	83.5%	-9.0%	-10.9%	19.8%	28.8%	11.1%	-17.5%	29.7%	59.5%	-17.5%
양평군	-35.0%	92.4%	-18.5%	16.8%	-15.4%	27.5%	-11.5%	21.6%	54.1%	-7.8%
가평군	12.4%	114.6%	-66.7%	-9.5%	-9.3%	92.6%	-3.2%	-13.0%	62.5%	-22.4%
연천군	3.1%	-74.5%	66.8%	13.2%	25.4%	22.9%	32.6%	4.2%	34.7%	-19.6%
합계	31.3%	16.4%	-22.4%	12.4%	4.4%	10.7%	10.2%	22.9%	65.6%	-19.7%

〈부록 5〉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입액 현황

(단위 : 억원, %)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수원시	5,759	5,847	6,447	7,130	8,298	7,896	8,593	10,296	11,117	9,739	10,970	6.66
성남시	6,127	6,438	6,506	7,141	7,944	8,746	9,625	10,430	10,939	11,886	14,447	8.96
고양시	4,298	4,430	4,397	4,538	4,807	5,451	5,769	6,194	6,071	6,881	6,853	4.78
용인시	6,576	6,565	6,719	7,251	7,963	8,369	9,149	9,571	10,879	9,936	9,705	3.97
부천시	3,066	3,244	3,216	3,310	3,456	3,856	4,097	4,326	4,441	4,626	4,760	4.50
안산시	3,268	3,448	3,587	3,619	4,014	4,477	4,896	5,211	4,750	4,927	5,129	4.61
안양시	2,872	3,036	2,894	3,075	3,375	3,628	3,893	3,928	4,196	4,469	4,317	4.16
남양주시	2,083	2,168	2,221	2,340	2,581	3,013	3,322	3,500	3,651	4,215	4,642	8.34
화성시	4,476	4,700	5,366	6,341	8,037	8,301	9,050	11,504	13,098	10,787	11,784	10.16
평택시	2,614	2,771	2,866	3,150	3,601	4,188	4,606	5,496	6,049	6,099	6,144	8.92
의정부시	1,268	1,329	1,349	1,410	1,491	1,683	1,799	1,821	2,034	2,120	2,027	4.80
시흥시	1,973	2,146	2,232	2,423	2,638	2,979	3,124	3,428	3,641	3,800	3,893	7.03
파주시	2,112	2,138	2,369	2,314	2,616	3,000	3,414	3,650	3,304	3,303	3,270	4.47
광명시	1,199	1,317	1,349	1,390	1,531	1,706	1,782	1,888	1,820	2,136	2,190	6.21
김포시	1,642	1,714	1,782	1,968	2,160	2,432	2,720	2,993	3,159	3,680	3,684	8.41
군포시	1,200	1,255	1,271	1,353	1,516	1,557	1,617	1,697	1,693	1,926	1,874	4.56
광주시	1,943	1,915	1,854	2,064	2,287	2,661	2,911	2,563	2,916	3,184	3,237	5.24
이천시	1,383	1,440	1,502	1,749	2,521	2,789	2,470	4,337	5,891	3,130	3,303	9.10
양주시	1,070	1,020	1,069	1,122	1,152	1,280	1,341	1,472	1,535	1,658	1,803	5.36

(단위 : 억원, %)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오산시	782	860	883	960	1,036	1,183	1,300	1,317	1,379	1,435	1,557	7.13
구리시	731	756	746	775	823	926	1,015	1,028	1,135	1,257	1,270	5.67
안성시	1,151	1,288	1,330	1,351	1,469	1,558	1,777	1,795	1,909	2,136	2,140	6.40
포천시	915	966	991	1,028	1,123	1,255	1,401	1,306	1,299	1,575	1,519	5.20
의왕시	712	751	801	844	915	1,101	1,134	1,219	1,271	1,499	1,493	7.68
하남시	939	944	899	1,032	1,155	1,422	1,631	1,852	2,247	2,570	3,440	13.86
여주시	982	1,058	1,056	1,037	1,131	1,205	1,279	1,208	1,156	1,410	1,371	3.39
동두천시	300	335	331	350	360	398	424	383	442	454	508	5.42
과천시	551	570	564	550	649	722	723	678	781	1,030	1,272	8.72
양평군	432	461	500	515	559	667	702	727	729	923	1,017	8.93
가평군	383	390	377	413	443	516	571	548	564	612	635	5.17
연천군	353	398	449	458	451	493	441	509	582	424	596	5.37
합계	63,161	65,695	67,922	73,002	82,100	89,458	96,574	106,875	114,681	113,829	120,852	6.70

〈부록 6〉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입 대비 조정교부금 비중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원시	26.3%	40.2%	29.4%	35.0%	33.6%	29.9%	33.3%	21.5%	20.8%	24.9%	31.8%
성남시	31.4%	32.7%	24.2%	38.1%	32.5%	35.1%	33.0%	26.4%	19.1%	17.2%	19.9%
고양시	48.8%	41.2%	33.5%	50.3%	49.2%	47.2%	34.2%	30.7%	43.9%	37.6%	43.3%
용인시	32.5%	32.1%	24.4%	30.8%	34.3%	29.0%	30.3%	29.1%	20.3%	23.0%	28.5%
부천시	27.5%	29.3%	21.0%	31.1%	31.0%	34.5%	37.9%	36.4%	42.3%	40.0%	57.3%
안산시	23.0%	24.6%	18.5%	26.4%	24.6%	24.7%	26.4%	24.5%	29.2%	32.0%	46.4%
안양시	21.0%	22.8%	18.1%	25.1%	25.2%	24.4%	33.0%	28.8%	33.3%	31.3%	47.3%
남양주시	31.9%	39.4%	31.3%	37.5%	36.2%	36.6%	41.4%	43.4%	51.1%	44.5%	59.5%
화성시	34.3%	38.6%	25.6%	30.7%	36.8%	34.8%	32.6%	25.2%	16.0%	17.3%	21.3%
평택시	20.9%	22.0%	17.0%	22.6%	21.5%	22.9%	26.2%	21.6%	23.1%	23.3%	29.9%
의정부시	35.9%	39.1%	29.7%	40.1%	47.9%	41.7%	53.8%	57.2%	62.0%	63.1%	98.5%
시흥시	24.6%	23.8%	18.6%	28.3%	29.1%	26.0%	31.5%	32.8%	34.6%	34.5%	38.4%
파주시	25.4%	30.2%	22.7%	31.5%	26.2%	24.6%	27.6%	31.3%	43.6%	48.6%	43.9%
광명시	49.3%	43.6%	32.1%	43.8%	48.8%	45.7%	50.3%	46.7%	54.9%	43.1%	52.8%
김포시	25.9%	28.9%	23.0%	30.2%	25.4%	28.7%	34.1%	34.8%	39.4%	37.1%	53.7%
군포시	28.2%	28.6%	22.0%	30.3%	31.8%	29.6%	44.1%	39.8%	55.4%	47.0%	70.9%
광주시	22.0%	24.2%	17.1%	23.1%	22.7%	21.7%	29.3%	42.6%	44.4%	39.2%	56.5%
이천시	24.1%	25.7%	19.5%	23.4%	18.9%	16.3%	25.6%	14.7%	13.3%	24.4%	37.2%
양주시	29.9%	37.2%	23.6%	34.6%	39.7%	34.6%	51.8%	58.1%	67.0%	65.5%	83.6%
오산시	34.8%	35.2%	24.9%	32.4%	38.7%	39.2%	49.7%	53.5%	57.1%	54.4%	70.4%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구리시	36.8%	40.0%	28.2%	40.9%	47.5%	41.7%	53.3%	56.3%	68.9%	60.6%	90.1%
안성시	28.9%	27.2%	21.5%	29.4%	28.8%	29.6%	40.3%	46.3%	53.8%	50.7%	50.3%
포천시	34.8%	36.3%	26.6%	44.0%	41.3%	36.6%	51.3%	61.3%	77.1%	66.2%	98.6%
의왕시	34.8%	34.2%	28.1%	37.6%	38.1%	33.8%	38.8%	36.8%	54.4%	46.1%	63.3%
하남시	29.6%	33.6%	30.2%	41.7%	41.2%	46.2%	41.0%	44.8%	39.4%	32.9%	35.9%
여주시	26.4%	27.7%	20.0%	29.5%	34.5%	31.2%	54.0%	64.0%	80.5%	67.3%	103.8%
동두천시	81.0%	81.8%	58.4%	80.3%	135.5%	105.4%	130.7%	144.6%	179.8%	166.0%	229.6%
과천시	148.1%	174.6%	126.6%	136.3%	131.0%	123.4%	90.4%	80.1%	74.7%	46.1%	50.6%
양평군	72.2%	74.5%	51.9%	74.8%	89.7%	62.5%	102.5%	93.9%	142.1%	105.0%	154.7%
가평군	63.9%	71.6%	53.4%	96.3%	101.6%	71.1%	88.5%	106.5%	154.0%	138.7%	217.7%
연천군	67.0%	64.1%	45.9%	62.1%	114.6%	57.0%	120.7%	123.8%	164.4%	200.2%	212.7%
합계	32.2%	34.7%	25.9%	35.0%	35.5%	33.4%	36.7%	33.4%	34.8%	35.1%	45.3%

〈부록 7〉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입 대비 도비보조금 비중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원시	17.1%	25.2%	22.5%	17.2%	14.6%	16.6%	16.9%	14.5%	17.3%	34.2%	23.1%
성남시	8.4%	12.5%	16.5%	13.0%	12.8%	11.7%	11.6%	11.7%	13.4%	22.2%	12.9%
고양시	22.0%	23.7%	29.8%	24.1%	23.7%	20.4%	21.4%	22.1%	28.4%	43.7%	33.9%
용인시	10.1%	16.2%	19.9%	15.9%	15.2%	11.6%	11.9%	14.6%	16.3%	31.7%	24.6%
부천시	18.5%	22.1%	31.1%	25.4%	28.9%	22.3%	24.3%	24.3%	30.2%	50.6%	38.0%
안산시	18.8%	24.5%	28.6%	21.1%	20.1%	20.9%	20.2%	20.0%	27.3%	43.4%	33.0%
안양시	11.9%	18.0%	25.5%	19.3%	18.8%	17.7%	20.0%	19.4%	22.0%	35.3%	28.6%
남양주시	31.2%	42.0%	47.4%	22.5%	23.5%	32.8%	31.8%	36.1%	40.3%	55.7%	41.2%
화성시	12.3%	16.0%	16.9%	11.6%	10.0%	10.4%	12.4%	10.4%	11.9%	24.6%	18.2%
평택시	18.6%	21.2%	24.3%	17.9%	19.5%	16.0%	17.9%	15.1%	17.8%	29.5%	23.8%
의정부시	31.8%	39.8%	46.2%	40.3%	38.6%	36.6%	37.6%	42.5%	46.1%	75.5%	63.1%
시흥시	20.0%	22.3%	28.4%	18.2%	22.5%	21.7%	22.4%	24.3%	28.2%	44.9%	38.4%
파주시	31.2%	41.1%	33.8%	25.0%	28.9%	23.9%	21.2%	23.6%	32.8%	53.5%	44.1%
광명시	18.8%	24.2%	32.6%	26.4%	26.3%	25.2%	26.4%	25.1%	30.8%	43.7%	32.0%
김포시	22.6%	30.3%	28.2%	22.1%	20.3%	22.7%	21.6%	21.9%	27.2%	42.5%	37.1%
군포시	19.2%	27.3%	32.0%	23.4%	21.5%	22.3%	25.3%	23.3%	28.9%	44.2%	35.4%
광주시	21.4%	30.9%	23.5%	22.7%	23.7%	22.5%	23.0%	28.8%	30.1%	43.9%	36.0%
이천시	28.6%	32.7%	47.5%	28.0%	20.4%	18.6%	23.3%	13.4%	12.0%	32.1%	23.6%
양주시	45.9%	53.3%	35.9%	23.3%	41.0%	34.4%	39.1%	40.4%	46.3%	60.8%	49.4%
오산시	23.5%	38.3%	38.5%	31.1%	30.0%	27.3%	29.4%	31.6%	35.7%	55.2%	42.6%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구리시	21.0%	34.8%	33.5%	28.5%	28.1%	17.9%	20.3%	29.9%	33.8%	51.3%	43.3%
안성시	30.9%	23.4%	36.8%	28.3%	26.0%	26.6%	31.1%	29.3%	35.1%	51.4%	41.7%
포천시	47.4%	59.8%	49.6%	42.4%	45.6%	40.1%	40.1%	44.9%	55.0%	60.2%	56.0%
의왕시	19.4%	26.8%	32.6%	29.7%	25.1%	20.1%	21.5%	22.6%	26.6%	39.0%	30.5%
하남시	28.8%	26.1%	32.0%	19.0%	15.3%	20.3%	17.0%	20.6%	21.7%	33.8%	21.8%
여주시	28.4%	27.6%	38.9%	24.8%	27.9%	29.7%	35.6%	40.1%	48.2%	54.9%	48.9%
동두천시	73.3%	128.9%	149.2%	66.2%	154.1%	183.9%	39.3%	94.0%	92.1%	112.8%	94.7%
과천시	10.2%	18.1%	16.6%	15.2%	15.4%	17.8%	19.8%	17.4%	19.6%	23.7%	15.8%
양평군	81.1%	49.5%	87.8%	69.4%	74.7%	53.0%	64.2%	54.8%	66.6%	81.1%	67.8%
가평군	83.3%	92.0%	204.2%	62.1%	52.4%	40.8%	71.1%	71.7%	60.6%	90.7%	67.9%
연천군	108.6%	99.4%	22.5%	36.8%	42.3%	48.5%	66.7%	76.6%	69.8%	129.1%	73.9%
합계	20.7%	26.1%	29.4%	21.2%	21.2%	20.3%	20.8%	20.8%	23.8%	39.7%	30.0%

〈부록 8〉 최근 11년간 자치단체별 인구 현황

(단위 : 백명, %)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수원시	10,775	10,885	11,203	11,482	11,943	12,070	12,170	12,188	12,150	12,102	11,837	0.94
성남시	9,802	9,793	9,786	9,795	9,488	9,515	9,443	9,314	9,199	9,220	9,309	-0.51
고양시	9,501	9,612	9,699	9,906	9,901	9,991	10,051	10,070	10,246	10,455	10,794	1.28
용인시	8,766	8,960	9,160	9,415	9,713	9,826	9,963	10,261	10,525	10,670	10,775	2.09
부천시	8,752	8,725	8,699	8,637	8,438	8,440	8,455	8,488	8,368	8,331	8,061	-0.82
안산시	7,149	7,156	7,151	7,137	7,470	7,431	7,337	7,201	7,147	7,173	6,527	-0.91
안양시	6,217	6,156	6,114	6,079	5,852	5,820	5,767	5,666	5,573	5,423	5,472	-1.27
남양주시	5,641	5,785	5,995	6,183	6,291	6,416	6,449	6,619	6,811	6,960	7,338	2.66
화성시	5,058	5,168	5,255	5,303	6,087	6,554	7,086	7,773	8,386	8,809	8,870	5.78
평택시	4,195	4,269	4,343	4,420	4,579	4,723	4,861	5,045	5,212	5,425	5,643	3.01
의정부시	4,318	4,304	4,291	4,310	4,216	4,247	4,265	4,323	4,404	4,496	4,637	0.71
시흥시	4,038	4,011	3,995	3,968	4,252	4,293	4,464	4,802	5,087	5,351	5,120	2.40
파주시	3,556	3,788	3,942	4,017	4,153	4,240	4,307	4,479	4,543	4,605	4,832	3.11
광명시	3,440	3,552	3,556	3,531	3,385	3,344	3,283	3,235	3,135	2,981	2,929	-1.59
김포시	2,383	2,570	2,874	3,123	3,527	3,658	3,924	4,249	4,429	4,745	4,865	7.40
군포시	2,878	2,873	2,868	2,863	2,857	2,843	2,809	2,769	2,752	2,756	2,685	-0.69
광주시	2,498	2,652	2,757	2,867	3,103	3,223	3,410	3,642	3,752	3,851	3,873	4.48
이천시	2,026	2,046	2,049	2,055	2,090	2,148	2,188	2,206	2,230	2,262	2,232	0.97
양주시	1,967	2,004	2,003	1,991	2,060	2,070	2,126	2,178	2,247	2,333	2,364	1.85

(단위 : 백명, %)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오산시	1,825	1,939	2,003	2,055	2,138	2,155	2,199	2,281	2,340	2,406	2,300	2.34
구리시	1,964	1,949	1,923	1,897	1,801	1,839	1,897	1,959	1,923	1,921	1,919	-0.23
안성시	1,779	1,807	1,816	1,822	1,948	1,964	1,988	2,011	2,023	2,030	1,895	0.63
포천시	1,587	1,580	1,576	1,566	1,634	1,627	1,612	1,616	1,599	1,579	1,489	-0.63
의왕시	1,474	1,496	1,548	1,598	1,549	1,536	1,519	1,496	1,558	1,602	1,634	1.03
하남시	1,505	1,484	1,463	1,451	1,548	1,954	2,190	2,386	2,605	2,798	3,201	7.84
여주시	1,093	1,091	1,096	1,093	1,099	1,103	1,115	1,121	1,120	1,134	1,122	0.26
동두천시	957	963	972	976	974	986	974	975	965	952	936	-0.22
과천시	723	720	711	706	648	609	536	537	538	580	733	0.15
양평군	958	994	1,022	1,036	1,019	1,057	1,094	1,111	1,118	1,138	1,212	2.38
가평군	589	594	608	610	589	594	595	600	598	602	623	0.56
연천군	452	449	456	456	438	444	440	434	425	423	427	-0.56
합계	117,866	119,374	120,933	122,346	124,791	126,720	128,516	131,032	133,009	135,117	135,655	1.42

〈부록 9〉 최근 자치단체별 1인당 조정교부금 배분 현황

(단위 : 천원, %)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수원시	141	216	169	218	233	196	235	182	190	201	295	7.69
성남시	196	215	161	278	272	323	336	296	228	222	309	4.64
고양시	221	190	152	230	239	257	196	189	260	248	275	2.22
용인시	244	235	179	237	282	247	278	271	209	214	257	0.51
부천시	96	109	78	119	127	158	184	185	224	222	338	13.38
안산시	105	119	93	134	132	149	176	178	194	220	364	13.22
안양시	97	113	86	127	145	152	223	199	251	258	373	14.41
남양주시	118	148	116	142	148	172	213	229	274	269	376	12.32
화성시	303	352	261	367	486	441	416	374	250	212	283	-0.69
평택시	130	143	112	161	169	203	248	235	268	262	326	9.62
의정부시	105	121	93	131	170	165	227	241	287	297	431	15.12
시흥시	120	127	104	173	181	180	221	234	248	245	292	9.28
파주시	141	216	169	218	233	196	235	182	190	201	295	7.69
광명시	196	215	161	278	272	323	336	296	228	222	309	4.64
김포시	221	190	152	230	239	257	196	189	260	248	275	2.22
군포시	244	235	179	237	282	247	278	271	209	214	257	0.51
광주시	96	109	78	119	127	158	184	185	224	222	338	13.38
이천시	105	119	93	134	132	149	176	178	194	220	364	13.22
양주시	97	113	86	127	145	152	223	199	251	258	373	14.41

(단위 : 천원, %)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오산시	118	148	116	142	148	172	213	229	274	269	376	12.32
구리시	303	352	261	367	486	441	416	374	250	212	283	-0.69
안성시	130	143	112	161	169	203	248	235	268	262	326	9.62
포천시	105	121	93	131	170	165	227	241	287	297	431	15.12
의왕시	120	127	104	173	181	180	221	234	248	245	292	9.28
하남시	151	170	137	181	165	174	219	255	317	349	297	7.04
여주시	172	162	122	173	221	233	273	272	318	309	395	8.69
동두천시	179	193	143	190	156	191	236	245	281	287	407	8.58
과천시	118	125	98	143	169	162	254	244	341	329	495	15.46
양평군	171	175	115	166	167	179	250	300	345	324	473	10.69
가평군	165	181	143	199	228	212	289	288	351	338	550	12.83
연천군	163	189	126	195	222	214	327	393	458	465	638	14.65
합계	149	156	110	151	188	215	294	309	337	324	477	12.31

〈부록 10〉 최근 자치단체별 1인당 도비보조금 배분 현황

(단위 : 천원, %)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수원시	92	135	130	107	102	109	119	122	159	275	215	8.89
성남시	53	82	110	95	107	108	118	131	159	286	200	14.26
고양시	100	109	135	110	115	112	123	136	169	288	215	8.03
용인시	76	119	146	122	125	98	109	137	168	295	221	11.31
부천시	65	82	115	97	118	102	118	124	160	281	224	13.23
안산시	86	118	143	107	108	126	135	145	181	298	259	11.67
안양시	55	89	121	98	109	110	135	135	166	291	226	15.14
남양주시	115	157	176	85	96	154	164	191	216	338	261	8.51
화성시	109	145	172	139	133	132	158	154	186	301	242	8.33
평택시	116	138	160	127	154	142	170	164	206	332	259	8.39
의정부시	93	123	145	132	137	145	158	179	213	356	276	11.43
시흥시	98	119	159	111	140	151	156	174	202	319	292	11.58
파주시	185	232	203	144	182	169	168	192	239	384	298	4.88
광명시	66	90	124	104	119	129	143	146	179	313	239	13.83
김포시	156	202	175	139	124	151	150	154	194	330	281	6.06
군포시	80	119	142	111	114	122	146	143	178	309	247	11.90
광주시	167	223	158	164	175	185	197	203	234	363	301	6.10
이천시	195	230	348	239	246	241	263	264	317	444	350	6.02
양주시	250	271	191	131	229	213	247	273	316	432	377	4.20

(단위 : 천원, %)

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오산시	101	170	170	145	146	150	174	182	210	329	289	11.10
구리시	78	135	130	116	128	90	109	157	199	336	286	13.84
안성시	200	167	270	210	196	211	278	262	331	541	471	8.94
포천시	273	366	312	278	314	309	349	363	447	600	571	7.65
의왕시	94	134	169	157	148	144	161	184	217	365	279	11.54
하남시	180	166	197	135	114	148	127	160	187	310	234	2.65
여주시	255	268	375	235	287	324	409	432	497	683	598	8.88
동두천시	230	448	508	238	569	742	171	369	422	538	514	8.40
과천시	78	143	132	118	154	211	267	220	284	421	275	13.46
양평군	366	229	429	345	410	335	412	359	434	657	569	4.52
가평군	542	605	1,268	420	394	354	681	655	571	922	692	2.47
연천군	849	881	222	370	435	539	668	899	955	1,295	1,030	1.95
합계	111	144	165	127	139	143	157	169	205	334	267	9.20

〈부록 11〉 경기도 31개 시·군 연도별 재정력지수 및 순위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11	수원시	1.068927	1.084765	1.333783	1.496002	5	5	6	6
	성남시	1.517324	1.590547	1.924496	2.014289	3	1	3	3
	고양시	1.049164	1.071080	1.443549	1.611620	6	6	5	5
	용인시	1.376917	1.389534	1.787653	1.911421	4	4	4	4
	부천시	0.792970	1.011796	1.188525	1.307175	12	24	21	25
	안산시	0.749320	0.954347	1.114677	1.245640	16	31	31	31
	안양시	0.853150	1.015884	1.172974	1.262120	9	21	24	30
	남양주시	0.740490	1.017177	1.197005	1.372855	17	20	19	17
	화성시	1.541471	1.568084	1.949706	2.086762	2	3	2	2
	평택시	0.759329	1.020549	1.160477	1.285082	15	18	26	29
	의정부시	0.682212	1.052161	1.224006	1.376408	20	7	10	15
	시흥시	0.880828	1.035524	1.211589	1.354573	7	14	14	22
	파주시	0.803200	1.010449	1.180774	1.390247	11	27	23	11
	광명시	0.786968	1.012588	1.284249	1.388037	13	23	7	12
	김포시	0.876946	1.040335	1.220797	1.378364	8	12	12	13
	군포시	0.732879	1.037278	1.213633	1.334014	18	13	13	23
	광주시	0.845123	1.030296	1.222457	1.409463	10	15	11	9
	이천시	0.673208	1.050216	1.191556	1.359020	22	9	20	20
	양주시	0.626992	1.007833	1.149826	1.367928	24	28	30	18
	오산시	0.770904	1.010662	1.202307	1.331645	14	25	17	24
	구리시	0.674570	1.019070	1.198555	1.301122	21	19	18	28
	안성시	0.626328	1.010553	1.152688	1.304519	25	26	29	27
	포천시	0.473890	1.048561	1.187026	1.375412	27	11	22	16
	의왕시	0.642348	1.050704	1.251008	1.362509	23	8	8	19
	하남시	0.723916	1.013221	1.210652	1.403262	19	22	15	10
	여주시	0.537434	1.024067	1.160327	1.306771	26	17	27	26
	동두천시	0.441039	1.030272	1.231332	1.413152	28	16	9	8
	과천시	1.546389	1.574881	2.377457	2.432605	1	2	1	1
	양평군	0.393100	1.049616	1.203997	1.377474	30	10	16	14
	가평군	0.403729	0.998846	1.153417	1.354808	29	30	28	21
	연천군	0.306432	1.005716	1.170298	1.437121	31	29	25	7
평균	0.803145	1.091504	1.311961	1.462949					
표준편차	0.317541	0.173206	0.286225	0.267740					
변이계수	0.395371	0.158686	0.218166	0.183014					
지니계수	0.214785	0.063905	0.090531	0.080010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12	수원시	1.074604	1.104059	1.486869	1.726475	5	6	5	5
	성남시	1.507209	1.525562	1.889163	2.027656	2	2	4	4
	고양시	1.036788	1.061500	1.375178	1.555705	6	7	7	8
	용인시	1.530757	1.550453	1.942344	2.140023	1	1	3	3
	부천시	0.782459	1.022851	1.221769	1.371806	13	14	16	26
	안산시	0.729928	1.021908	1.205161	1.387321	16	15	19	22
	안양시	0.834485	1.019436	1.199207	1.340776	9	21	21	27
	남양주시	0.729991	1.047821	1.270855	1.508758	15	9	8	9
	화성시	1.498616	1.523352	1.987330	2.179223	3	3	2	2
	평택시	0.726174	1.007339	1.164101	1.315356	17	26	29	28
	의정부시	0.618331	1.015150	1.221666	1.432092	23	24	17	14
	시흥시	0.854888	1.020500	1.205159	1.378578	8	19	20	24
	파주시	0.783907	0.973784	1.169514	1.435959	12	31	28	13
	광명시	0.790871	1.001270	1.259721	1.403322	11	29	9	20
	김포시	0.861584	1.184835	1.391768	1.608215	7	5	6	6
	군포시	0.701316	1.021283	1.207346	1.384957	18	17	18	23
	광주시	0.819766	1.021282	1.224860	1.485217	10	18	15	10
	이천시	0.641102	1.021515	1.176936	1.374651	20	16	26	25
	양주시	0.597772	1.013996	1.179544	1.417115	24	25	24	18
	오산시	0.752685	1.033343	1.232159	1.448674	14	11	13	11
	구리시	0.627161	1.032912	1.239193	1.418712	21	12	12	17
	안성시	0.597651	0.991850	1.137854	1.263221	25	30	31	31
	포천시	0.481096	1.057887	1.199010	1.431578	27	8	22	15
	의왕시	0.622048	1.036120	1.241903	1.403418	22	10	11	19
	하남시	0.669982	1.024303	1.259508	1.441982	19	13	10	12
	여주시	0.532024	1.006715	1.151207	1.295142	26	27	30	29
	동두천시	0.397143	1.004459	1.231895	1.590351	29	28	14	7
	과천시	1.170700	1.210612	2.207130	2.310194	4	4	1	1
	양평군	0.367910	1.016328	1.172186	1.275675	30	23	27	30
	가평군	0.397282	1.018619	1.180317	1.388120	28	22	23	21
	연천군	0.300556	1.019806	1.178458	1.424344	31	20	25	16
	평균	0.775380	1.084221	1.329333	1.521439				
표준편차	0.309071	0.154665	0.273662	0.267397					
변이계수	0.398605	0.142651	0.205864	0.175752					
지니계수	0.217847	0.058595	0.090611	0.084671					

도 연	구분	재정력지수				순위			
		㉑ 현재	㉒ 지방교부세	㉓ 조정교부금	㉔ 도비보조금	㉑	㉒	㉓	㉔
2 0 1 3	수원시	1.061417	1.084887	1.382193	1.610400	5	5	5	5
	성남시	1.234574	1.254486	1.513286	1.689480	3	3	4	4
	고양시	1.033237	1.056743	1.301525	1.519166	6	6	6	8
	용인시	1.373113	1.396658	1.675811	1.904036	1	1	2	2
	부천시	0.762571	1.020935	1.159241	1.363920	11	9	14	17
	안산시	0.697922	0.996425	1.136666	1.353648	16	25	20	18
	안양시	0.788165	1.006559	1.141193	1.331221	10	14	17	22
	남양주시	0.703479	0.998019	1.168707	1.426810	14	23	12	9
	화성시	1.254594	1.272462	1.568131	1.763385	2	2	3	3
	평택시	0.698633	0.988924	1.104086	1.268492	15	28	26	27
	의정부시	0.579179	1.000083	1.145336	1.370970	24	22	15	15
	시흥시	0.810692	1.018954	1.163346	1.383509	8	10	13	10
	파주시	0.761777	0.990191	1.135082	1.350874	12	27	21	19
	광명시	0.713379	1.012024	1.196027	1.382850	13	12	7	11
	김포시	0.857537	1.024579	1.177347	1.364455	7	7	10	16
	군포시	0.686661	1.002607	1.144225	1.350333	17	18	16	20
	광주시	0.805330	1.008179	1.132240	1.303019	9	13	22	23
	이천시	0.621743	0.997058	1.108137	1.378743	20	24	25	13
	양주시	0.574353	0.993252	1.091529	1.240757	25	26	28	30
	오산시	0.676230	1.003476	1.138498	1.347219	18	17	19	21
	구리시	0.583404	1.000825	1.138525	1.301975	23	21	18	24
	안성시	0.593574	1.001705	1.108326	1.290588	22	19	24	25
	포천시	0.435879	0.984988	1.083813	1.267863	27	29	29	28
	의왕시	0.598836	1.017553	1.185505	1.380451	21	11	9	12
	하남시	0.672495	1.005673	1.185777	1.376299	19	15	8	14
	여주시	0.491077	1.004273	1.099899	1.285893	26	16	27	26
	동두천시	0.393188	1.021276	1.173838	1.563542	28	8	11	6
	과천시	1.163141	1.195280	1.832291	1.915922	4	4	1	1
	양평군	0.300834	0.960298	1.067234	1.248157	30	31	31	29
	가평군	0.318690	1.001629	1.112864	1.538300	29	20	23	7
	연천군	0.202957	0.966755	1.083167	1.140347	31	30	30	31
	평균	0.724150	1.041508	1.214640	1.419762				
	표준편차	0.277132	0.097910	0.182497	0.183473				
변이계수	0.382700	0.094007	0.150248	0.129228					
지니계수	0.216919	0.039969	0.068769	0.067854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순위			
		㉑ 현재	㉒ 지방교부세	㉓ 조정교부금	㉔ 도비보조금	㉑	㉒	㉓	㉔
2014	수원시	1.025280	1.046019	1.382568	1.547507	6	6	6	6
	성남시	1.071060	1.089790	1.486824	1.622439	4	4	3	3
	고양시	1.052958	1.069579	1.412021	1.575809	5	5	5	5
	용인시	1.107924	1.125939	1.447537	1.613596	3	3	4	4
	부천시	0.780008	0.996216	1.184780	1.338289	11	12	12	13
	안산시	0.728050	0.994958	1.172913	1.315530	16	13	17	19
	안양시	0.793040	1.001269	1.179374	1.316146	10	8	13	17
	남양주시	0.731966	0.983264	1.171122	1.283735	13	24	19	24
	화성시	1.186854	1.204995	1.568341	1.706295	2	2	2	2
	평택시	0.728902	0.990567	1.139231	1.256882	15	18	24	25
	의정부시	0.604460	0.989104	1.172803	1.357186	22	19	18	9
	시흥시	0.826388	1.011853	1.220788	1.354796	8	7	9	10
	파주시	0.759778	0.985121	1.157336	1.294275	12	22	22	23
	광명시	0.731129	0.998546	1.226230	1.363212	14	11	8	8
	김포시	0.838831	0.999698	1.201480	1.349312	7	10	10	12
	군포시	0.684144	0.992008	1.174672	1.315597	18	15	16	18
	광주시	0.813549	1.000767	1.169136	1.335172	9	9	21	14
	이천시	0.639761	0.991169	1.130130	1.296372	20	16	25	22
	양주시	0.541465	0.965432	1.113569	1.213261	25	27	27	30
	오산시	0.689689	0.991049	1.152640	1.307596	17	17	23	20
	구리시	0.594090	0.987072	1.174950	1.305857	24	21	15	21
	안성시	0.597546	0.977450	1.118293	1.253890	23	25	26	26
	포천시	0.458833	0.949965	1.104159	1.252565	27	30	29	27
	의왕시	0.633493	0.987480	1.192706	1.354484	21	20	11	11
	하남시	0.667398	0.993334	1.264101	1.387262	19	14	7	7
	여주시	0.511284	0.984786	1.112601	1.220189	26	23	28	29
	동두천시	0.423838	0.976221	1.170078	1.329922	28	26	20	15
	과천시	1.219173	1.237720	1.881772	1.953529	1	1	1	1
	양평군	0.306606	0.950563	1.102962	1.244425	29	29	31	28
	가평군	0.279443	0.960297	1.178975	1.320009	30	28	14	16
	연천군	0.178880	0.948493	1.103969	1.195971	31	31	30	31
	평균	0.716317	1.012281	1.234454	1.373584				
표준편차	0.250281	0.066696	0.166517	0.163276					
변이계수	0.349400	0.065887	0.134892	0.118869					
지니계수	0.200803	0.030498	0.062650	0.058787					

도 연	구분	재정력지수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 0 1 5	수원시	1.158449	1.178037	1.581633	1.757604	1	2	4	4
	성남시	1.019375	1.046785	1.449675	1.607948	6	7	6	7
	고양시	1.101709	1.129049	1.486025	1.657674	5	4	5	6
	용인시	1.146063	1.217489	1.644280	1.833198	2	1	3	2
	부천시	0.739938	0.981207	1.191136	1.386867	12	20	21	12
	안산시	0.705606	1.000896	1.195624	1.354923	15	10	20	17
	안양시	0.747142	0.991327	1.198478	1.353519	11	15	19	18
	남양주시	0.722408	1.007312	1.206821	1.336520	13	8	16	22
	화성시	1.105829	1.124714	1.671363	1.820309	4	5	2	3
	평택시	0.709898	0.985087	1.150961	1.301916	14	19	26	27
	의정부시	0.566104	0.979085	1.214982	1.405165	24	22	14	10
	시흥시	0.800526	1.097053	1.332941	1.515194	8	6	7	8
	파주시	0.761907	0.994896	1.158187	1.337919	10	13	25	21
	광명시	0.680037	0.985293	1.280109	1.438717	17	18	10	9
	김포시	0.822210	0.997921	1.176871	1.319761	7	11	23	25
	군포시	0.615094	0.975326	1.200317	1.352119	21	23	17	19
	광주시	0.799908	1.003533	1.184305	1.372809	9	9	22	16
	이천시	0.636580	0.972472	1.130862	1.301431	19	25	28	28
	양주시	0.501335	0.980853	1.158526	1.341676	26	21	24	20
	오산시	0.623888	0.990428	1.207719	1.376139	20	16	15	14
	구리시	0.586468	0.989668	1.230776	1.373444	23	17	12	15
	안성시	0.606572	0.975258	1.117844	1.246487	22	24	31	31
	포천시	0.452765	0.971244	1.124230	1.293025	27	26	30	29
	의왕시	0.638466	0.997336	1.231145	1.385062	18	12	11	13
	하남시	0.694781	0.992384	1.281637	1.389198	16	14	9	11
	여주시	0.504282	0.967544	1.126210	1.254536	25	27	29	30
	동두천시	0.416797	0.966155	1.312737	1.707103	28	28	8	5
	과천시	1.108837	1.142977	1.969469	2.066713	3	3	1	1
	양평군	0.285319	0.942004	1.140323	1.305496	30	31	27	26
	가평군	0.297148	0.951861	1.199608	1.327392	29	29	18	23
	연천군	0.242847	0.946391	1.221729	1.323364	31	30	13	24
	평균	0.703171	1.015535	1.283114	1.446556				
표준편차	0.245638	0.069877	0.193983	0.197613					
변이계수	0.349329	0.068808	0.151182	0.136609					
지니계수	0.200740	0.034412	0.073630	0.069325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16	수원시	1.160728	1.181698	1.517714	1.704882	3	3	5	6
	성남시	1.440726	1.470642	1.963159	2.127170	1	1	2	1
	고양시	1.010502	1.047802	1.438034	1.607168	6	7	6	7
	용인시	1.220906	1.241851	1.597189	1.738725	2	2	3	5
	부천시	0.703792	1.001793	1.265221	1.435472	14	25	12	13
	안산시	0.766027	1.013085	1.233724	1.419985	10	19	19	16
	안양시	0.722517	1.006376	1.225537	1.384259	13	23	21	21
	남양주시	0.684822	1.006720	1.232623	1.434898	15	22	20	14
	화성시	1.060410	1.079835	1.591745	1.744822	5	6	4	4
	평택시	0.684152	0.999651	1.194984	1.331580	16	28	24	25
	의정부시	0.546080	1.009304	1.237208	1.437300	23	21	17	12
	시흥시	0.785911	1.030649	1.268766	1.467842	8	8	11	10
	파주시	0.736722	1.096947	1.262696	1.423784	12	5	13	15
	광명시	0.621735	1.016921	1.331838	1.505636	19	17	8	9
	김포시	0.800608	1.021600	1.237276	1.407562	7	12	16	17
	군포시	0.653393	1.019868	1.236714	1.400281	18	13	18	19
	광주시	0.751231	1.018221	1.205478	1.399113	11	16	23	20
	이천시	0.583051	0.999268	1.147917	1.317125	20	29	29	26
	양주시	0.499162	1.001541	1.171077	1.339684	25	26	25	23
	오산시	0.533253	1.011587	1.276177	1.460260	24	20	10	11
	구리시	0.580398	1.018582	1.254336	1.355508	21	15	15	22
	안성시	0.562590	1.000741	1.149343	1.282742	22	27	28	30
	포천시	0.401344	0.992094	1.139548	1.300884	27	31	31	28
	의왕시	0.669664	1.013449	1.259137	1.404871	17	18	14	18
	하남시	0.768945	1.027010	1.423802	1.597976	9	9	7	8
	여주시	0.426820	0.996969	1.143080	1.282273	26	30	30	31
	동두천시	0.329612	1.022558	1.315272	1.826114	29	11	9	3
	과천시	1.091080	1.136197	1.985196	2.107817	4	4	1	2
	양평군	0.292145	1.002357	1.166419	1.305560	30	24	26	27
	가평군	0.358402	1.025961	1.223527	1.336906	28	10	22	24
	연천군	0.244428	1.019493	1.163341	1.285908	31	14	27	29
	평균	0.699715	1.049380	1.318003	1.489487				
표준편차	0.277235	0.095009	0.209846	0.218269					
변이계수	0.396211	0.090538	0.159215	0.146540					
지니계수	0.224461	0.035861	0.076490	0.075563					

도 연	구분	재정력지수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 0 1 7	수원시	1.226792	1.254800	1.610864	1.791355	3	3	5	3
	성남시	1.271460	1.308085	1.758893	1.917557	1	1	1	1
	고양시	0.839029	1.023688	1.282776	1.444790	6	30	23	24
	용인시	1.243297	1.266024	1.619167	1.757468	2	2	4	5
	부천시	0.723004	1.025772	1.302308	1.479428	13	29	16	15
	안산시	0.827227	1.031964	1.259604	1.434234	7	26	26	25
	안양시	0.662943	1.036992	1.320973	1.492880	18	20	13	13
	남양주시	0.641278	1.033515	1.280508	1.470709	20	23	24	16
	화성시	1.158176	1.179780	1.628993	1.800041	4	4	3	2
	평택시	0.754817	1.019292	1.239729	1.390504	11	31	29	30
	의정부시	0.598587	1.048327	1.322175	1.513353	22	14	12	11
	시흥시	0.783020	1.032708	1.303669	1.495662	8	24	15	12
	파주시	0.680314	1.032159	1.217946	1.360838	14	25	31	31
	광명시	0.664076	1.048215	1.374933	1.546554	17	15	8	7
	김포시	0.767629	1.033557	1.290524	1.453144	10	22	20	19
	군포시	0.732186	1.049060	1.344996	1.514836	12	11	10	9
	광주시	0.657153	1.040948	1.286991	1.480480	19	19	21	14
	이천시	0.628324	1.030333	1.221461	1.395430	21	28	30	29
	양주시	0.527498	1.035992	1.279931	1.464283	23	21	25	18
	오산시	0.521192	1.054866	1.386526	1.582629	24	9	7	6
	구리시	0.679179	1.044908	1.338523	1.450524	15	16	11	23
	안성시	0.466435	1.049015	1.259585	1.422057	25	12	27	27
	포천시	0.379569	1.041988	1.251347	1.415061	28	18	28	28
	의왕시	0.774659	1.042692	1.306602	1.452977	9	17	14	20
	하남시	0.895769	1.031628	1.372629	1.514225	5	27	9	10
	여주시	0.346019	1.048917	1.292274	1.452616	31	13	19	21
	동두천시	0.456121	1.065723	1.413205	1.517615	26	5	6	8
	과천시	0.666207	1.054973	1.636267	1.763610	16	8	2	4
	양평군	0.379506	1.049259	1.296474	1.451368	29	10	18	22
	가평군	0.453312	1.056634	1.286085	1.470288	27	7	22	17
	연천군	0.376523	1.058470	1.298141	1.430500	30	6	17	26
	평균	0.702623	1.068719	1.357552	1.520226				
표준편차	0.247679	0.073318	0.137628	0.135052					
변이계수	0.352506	0.068604	0.101380	0.088837					
지니계수	0.197112	0.028037	0.050675	0.044816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순위			
		㉑ 현재	㉒ 지방교부세	㉓ 조정교부금	㉔ 도비보조금	㉑	㉒	㉓	㉔
2018	수원시	1.090415	1.118003	1.354757	1.513981	5	5	6	8
	성남시	1.298225	1.335049	1.672772	1.822316	2	2	2	2
	고양시	0.709381	1.010717	1.226807	1.382464	16	30	25	25
	용인시	1.107475	1.131974	1.439880	1.594886	4	4	5	4
	부천시	0.730244	1.015535	1.254965	1.414872	13	23	22	21
	안산시	0.864541	1.021887	1.220820	1.382870	6	19	27	24
	안양시	0.717312	1.022612	1.240633	1.387789	14	17	23	23
	남양주시	0.571745	1.018276	1.256535	1.455029	22	22	21	15
	화성시	1.601976	1.620129	1.995646	2.150905	1	1	1	1
	평택시	0.781690	1.008876	1.198211	1.330555	11	31	30	31
	의정부시	0.597941	1.023088	1.282999	1.475867	21	16	14	10
	시흥시	0.789091	1.028221	1.292094	1.488147	10	12	11	9
	파주시	0.615814	1.012273	1.211875	1.362156	20	28	29	28
	광명시	0.692954	1.028063	1.311655	1.464146	17	14	10	13
	김포시	0.790902	1.021961	1.266579	1.420549	8	18	19	20
	군포시	0.743402	1.035308	1.289918	1.439300	12	8	13	16
	광주시	0.517122	1.020375	1.290435	1.473046	24	20	12	11
	이천시	0.709431	1.014956	1.182244	1.335496	15	25	31	30
	양주시	0.533706	1.019383	1.279473	1.460140	23	21	15	14
	오산시	0.621414	1.032062	1.352613	1.541838	19	10	7	6
	구리시	0.662746	1.034279	1.318148	1.469000	18	9	9	12
	안성시	0.365697	1.011475	1.229270	1.367280	28	29	24	27
	포천시	0.391740	1.013376	1.219403	1.370202	27	27	28	26
	의왕시	0.789393	1.037311	1.275938	1.422634	9	7	17	19
	하남시	1.153028	1.187244	1.532204	1.690381	3	3	3	3
	여주시	0.259906	1.013916	1.258040	1.411068	31	26	20	22
	동두천시	0.452498	1.031807	1.338830	1.538409	25	11	8	7
	과천시	0.825287	1.065045	1.495981	1.589654	7	6	4	5
	양평군	0.350453	1.015427	1.221626	1.342093	29	24	26	29
	가평군	0.428917	1.028103	1.270585	1.433707	26	13	18	18
	연천군	0.268210	1.027920	1.279320	1.434922	30	15	16	17
	평균	0.710731	1.064666	1.324524	1.482765				
표준편차	0.295939	0.120684	0.160472	0.160286					
변이계수	0.416386	0.113354	0.121154	0.108099					
지니계수	0.231318	0.039988	0.054175	0.050515					

도 연	구분	재정력지수				순위			
		㉑ 현재	㉒ 지방교부세	㉓ 조정교부금	㉔ 도비보조금	㉑	㉒	㉓	㉔
2 0 1 9	수원시	1.056169	1.084727	1.297009	1.474100	4	4	14	13
	성남시	1.319652	1.356816	1.580670	1.737548	2	2	2	2
	고양시	0.634658	1.012001	1.274470	1.444357	19	25	19	20
	용인시	1.068876	1.095129	1.304355	1.472618	3	3	13	15
	부천시	0.720811	1.018959	1.265444	1.441364	14	21	20	21
	안산시	0.861197	1.022735	1.208908	1.382904	6	15	29	27
	안양시	0.724738	1.023277	1.260737	1.417625	13	14	23	24
	남양주시	0.538095	1.011502	1.258264	1.452972	24	26	24	19
	화성시	1.495168	1.514393	1.740664	1.909315	1	1	1	1
	평택시	0.773599	1.009946	1.197650	1.342285	9	29	30	30
	의정부시	0.596614	1.021369	1.291330	1.492077	21	17	15	7
	시흥시	0.818390	1.021858	1.264417	1.462111	8	16	21	18
	파주시	0.577418	1.013898	1.223561	1.381522	22	23	27	28
	광명시	0.716246	1.027903	1.308857	1.466460	16	12	12	16
	김포시	0.731456	1.020053	1.264100	1.432689	12	18	22	22
	군포시	0.690793	1.030310	1.328429	1.483899	18	9	10	10
	광주시	0.599905	1.019782	1.290942	1.474819	20	20	16	12
	이천시	0.765664	1.012858	1.185180	1.340962	10	24	31	31
	양주시	0.546380	1.019926	1.282305	1.463490	23	19	18	17
	오산시	0.716483	1.031413	1.329090	1.514958	15	8	9	5
	구리시	0.697645	1.033165	1.343459	1.495642	17	6	6	6
	안성시	0.450689	1.010020	1.237027	1.384970	26	28	26	26
	포천시	0.408829	1.008557	1.222166	1.374629	27	30	28	29
	의왕시	0.744800	1.028779	1.335787	1.485853	11	10	8	9
	하남시	0.944255	1.033019	1.325456	1.486516	5	7	11	8
	여주시	0.364983	1.011020	1.251898	1.396078	30	27	25	25
	동두천시	0.492126	1.024383	1.403400	1.597497	25	13	4	3
	과천시	0.837099	1.055046	1.455535	1.560638	7	5	3	4
	양평군	0.381344	1.015325	1.290626	1.419633	29	22	17	23
	가평군	0.398156	1.028330	1.347509	1.473136	28	11	5	14
	연천군	0.296013	0.997987	1.337743	1.482017	31	31	7	11
	평균	0.708653	1.052080	1.313129	1.475635				
표준편차	0.263829	0.104573	0.109270	0.109379					
변이계수	0.372296	0.099397	0.083214	0.074123					
지니계수	0.205949	0.032624	0.039893	0.035371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순위			
		㉑ 현재	㉒ 지방교부세	㉓ 조정교부금	㉔ 도비보조금	㉑	㉒	㉓	㉔
2020	수원시	0.953492	1.005720	1.226052	1.528430	4	6	16	11
	성남시	1.393962	1.424848	1.645467	1.929838	2	2	2	1
	고양시	0.636386	0.950732	1.200626	1.491049	19	25	23	17
	용인시	0.973282	1.012844	1.223315	1.512725	3	5	18	13
	부천시	0.724029	0.969176	1.207994	1.510268	15	20	19	14
	안산시	0.852124	0.991393	1.204078	1.492598	6	10	22	16
	안양시	0.727570	0.971484	1.206832	1.471951	13	19	20	24
	남양주시	0.581214	0.943157	1.184525	1.486870	22	27	24	20
	화성시	1.446871	1.465100	1.649574	1.911415	1	1	1	2
	평택시	0.780272	0.974368	1.162048	1.399674	9	18	29	27
	의정부시	0.602694	0.961496	1.241882	1.577448	21	21	12	4
	시흥시	0.828054	0.992538	1.233247	1.546613	8	8	14	9
	파주시	0.569890	0.943428	1.173098	1.425831	23	26	27	26
	광명시	0.719410	0.982382	1.234735	1.490717	16	15	13	18
	김포시	0.740377	0.974475	1.229305	1.521700	12	17	15	12
	군포시	0.693501	0.976612	1.265741	1.537114	17	16	11	10
	광주시	0.616141	0.953845	1.206125	1.488833	20	23	21	19
	이천시	0.771917	0.990013	1.160035	1.383296	10	12	30	28
	양주시	0.547133	0.952133	1.225111	1.478469	24	24	17	22
	오산시	0.726565	0.984875	1.270459	1.560398	14	14	10	5
	구리시	0.690041	0.988625	1.292794	1.550544	18	13	6	8
	안성시	0.455055	0.940986	1.181923	1.426161	26	28	25	25
	포천시	0.409917	0.917868	1.137145	1.336627	28	31	31	31
	의왕시	0.751715	0.994051	1.296743	1.552920	11	7	5	6
	하남시	0.946919	1.017646	1.280518	1.550977	5	3	8	7
	여주시	0.380212	0.918527	1.165303	1.366522	30	30	28	30
	동두천시	0.501442	0.991701	1.349198	1.592080	25	9	3	3
	과천시	0.837757	1.016685	1.335960	1.500017	7	4	4	15
	양평군	0.388831	0.923185	1.180385	1.379019	29	29	26	29
	가평군	0.437450	0.960874	1.273711	1.478204	27	22	9	23
	연천군	0.340755	0.990084	1.291107	1.485218	31	11	7	21
	평균	0.710483	1.002608	1.255969	1.514952				
표준편차	0.251993	0.119295	0.114790	0.123721					
변이계수	0.354678	0.118985	0.091395	0.081666					
지니계수	0.193690	0.043522	0.042208	0.039354					

도 연	구분	재정력지수				순위			
		㉑ 현재	㉒ 지방교부세	㉓ 조정교부금	㉔ 도비보조금	㉑	㉒	㉓	㉔
2 0 2 1	수원시	0.964796	1.019163	1.310738	1.522963	4	10	21	18
	성남시	1.132935	1.172408	1.453074	1.634850	2	2	4	4
	고양시	0.730699	0.997107	1.260256	1.466514	15	18	25	25
	용인시	0.981324	1.020592	1.247786	1.443709	3	8	27	26
	부천시	0.722538	0.992765	1.318809	1.534788	17	22	17	16
	안산시	0.773860	0.999467	1.295404	1.505947	10	16	23	22
	안양시	0.745593	0.996432	1.318236	1.512779	13	19	18	21
	남양주시	0.610294	0.979610	1.298485	1.519403	22	26	22	19
	화성시	1.180391	1.205496	1.427899	1.618365	1	1	6	6
	평택시	0.793251	0.991107	1.210300	1.384521	8	24	29	29
	의정부시	0.618292	0.993268	1.373700	1.617368	21	21	11	7
	시흥시	0.837942	1.012139	1.264687	1.517290	7	12	24	20
	파주시	0.589713	0.931548	1.118403	1.305867	23	31	31	31
	광명시	0.722627	1.008637	1.311263	1.494811	16	13	19	23
	김포시	0.760791	1.002138	1.333054	1.561512	12	15	14	13
	군포시	0.700786	1.012197	1.407897	1.605414	19	11	8	8
	광주시	0.647467	0.991300	1.329365	1.544672	20	23	16	14
	이천시	0.788893	0.999255	1.249811	1.409125	9	17	26	27
	양주시	0.576809	0.989618	1.332796	1.535424	24	25	15	15
	오산시	0.733641	1.020782	1.398060	1.626611	14	7	9	5
	구리시	0.706307	1.026136	1.448344	1.651314	18	6	5	2
	안성시	0.506603	0.965737	1.185097	1.366837	26	29	30	30
	포천시	0.436836	0.959849	1.245582	1.407778	27	30	28	28
	의왕시	0.773845	1.019343	1.394719	1.575725	11	9	10	11
	하남시	0.959883	1.031251	1.370851	1.576566	5	5	12	10
	여주시	0.412017	0.970453	1.311060	1.471445	29	28	20	24
	동두천시	0.514966	1.049405	1.563652	1.775774	25	4	1	1
	과천시	0.872199	1.054477	1.460330	1.587205	6	3	3	9
	양평군	0.402926	0.972071	1.355548	1.523680	30	27	13	17
	가평군	0.431559	1.007496	1.497206	1.649901	28	14	2	3
	연천군	0.383802	0.993283	1.416237	1.563098	31	20	7	12
평균	0.710116	1.012404	1.338989	1.532621	-	-	-	-	
표준편차	0.200473	0.052747	0.094258	0.095981	-	-	-	-	
변이계수	0.282311	0.052100	0.070395	0.062625	-	-	-	-	
지니계수	0.162992	0.024224	0.040717	0.035815	-	-	-	-	

〈부록 12〉 경기도 31개 시·군 연도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 및 순위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백만원)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11	수원시	41,925	51,558	203,023	301,692	5	5	5	5
	성남시	298,297	340,518	533,078	584,854	1	1	1	1
	고양시	27,664	39,996	249,580	344,152	6	6	4	4
	용인시	202,308	209,080	422,768	489,200	3	3	2	2
	부천시		5,630	89,979	146,608		19	7	6
	안산시			53,803	115,247			15	10
	안양시		6,104	66,472	100,730		18	9	12
	남양주시		6,344	72,760	137,707		16	8	8
	화성시	217,681	228,380	381,799	436,898	2	2	3	3
	평택시		8,003	62,499	111,027		13	10	11
	의정부시		13,811	59,311	99,663		7	12	13
	시흥시		9,800	58,371	97,816		11	13	14
	파주시		3,285	56,830	122,682		22	14	9
	광명시		2,736	61,781	84,339		24	11	19
	김포시		9,512	52,069	89,227		12	16	16
	군포시		7,152	40,987	64,083		14	21	23
	광주시		6,741	49,498	91,108		15	17	15
	이천시		11,848	45,196	84,708		8	18	18
	양주시		1,764	33,739	82,853		27	23	20
	오산시		1,516	28,765	47,155		28	28	29
	구리시		2,861	29,789	45,177		23	26	30
	안성시		2,473	35,782	71,363		25	22	22
	포천시		11,174	43,035	86,383		9	19	17
	의왕시		6,275	31,064	44,863		17	24	31
	하남시		1,859	29,619	56,701		26	27	26
	여주시		4,583	30,531	58,418		20	25	25
	동두천시		3,655	27,931	49,884		21	29	28
	과천시	55,612	58,512	140,199	145,812	4	4	6	7
	양평군		10,027	41,226	76,284		10	20	21
	가평군			24,323	56,252			31	27
	연천군		822	24,490	62,861		29	30	24
평균		140,581	36,759	99,364	141,476	-	-	-	-
표준편차		103,547	79,100	125,166	136,271	-	-	-	-
변이계수		0.736564	2.151844	1.259668	0.963211	-	-	-	-
지니계수		0.480654	0.573804	0.540570	0.439209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백만원)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12	수원시	45,809	63,895	298,951	446,075	4	4	4	4
	성남시	293,681	304,308	514,838	595,027	1	1	1	2
	고양시	21,423	35,814	218,481	323,609	5	6	5	5
	용인시	285,300	295,887	506,542	612,801	2	2	2	1
	부천시		10,903	105,812	177,399		10	7	8
	안산시		10,159	95,136	179,606		11	9	7
	안양시		7,490	76,768	131,324		12	11	11
	남양주시		18,309	103,700	194,784		8	8	6
	화성시	195,203	204,887	386,530	461,654	3	3	3	3
	평택시		2,851	63,748	122,506		26	12	13
	의정부시		3,812	55,774	108,720		20	16	15
	시흥시		5,661	56,655	104,545		13	14	17
	파주시			55,932	143,847			15	10
	광명시		282	57,677	89,567		29	13	19
	김포시		44,298	93,892	145,766		5	10	9
	군포시		4,105	39,992	74,249		19	21	21
	광주시		4,840	51,139	110,351		16	17	14
	이천시		5,116	42,074	89,089		14	19	20
	양주시		3,204	41,102	95,488		24	20	18
	오산시		5,073	35,322	68,264		15	23	24
	구리시		4,827	35,081	61,410		17	24	27
	안성시			33,117	63,234			26	26
	포천시		14,395	49,489	107,323		9	18	16
	의왕시		4,499	30,131	50,249		18	29	31
	하남시		3,282	35,045	59,687		22	25	30
	여주시		1,364	30,714	59,951		27	28	29
	동두천시		537	27,926	71,093		28	31	22
	과천시	17,061	21,050	120,649	130,950	6	7	6	12
	양평군		3,598	37,943	60,748		21	22	28
	가평군		3,217	31,155	67,059		23	27	25
	연천군		3,187	28,716	68,282		25	30	23
	평균	143,080	37,616	108,388	163,699	-	-	-	-
표준편차	119,560	80,929	132,210	153,008	-	-	-	-	
변이계수	0.835616	2.151485	1.219784	0.934696	-	-	-	-	
지니계수	0.541453	0.805237	0.536936	0.439166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백만원)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13	수원시	39,111	54,057	243,384	388,708	4	4	4	3
	성남시	142,698	154,811	312,246	419,429	2	2	2	2
	고양시	20,025	34,187	181,664	312,790	5	5	5	5
	용인시	218,912	232,726	396,510	530,413	1	1	1	1
	부천시		10,238	77,875	177,971		7	7	6
	안산시			64,576	167,102			9	8
	안양시		2,548	54,847	128,664		12	10	10
	남양주시			68,795	174,044			8	7
	화성시	118,183	126,477	263,727	354,364	3	3	3	4
	평택시			44,016	113,540			15	11
	의정부시		23	40,145	102,470		22	16	14
	시흥시		5,458	47,036	110,433		9	13	12
	파주시			50,166	130,306			11	9
	광명시		2,831	46,154	90,141		10	14	18
	김포시		6,605	47,657	97,937		8	12	16
	군포시		515	28,487	69,197		18	20	23
	광주시		2,088	33,760	77,359		14	17	20
	이천시			28,525	99,907			19	15
	양주시			23,520	61,867			23	25
	오산시		567	22,592	56,639		17	24	28
	구리시		126	21,164	46,136		21	28	30
	안성시		458	29,097	78,054		19	18	19
	포천시			22,377	71,516			25	21
	의왕시		2,350	24,835	50,934		13	22	29
	하남시		856	28,030	56,776		16	21	27
	여주시		944	22,072	63,166		15	26	24
	동두천시		2,694	22,012	71,358		11	27	22
	과천시	18,284	21,886	93,279	102,652	6	6	6	13
	양평군			16,308	60,192			30	26
	가평군		295	20,445	97,512		20	29	17
	연천군			14,702	24,810			31	31
	평균	92,869	30,125	77,097	141,496	-	-	-	-
	표준편차	73,903	59,902	95,123	122,888	-	-	-	-
변이계수	0.795775	1.988482	1.233810	0.868485	-	-	-	-	
지니계수	0.520530	0.832734	0.552067	0.422881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백만원)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14	수원시	18,763	34,155	283,939	406,356	6	5	4	3
	성남시	48,699	61,535	333,631	426,571	3	3	1	1
	고양시	35,298	46,376	274,623	383,792	4	4	5	4
	용인시	74,887	87,387	310,539	425,765	2	2	2	2
	부천시			101,038	184,977			7	6
	안산시			92,771	169,287			8	7
	안양시		551	77,859	137,226		8	10	8
	남양주시			79,865	132,423			9	9
	화성시	100,026	109,737	304,242	378,091	1	1	3	5
	평택시			66,686	123,036			12	11
	의정부시			53,223	110,013			16	14
	시흥시		3,896	72,569	116,615		7	11	12
	파주시			66,502	124,383			13	10
	광명시			60,545	97,205			14	16
	김포시			59,343	102,885			15	15
	군포시			39,233	70,886			19	21
	광주시		217	47,837	94,797		9	17	17
	이천시			38,385	87,422			20	18
	양주시			29,746	55,857			25	26
	오산시			29,398	59,242			27	24
	구리시			29,502	51,577			26	29
	안성시			33,389	71,662			21	20
	포천시			30,597	74,192			23	19
	의왕시			29,845	54,900			24	27
	하남시			41,997	61,582			18	23
	여주시			26,947	52,694			28	28
	동두천시			24,676	47,867			30	30
	과천시	25,501	27,659	102,595	110,944	5	6	6	13
	양평군			26,040	61,817			29	22
	가평군			32,520	58,146			22	25
	연천군			19,053	35,913			31	31
	평균	50,529	41,279	90,940	140,907	-	-	-	-
표준편차	28,618	36,859	95,372	120,878	-	-	-	-	
변이계수	0.566376	0.892921	1.048739	0.857857	-	-	-	-	
지니계수	0.374619	0.560265	0.497816	0.422478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백만원)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15	수원시	109,345	122,863	401,384	522,821	1	2	2	2
	성남시	12,421	29,993	288,276	389,741	5	6	5	5
	고양시	67,439	85,567	322,263	436,076	3	3	4	4
	용인시	93,579	139,340	412,774	533,809	2	1	1	1
	부천시			97,402	197,145			9	6
	안산시		454	99,107	179,811		10	8	7
	안양시			81,376	144,943			11	10
	남양주시		3,422	96,792	157,491		8	10	9
	화성시	57,318	67,546	363,616	444,287	4	4	3	3
	평택시			70,393	140,783			13	12
	의정부시			65,136	122,758			15	13
	시흥시		31,624	108,486	167,872		5	6	8
	파주시			66,513	142,085			14	11
	광명시			70,986	111,181			12	14
	김포시			54,277	98,126			16	18
	군포시			42,987	75,563			20	23
	광주시		1,015	52,945	107,096		9	17	16
	이천시			39,409	90,776			23	19
	양주시			40,843	88,030			22	21
	오산시			38,389	69,515			24	25
	구리시			37,413	60,542			26	29
	안성시			34,964	73,132			29	24
	포천시			37,706	88,938			25	20
	의왕시			34,444	57,380			30	31
	하남시			46,374	64,085			18	26
	여주시			31,020	62,560			31	27
	동두천시			43,947	99,365			19	17
	과천시	11,190	14,700	99,675	109,673	6	7	7	15
	양평군			35,497	77,280			28	22
	가평군			36,240	59,440			27	30
	연천군			41,621	60,699			21	28
	평균	58,549	49,652	106,202	162,355	-	-	-	-
표준편차	37,100	48,857	114,097	139,608	-	-	-	-	
변이계수	0.633664	0.983984	1.074337	0.859892	-	-	-	-	
지니계수	0.423790	0.598338	0.491820	0.415877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백만원)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16	수원시	112,878	127,605	363,587	495,034	3	3	3	3	
	성남시	274,967	293,631	600,910	703,236	1	1	1	1	
	고양시	6,919	31,493	288,585	400,014	6	6	5	5	
	용인시	150,991	165,307	408,183	504,924	2	2	2	2	
	부천시		905	133,881	219,822		24	6	6	
	안산시		6,564	117,249	210,688		10	7	8	
	안양시		2,580	91,258	155,481		21	12	11	
	남양주시		3,278	113,478	212,152		17	9	7	
	화성시	34,122	45,094	334,241	420,705	4	4	4	4	
	평택시			95,642	162,644			11	10	
	의정부시		2,863	72,992	134,563		20	16	13	
	시흥시		9,958	87,324	152,005		8	13	12	
	파주시		43,140	116,896	188,578		5	8	9	
	광명시		4,191	82,189	125,235		15	14	15	
	김포시		7,001	76,906	132,099		9	15	14	
	군포시		4,224	50,325	85,099		14	19	24	
	광주시		5,623	63,409	123,163		11	18	16	
	이천시			45,255	97,024			22	20	
	양주시		403	44,733	88,820		26	24	22	
	오산시		2,031	48,408	80,674		23	20	25	
	구리시		3,043	41,650	58,218		19	27	30	
	안성시		230	46,335	87,723		27	21	23	
	포천시			43,490	93,770			25	21	
	의왕시		2,040	39,308	61,414		22	29	29	
	하남시		4,476	70,230	99,093		13	17	19	
	여주시			36,775	72,551			30	27	
	동두천시			3,231	45,157	118,326		18	23	17
	과천시	9,567	14,306	103,484	116,364	5	7	10	18	
	양평군		599	42,302	77,670		25	26	26	
	가평군		4,820	41,500	62,550		12	28	28	
	연천군		3,806	31,892	55,823		16	31	31	
	평균	98,241	29,350	121,857	180,499	-	-	-	-	
표준편차	95,344	64,416	131,947	155,064	-	-	-	-		
변이계수	0.970515	2.194759	1.082802	0.859086	-	-	-	-		
지니계수	0.625426	0.815856	0.489512	0.416216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백만원)				순위				
		㉑ 현재	㉒ 지방교부세	㉓ 조정교부금	㉔ 도비보조금	㉑	㉒	㉓	㉔	
2017	수원시	182,415	204,943	491,335	636,509	3	3	2	2	
	성남시	191,256	217,060	534,674	646,460	1	1	1	1	
	고양시		18,028	215,207	338,508		7	5	5	
	용인시	190,834	208,661	485,655	594,134	2	2	3	3	
	부천시		14,462	169,642	269,034		12	6	6	
	안산시		18,121	147,175	246,177		6	8	8	
	안양시		16,721	145,084	222,788		9	9	9	
	남양주시		18,639	156,000	261,777		5	7	7	
	화성시	103,849	118,033	412,960	525,260	4	4	4	4	
	평택시		10,548	131,073	213,510		24	10	10	
	의정부시		17,088	113,919	181,518		8	11	12	
	시흥시		11,899	110,473	180,319		21	13	13	
	파주시		16,307	110,515	182,972		11	12	11	
	광명시		13,224	102,834	149,905		17	15	16	
	김포시		12,120	104,929	163,663		20	14	15	
	군포시		11,809	83,042	123,923		22	20	23	
	광주시		14,195	99,489	166,564		15	16	14	
	이천시		10,037	73,281	130,847		27	24	21	
	양주시		10,248	79,704	132,194		26	22	19	
	오산시		10,694	75,339	113,562		23	23	24	
	구리시		8,273	62,363	82,996		28	30	29	
	안성시		16,668	88,274	143,524		10	17	17	
	포천시		14,422	86,333	142,566		13	18	18	
	의왕시		7,123	51,155	75,577		29	31	31	
	하남시		6,202	73,070	100,836		30	25	26	
	여주시		13,894	83,015	128,557		16	21	22	
	동두천시		10,475	65,857	82,498		25	28	30	
	과천시		6,175	71,470	85,774		31	26	28	
	양평군		14,340	86,308	131,400		14	19	20	
	가평군		12,464	62,961	103,500		19	29	25	
	연천군		12,990	66,237	95,643		18	27	27	
	평균		167,089	35,350	149,657	214,597	-	-	-	-
	표준편차		36,681	60,280	133,330	161,242	-	-	-	-
변이계수		0.219532	1.705227	0.890906	0.751370	-	-	-	-	
지니계수		0.134978	0.626138	0.403239	0.370310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백만원)				순위			
		㉑ 현재	㉒ 지방교부세	㉓ 조정교부금	㉔ 도비보조금	㉑	㉒	㉓	㉔
2018	수원시	84,648	110,476	332,129	481,197	4	4	4	4
	성남시	243,404	273,459	549,100	671,154	2	2	2	2
	고양시		9,438	199,735	336,812		11	5	5
	용인시	97,211	119,370	397,870	538,073	3	3	3	3
	부천시		10,204	167,466	272,496		10	6	7
	안산시		14,067	141,926	246,080		6	8	8
	안양시		11,716	124,677	200,922		8	10	12
	남양주시		11,639	163,376	289,788		9	7	6
	화성시	465,465	479,501	769,861	889,912	1	1	1	1
	평택시		5,565	124,268	207,241		27	12	11
	의정부시		9,261	113,516	190,879		14	15	14
	시흥시		12,015	124,360	207,830		7	11	9
	파주시		7,030	121,362	207,443		19	13	10
	광명시		8,719	96,829	144,207		15	17	18
	김포시		9,350	113,497	179,050		13	16	15
	군포시		9,360	76,855	116,455		12	23	24
	광주시		8,246	117,540	191,443		16	14	13
	이천시		5,687	69,297	127,570		26	26	22
	양주시		6,375	91,918	151,339		24	18	17
	오산시		7,046	77,492	119,077		18	22	23
	구리시		6,988	64,856	95,608		22	28	29
	안성시		4,380	87,515	140,195		31	19	20
	포천시		5,199	85,280	143,894		28	20	19
	의왕시		7,016	51,888	79,473		20	31	30
	하남시	36,848	45,087	128,151	166,239	5	5	9	16
	여주시		4,408	81,735	130,207		30	21	21
	동두천시		5,740	61,147	97,164		25	30	28
	과천시		8,198	62,511	74,317		17	29	31
	양평군		5,108	73,381	113,268		29	24	25
	가평군		6,764	65,127	104,389		23	27	27
	연천군		6,996	69,989	108,978		21	25	26
	평균		185,515	39,820	154,989	226,539	-	-	-
표준편차		156,075	96,023	154,013	181,228	-	-	-	-
변이계수		0.841305	2.411459	0.993704	0.799989	-	-	-	-
지니계수		0.547659	0.774834	0.419036	0.376921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백만원)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19	수원시	61,139	92,223	323,287	516,045	4	4	3	3
	성남시	298,838	333,582	542,860	689,523	2	2	2	2
	고양시		12,199	278,993	451,679		8	5	5
	용인시	72,569	100,230	320,675	497,960	3	3	4	4
	부천시		14,443	202,215	336,231		6	6	7
	안산시		16,946	155,716	285,409		5	8	8
	안양시		13,692	153,373	245,659		7	10	11
	남양주시		8,690	195,127	342,235		17	7	6
	화성시	458,324	476,118	685,553	841,655	1	1	1	1
	평택시		7,399	147,038	254,637		23	11	10
	의정부시		9,988	136,167	229,996		12	14	13
	시흥시		11,369	137,534	240,363		9	13	12
	파주시		9,539	153,442	261,859		14	9	9
	광명시		9,915	109,748	165,750		13	17	19
	김포시		10,235	134,794	220,840		10	15	15
	군포시		9,532	103,286	152,179		15	21	23
	광주시		9,453	139,028	226,894		16	12	14
	이천시		5,835	84,033	154,726		25	29	21
	양주시		7,817	110,750	181,830		21	16	16
	오산시		8,313	87,088	136,275		19	26	25
	구리시		8,359	86,567	124,924		18	27	29
	안성시		4,535	107,280	174,240		28	19	18
	포천시		4,011	104,140	175,607		30	20	17
	의왕시		6,475	75,548	109,311		24	30	30
	하남시		9,996	98,528	147,287		11	22	24
	여주시		4,257	97,309	153,006		29	23	22
	동두천시		5,114	84,607	125,316		27	28	28
	과천시		8,019	66,361	81,672		20	31	31
	양평군		5,764	109,308	157,829		26	18	20
	가평군		7,704	94,502	128,665		22	25	27
	연천군			95,147	135,791			24	26
	평균		222,718	41,058	168,387	256,303	-	-	-
표준편차		165,799	101,361	134,834	172,677	-	-	-	-
변이계수		0.744435	2.468705	0.800739	0.673721	-	-	-	-
지니계수		0.530502	0.775066	0.353529	0.336520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백만원)				순위			
		㉑ 현재	㉒ 지방교부세	㉓ 조정교부금	㉔ 도비보조금	㉑	㉒	㉓	㉔
2020	수원시		6,303	249,113	582,338		4	3	3
	성남시	365,931	394,620	599,541	863,679	2	2	2	2
	고양시			207,833	508,690			5	5
	용인시		13,957	242,671	557,167		3	4	4
	부천시			161,044	395,087			6	6
	안산시			151,127	364,786			7	8
	안양시			123,107	280,906			10	12
	남양주시			143,376	378,298			8	7
	화성시	453,009	471,489	658,497	923,934	1	1	1	1
	평택시			122,746	302,739			11	9
	의정부시			115,376	275,438			14	14
	시흥시			127,090	297,835			9	10
	파주시			121,054	297,800			13	11
	광명시			85,591	178,929			18	18
	김포시			122,716	279,195			12	13
	군포시			83,287	168,339			19	21
	광주시			101,992	241,878			15	15
	이천시			71,984	172,407			26	20
	양주시			89,547	190,330			17	17
	오산시			73,888	153,098			23	23
	구리시			73,282	137,793			25	26
	안성시			81,821	191,669			21	16
	포천시			65,183	159,994			29	22
	의왕시			67,790	126,313			28	29
	하남시		5,668	90,104	176,977		5	16	19
	여주시			63,621	141,065			30	25
	동두천시			73,636	124,853			24	30
	과천시		2,484	50,016	74,440		6	31	31
	양평군			67,913	142,697			27	24
	가평군			74,322	129,849			22	28
	연천군			82,111	136,863			20	27
	평균	409,470	149,087	143,270	288,883	-	-	-	-
표준편차	43,539	202,047	136,880	203,891	-	-	-	-	
변이계수	0.106330	1.355231	0.955400	0.705790	-	-	-	-	
지니계수	0.106330	0.786909	0.390652	0.358995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백만원)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21	수원시		22,931	371,842	625,799		4	3	3
	성남시	136,373	176,867	464,791	651,268	2	2	2	2
	고양시			293,402	525,929			5	5
	용인시		25,062	301,577	540,032		3	4	4
	부천시			266,694	447,367			6	7
	안산시			237,358	406,530			8	8
	안양시			201,958	325,418			9	10
	남양주시			258,389	449,631			7	6
	화성시	203,588	231,921	482,924	697,883	1	1	1	1
	평택시			176,311	322,375			13	12
	의정부시			196,176	324,091			11	11
	시흥시		7,192	156,820	306,481		8	14	13
	파주시			91,017	235,121			29	16
	광명시		3,300	118,929	189,060		13	26	23
	김포시		1,279	199,204	335,848		15	10	9
	군포시		4,096	136,976	203,304		12	18	20
	광주시			178,343	294,927			12	14
	이천시			122,442	200,528			24	21
	양주시			146,269	235,327			15	15
	오산시		6,038	115,654	182,058		10	27	25
	구리시		7,081	121,468	176,458		9	25	27
	안성시			90,849	180,050			30	26
	포천시			128,770	213,817			21	18
	의왕시		4,869	99,359	144,922		11	28	30
	하남시		11,371	134,937	209,788		5	19	19
	여주시			129,976	196,993			20	22
	동두천시		11,204	127,825	175,930		6	22	28
	과천시		8,648	73,076	93,217		7	31	31
	양평군			145,878	214,861			16	17
	가평군		2,115	140,293	183,378		14	17	24
	연천군			124,737	168,748			23	29
평균	169,981	34,932	188,201	305,069	-	-	-	-	
표준편차	33,608	67,550	101,746	159,050	-	-	-	-	
변이계수	0.197714	1.933784	0.540622	0.521357	-	-	-	-	
지니계수	0.197714	0.811879	0.282400	0.285834	-	-	-	-	

〈부록 13〉 경기도 31개 시·군 연도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의 비중 및 순위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 비중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11	수원시	0.068927	0.084765	0.333783	0.496002	5	5	6	6
	성남시	0.517324	0.590547	0.924496	1.014289	3	1	3	3
	고양시	0.049164	0.071080	0.443549	0.611620	6	6	5	5
	용인시	0.376917	0.389534	0.787653	0.911421	4	4	4	4
	부천시		0.011796	0.188525	0.307175		24	21	25
	안산시			0.114677	0.245640			31	31
	안양시		0.015884	0.172974	0.262120		21	24	30
	남양주시		0.017177	0.197005	0.372855		20	19	17
	화성시	0.541471	0.568084	0.949706	1.086762	2	3	2	2
	평택시		0.020549	0.160477	0.285082		18	26	29
	의정부시		0.052161	0.224006	0.376408		7	10	15
	시흥시		0.035524	0.211589	0.354573		14	14	22
	파주시		0.010449	0.180774	0.390247		27	23	11
	광명시		0.012588	0.284249	0.388037		23	7	12
	김포시		0.040335	0.220797	0.378364		12	12	13
	군포시		0.037278	0.213633	0.334014		13	13	23
	광주시		0.030296	0.222457	0.409463		15	11	9
	이천시		0.050216	0.191556	0.359020		9	20	20
	양주시		0.007833	0.149826	0.367928		28	30	18
	오산시		0.010662	0.202307	0.331645		25	17	24
	구리시		0.019070	0.198555	0.301122		19	18	28
	안성시		0.010553	0.152688	0.304519		26	29	27
	포천시		0.048561	0.187026	0.375412		11	22	16
	의왕시		0.050704	0.251008	0.362509		8	8	19
	하남시		0.013221	0.210652	0.403262		22	15	10
	여주시		0.024067	0.160327	0.306771		17	27	26
	동두천시		0.030272	0.231332	0.413152		16	9	8
	과천시	0.546389	0.574881	1.377457	1.432605	1	2	1	1
	양평군		0.049616	0.203997	0.377474		10	16	14
	가평군			0.153417	0.354808			28	21
	연천군		0.005716	0.170298	0.437121		29	25	7
평균	0.350032	0.099428	0.311961	0.462949	-	-	-	-	
표준편차	0.213485	0.176244	0.286225	0.267740	-	-	-	-	
변이계수	0.609902	1.772571	0.917503	0.578337	-	-	-	-	
지니계수	0.385123	0.714687	0.380730	0.252837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 비중				순위			
		㉑ 현재	㉒ 지방교부세	㉓ 조정교부금	㉔ 도비보조금	㉑	㉒	㉓	㉔
2012	수원시	0.074604	0.104059	0.486869	0.726475	5	6	5	5
	성남시	0.507209	0.525562	0.889163	1.027656	2	2	4	4
	고양시	0.036788	0.061500	0.375178	0.555705	6	7	7	8
	용인시	0.530757	0.550453	0.942344	1.140023	1	1	3	3
	부천시		0.022851	0.221769	0.371806		14	16	26
	안산시		0.021908	0.205161	0.387321		15	19	22
	안양시		0.019436	0.199207	0.340776		21	21	27
	남양주시		0.047821	0.270855	0.508758		9	8	9
	화성시	0.498616	0.523352	0.987330	1.179223	3	3	2	2
	평택시		0.007339	0.164101	0.315356		26	29	28
	의정부시		0.015150	0.221666	0.432092		24	17	14
	시흥시		0.020500	0.205159	0.378578		19	20	24
	파주시			0.169514	0.435959			28	13
	광명시		0.001270	0.259721	0.403322		29	9	20
	김포시		0.184835	0.391768	0.608215		5	6	6
	군포시		0.021283	0.207346	0.384957		17	18	23
	광주시		0.021282	0.224860	0.485217		18	15	10
	이천시		0.021515	0.176936	0.374651		16	26	25
	양주시		0.013996	0.179544	0.417115		25	24	18
	오산시		0.033343	0.232159	0.448674		11	13	11
	구리시		0.032912	0.239193	0.418712		12	12	17
	안성시			0.137854	0.263221			31	31
	포천시		0.057887	0.199010	0.431578		8	22	15
	의왕시		0.036120	0.241903	0.403418		10	11	19
	하남시		0.024303	0.259508	0.441982		13	10	12
	여주시		0.006715	0.151207	0.295142		27	30	29
	동두천시		0.004459	0.231895	0.590351		28	14	7
	과천시	0.170700	0.210612	1.207130	1.310194	4	4	1	1
	양평군		0.016328	0.172186	0.275675		23	27	30
	가평군		0.018619	0.180317	0.388120		22	23	21
	연천군		0.019806	0.178458	0.424344		20	25	16
	평균	0.303112	0.091214	0.329333	0.521439	-	-	-	-
표준편차	0.213064	0.157503	0.273662	0.267397	-	-	-	-	
변이계수	0.702920	1.726737	0.830960	0.512805	-	-	-	-	
지니계수	0.450391	0.712577	0.365747	0.247051	-	-	-	-	

도 연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 비중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 0 1 3	수원시	0.061417	0.084887	0.382193	0.610400	5	5	5	5
	성남시	0.234574	0.254486	0.513286	0.689480	3	3	4	4
	고양시	0.033237	0.056743	0.301525	0.519166	6	6	6	8
	용인시	0.373113	0.396658	0.675811	0.904036	1	1	2	2
	부천시		0.020935	0.159241	0.363920		9	14	17
	안산시			0.136666	0.353648			20	18
	안양시		0.006559	0.141193	0.331221		14	17	22
	남양주시			0.168707	0.426810			12	9
	화성시	0.254594	0.272462	0.568131	0.763385	2	2	3	3
	평택시			0.104086	0.268492			26	27
	의정부시		0.000083	0.145336	0.370970		22	15	15
	시흥시		0.018954	0.163346	0.383509		10	13	10
	파주시			0.135082	0.350874			21	19
	광명시		0.012024	0.196027	0.382850		12	7	11
	김포시		0.024579	0.177347	0.364455		7	10	16
	군포시		0.002607	0.144225	0.350333		18	16	20
	광주시		0.008179	0.132240	0.303019		13	22	23
	이천시			0.108137	0.378743			25	13
	양주시			0.091529	0.240757			28	30
	오산시		0.003476	0.138498	0.347219		17	19	21
	구리시		0.000825	0.138525	0.301975		21	18	24
	안성시		0.001705	0.108326	0.290588		19	24	25
	포천시			0.083813	0.267863			29	28
	의왕시		0.017553	0.185505	0.380451		11	9	12
	하남시		0.005673	0.185777	0.376299		15	8	14
	여주시		0.004273	0.099899	0.285893		16	27	26
	동두천시		0.021276	0.173838	0.563542		8	11	6
	과천시	0.163141	0.195280	0.832291	0.915922	4	4	1	1
	양평군			0.067234	0.248157			31	29
	가평군		0.001629	0.112864	0.538300		20	23	7
	연천군			0.083167	0.140347			30	31
	평균	0.186680	0.064129	0.214640	0.419762	-	-	-	-
	표준편차	0.116514	0.108064	0.182497	0.183473	-	-	-	-
변이계수	0.624139	1.685092	0.850246	0.437089	-	-	-	-	
지니계수	0.419676	0.689543	0.389164	0.229501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 비중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14	수원시	0.025280	0.046019	0.382568	0.547507	6	6	6	6
	성남시	0.071060	0.089790	0.486824	0.622439	4	4	3	3
	고양시	0.052958	0.069579	0.412021	0.575809	5	5	5	5
	용인시	0.107924	0.125939	0.447537	0.613596	3	3	4	4
	부천시			0.184780	0.338289			12	13
	안산시			0.172913	0.315530			17	19
	안양시		0.001269	0.179374	0.316146		8	13	17
	남양주시			0.171122	0.283735			19	24
	화성시	0.186854	0.204995	0.568341	0.706295	2	2	2	2
	평택시			0.139231	0.256882			24	25
	의정부시			0.172803	0.357186			18	9
	시흥시		0.011853	0.220788	0.354796		7	9	10
	파주시			0.157336	0.294275			22	23
	광명시			0.226230	0.363212			8	8
	김포시			0.201480	0.349312			10	12
	군포시			0.174672	0.315597			16	18
	광주시		0.000767	0.169136	0.335172		9	21	14
	이천시			0.130130	0.296372			25	22
	양주시			0.113569	0.213261			27	30
	오산시			0.152640	0.307596			23	20
	구리시			0.174950	0.305857			15	21
	안성시			0.118293	0.253890			26	26
	포천시			0.104159	0.252565			29	27
	의왕시			0.192706	0.354484			11	11
	하남시			0.264101	0.387262			7	7
	여주시			0.112601	0.220189			28	29
	동두천시			0.170078	0.329922			20	15
	과천시	0.219173	0.237720	0.881772	0.953529	1	1	1	1
	양평군			0.102962	0.244425			31	28
	가평군			0.178975	0.320009			14	16
	연천군			0.103969	0.195971			30	31
	평균	0.110542	0.087548	0.234454	0.373584	-	-	-	-
	표준편차	0.070445	0.082041	0.166517	0.163276	-	-	-	-
	변이계수	0.637275	0.937097	0.710236	0.437053	-	-	-	-
지니계수	0.424580	0.580929	0.329867	0.216147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 비중				순위			
		㉑ 현재	㉒ 지방교부세	㉓ 조정교부금	㉔ 도비보조금	㉑	㉒	㉓	㉔
2015	수원시	0.158449	0.178037	0.581633	0.757604	1	2	4	4
	성남시	0.019375	0.046785	0.449675	0.607948	6	7	6	7
	고양시	0.101709	0.129049	0.486025	0.657674	5	4	5	6
	용인시	0.146063	0.217489	0.644280	0.833198	2	1	3	2
	부천시			0.191136	0.386867			21	12
	안산시		0.000896	0.195624	0.354923		10	20	17
	안양시			0.198478	0.353519			19	18
	남양주시		0.007312	0.206821	0.336520		8	16	22
	화성시	0.105829	0.124714	0.671363	0.820309	4	5	2	3
	평택시			0.150961	0.301916			26	27
	의정부시			0.214982	0.405165			14	10
	시흥시		0.097053	0.332941	0.515194		6	7	8
	파주시			0.158187	0.337919			25	21
	광명시			0.280109	0.438717			10	9
	김포시			0.176871	0.319761			23	25
	군포시			0.200317	0.352119			17	19
	광주시		0.003533	0.184305	0.372809		9	22	16
	이천시			0.130862	0.301431			28	28
	양주시			0.158526	0.341676			24	20
	오산시			0.207719	0.376139			15	14
	구리시			0.230776	0.373444			12	15
	안성시			0.117844	0.246487			31	31
	포천시			0.124230	0.293025			30	29
	의왕시			0.231145	0.385062			11	13
	하남시			0.281637	0.389198			9	11
	여주시			0.126210	0.254536			29	30
	동두천시			0.312737	0.707103			8	5
	과천시	0.108837	0.142977	0.969469	1.066713	3	3	1	1
	양평군			0.140323	0.305496			27	26
	가평군			0.199608	0.327392			18	23
연천군			0.221729	0.323364			13	24	
평균	0.106710	0.094785	0.283114	0.446556	-	-	-	-	
표준편차	0.044503	0.073131	0.193983	0.197613	-	-	-	-	
변이계수	0.417047	0.771554	0.685178	0.442527	-	-	-	-	
지니계수	0.259718	0.483393	0.333704	0.224569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 비중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16	수원시	0.160728	0.181698	0.517714	0.704882	3	3	5	6
	성남시	0.440726	0.470642	0.963159	1.127170	1	1	2	1
	고양시	0.010502	0.047802	0.438034	0.607168	6	7	6	7
	용인시	0.220906	0.241851	0.597189	0.738725	2	2	3	5
	부천시		0.001793	0.265221	0.435472		25	12	13
	안산시		0.013085	0.233724	0.419985		19	19	16
	안양시		0.006376	0.225537	0.384259		23	21	21
	남양주시		0.006720	0.232623	0.434898		22	20	14
	화성시	0.060410	0.079835	0.591745	0.744822	5	6	4	4
	평택시			0.194984	0.331580			24	25
	의정부시		0.009304	0.237208	0.437300		21	17	12
	시흥시		0.030649	0.268766	0.467842		8	11	10
	파주시		0.096947	0.262696	0.423784		5	13	15
	광명시		0.016921	0.331838	0.505636		17	8	9
	김포시		0.021600	0.237276	0.407562		12	16	17
	군포시		0.019868	0.236714	0.400281		13	18	19
	광주시		0.018221	0.205478	0.399113		16	23	20
	이천시			0.147917	0.317125			29	26
	양주시		0.001541	0.171077	0.339684		26	25	23
	오산시		0.011587	0.276177	0.460260		20	10	11
	구리시		0.018582	0.254336	0.355508		15	15	22
	안성시		0.000741	0.149343	0.282742		27	28	30
	포천시			0.139548	0.300884			31	28
	의왕시		0.013449	0.259137	0.404871		18	14	18
	하남시		0.027010	0.423802	0.597976		9	7	8
	여주시			0.143080	0.282273			30	31
	동두천시		0.022558	0.315272	0.826114		11	9	3
	과천시	0.091080	0.136197	0.985196	1.107817	4	4	1	2
	양평군		0.002357	0.166419	0.305560		24	26	27
	가평군		0.025961	0.223527	0.336906		10	22	24
	연천군		0.019493	0.163341	0.285908		14	27	29
	평균	0.164059	0.057140	0.318003	0.489487	-	-	-	-
표준편차	0.141089	0.099478	0.209846	0.218269	-	-	-	-	
변이계수	0.859989	1.740941	0.659887	0.445913	-	-	-	-	
지니계수	0.549042	0.709920	0.317024	0.229935	-	-	-	-	

도 연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 비중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 0 1 7	수원시	0.226792	0.254800	0.610864	0.791355	3	3	5	3
	성남시	0.271460	0.308085	0.758893	0.917557	1	1	1	1
	고양시		0.023688	0.282776	0.444790		30	23	24
	용인시	0.243297	0.266024	0.619167	0.757468	2	2	4	5
	부천시		0.025772	0.302308	0.479428		29	16	15
	안산시		0.031964	0.259604	0.434234		26	26	25
	안양시		0.036992	0.320973	0.492880		20	13	13
	남양주시		0.033515	0.280508	0.470709		23	24	16
	화성시	0.158176	0.179780	0.628993	0.800041	4	4	3	2
	평택시		0.019292	0.239729	0.390504		31	29	30
	의정부시		0.048327	0.322175	0.513353		14	12	11
	시흥시		0.032708	0.303669	0.495662		24	15	12
	파주시		0.032159	0.217946	0.360838		25	31	31
	광명시		0.048215	0.374933	0.546554		15	8	7
	김포시		0.033557	0.290524	0.453144		22	20	19
	군포시		0.049060	0.344996	0.514836		11	10	9
	광주시		0.040948	0.286991	0.480480		19	21	14
	이천시		0.030333	0.221461	0.395430		28	30	29
	양주시		0.035992	0.279931	0.464283		21	25	18
	오산시		0.054866	0.386526	0.582629		9	7	6
	구리시		0.044908	0.338523	0.450524		16	11	23
	안성시		0.049015	0.259585	0.422057		12	27	27
	포천시		0.041988	0.251347	0.415061		18	28	28
	의왕시		0.042692	0.306602	0.452977		17	14	20
	하남시		0.031628	0.372629	0.514225		27	9	10
	여주시		0.048917	0.292274	0.452616		13	19	21
	동두천시		0.065723	0.413205	0.517615		5	6	8
	과천시		0.054973	0.636267	0.763610		8	2	4
	양평군		0.049259	0.296474	0.451368		10	18	22
	가평군		0.056634	0.286085	0.470288		7	22	17
	연천군		0.058470	0.298141	0.430500		6	17	26
평균	0.224931	0.068719	0.357552	0.520226	-	-	-	-	
표준편차	0.041719	0.073318	0.137628	0.135052	-	-	-	-	
변이계수	0.185475	1.066927	0.384919	0.259602	-	-	-	-	
지니계수	0.132025	0.436031	0.192403	0.130963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 비중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18	수원시	0.090415	0.118003	0.354757	0.513981	5	5	6	8
	성남시	0.298225	0.335049	0.672772	0.822316	2	2	2	2
	고양시		0.010717	0.226807	0.382464		30	25	25
	용인시	0.107475	0.131974	0.439880	0.594886	4	4	5	4
	부천시		0.015535	0.254965	0.414872		23	22	21
	안산시		0.021887	0.220820	0.382870		19	27	24
	안양시		0.022612	0.240633	0.387789		17	23	23
	남양주시		0.018276	0.256535	0.455029		22	21	15
	화성시	0.601976	0.620129	0.995646	1.150905	1	1	1	1
	평택시		0.008876	0.198211	0.330555		31	30	31
	의정부시		0.023088	0.282999	0.475867		16	14	10
	시흥시		0.028221	0.292094	0.488147		12	11	9
	파주시		0.012273	0.211875	0.362156		28	29	28
	광명시		0.028063	0.311655	0.464146		14	10	13
	김포시		0.021961	0.266579	0.420549		18	19	20
	군포시		0.035308	0.289918	0.439300		8	13	16
	광주시		0.020375	0.290435	0.473046		20	12	11
	이천시		0.014956	0.182244	0.335496		25	31	30
	양주시		0.019383	0.279473	0.460140		21	15	14
	오산시		0.032062	0.352613	0.541838		10	7	6
	구리시		0.034279	0.318148	0.469000		9	9	12
	안성시		0.011475	0.229270	0.367280		29	24	27
	포천시		0.013376	0.219403	0.370202		27	28	26
	의왕시		0.037311	0.275938	0.422634		7	17	19
	하남시	0.153028	0.187244	0.532204	0.690381	3	3	3	3
	여주시		0.013916	0.258040	0.411068		26	20	22
	동두천시		0.031807	0.338830	0.538409		11	8	7
	과천시		0.065045	0.495981	0.589654		6	4	5
	양평군		0.015427	0.221626	0.342093		24	26	29
	가평군		0.028103	0.270585	0.433707		13	18	18
	연천군		0.027920	0.279320	0.434922		15	16	17
	평균		0.250224	0.064666	0.324524	0.482765	-	-	-
표준편차		0.190472	0.120684	0.160472	0.160286	-	-	-	-
변이계수		0.761204	1.866267	0.494484	0.332016	-	-	-	-
지니계수		0.485114	0.658364	0.221110	0.155153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 비중				순위			
		㉑ 현재	㉒ 지방교부세	㉓ 조정교부금	㉔ 도비보조금	㉑	㉒	㉓	㉔
2019	수원시	0.056169	0.084727	0.297009	0.474100	4	4	14	13
	성남시	0.319652	0.356816	0.580670	0.737548	2	2	2	2
	고양시		0.012001	0.274470	0.444357		25	19	20
	용인시	0.068876	0.095129	0.304355	0.472618	3	3	13	15
	부천시		0.018959	0.265444	0.441364		21	20	21
	안산시		0.022735	0.208908	0.382904		15	29	27
	안양시		0.023277	0.260737	0.417625		14	23	24
	남양주시		0.011502	0.258264	0.452972		26	24	19
	화성시	0.495168	0.514393	0.740664	0.909315	1	1	1	1
	평택시		0.009946	0.197650	0.342285		29	30	30
	의정부시		0.021369	0.291330	0.492077		17	15	7
	시흥시		0.021858	0.264417	0.462111		16	21	18
	파주시		0.013898	0.223561	0.381522		23	27	28
	광명시		0.027903	0.308857	0.466460		12	12	16
	김포시		0.020053	0.264100	0.432689		18	22	22
	군포시		0.030310	0.328429	0.483899		9	10	10
	광주시		0.019782	0.290942	0.474819		20	16	12
	이천시		0.012858	0.185180	0.340962		24	31	31
	양주시		0.019926	0.282305	0.463490		19	18	17
	오산시		0.031413	0.329090	0.514958		8	9	5
	구리시		0.033165	0.343459	0.495642		6	6	6
	안성시		0.010020	0.237027	0.384970		28	26	26
	포천시		0.008557	0.222166	0.374629		30	28	29
	의왕시		0.028779	0.335787	0.485853		10	8	9
	하남시		0.033019	0.325456	0.486516		7	11	8
	여주시		0.011020	0.251898	0.396078		27	25	25
	동두천시		0.024383	0.403400	0.597497		13	4	3
	과천시		0.055046	0.455535	0.560638		5	3	4
	양평군		0.015325	0.290626	0.419633		22	17	23
	가평군		0.028330	0.347509	0.473136		11	5	14
	연천군			0.337743	0.482017			7	11
	평균	0.234966	0.053883	0.313129	0.475635	-	-	-	-
표준편차	0.183324	0.105827	0.109270	0.109379	-	-	-	-	
변이계수	0.780215	1.964002	0.348963	0.229963	-	-	-	-	
지니계수	0.556027	0.645149	0.167296	0.109737	-	-	-	-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 비중				순위			
		㉑ 현재	㉒ 지방교부세	㉓ 조정교부금	㉔ 도비보조금	㉑	㉒	㉓	㉔
2020	수원시		0.005720	0.226052	0.528430		5	16	11
	성남시	0.393962	0.424848	0.645467	0.929838	2	2	2	1
	고양시			0.200626	0.491049			23	17
	용인시		0.012844	0.223315	0.512725		4	18	13
	부천시			0.207994	0.510268			19	14
	안산시			0.204078	0.492598			22	16
	안양시			0.206832	0.471951			20	24
	남양주시			0.184525	0.486870			24	20
	화성시	0.446871	0.465100	0.649574	0.911415	1	1	1	2
	평택시			0.162048	0.399674			29	27
	의정부시			0.241882	0.577448			12	4
	시흥시			0.233247	0.546613			14	9
	파주시			0.173098	0.425831			27	26
	광명시			0.234735	0.490717			13	18
	김포시			0.229305	0.521700			15	12
	군포시			0.265741	0.537114			11	10
	광주시			0.206125	0.488833			21	19
	이천시			0.160035	0.383296			30	28
	양주시			0.225111	0.478469			17	22
	오산시			0.270459	0.560398			10	5
	구리시			0.292794	0.550544			6	8
	안성시			0.181923	0.426161			25	25
	포천시			0.137145	0.336627			31	31
	의왕시			0.296743	0.552920			5	6
	하남시		0.017646	0.280518	0.550977		3	8	7
	여주시			0.165303	0.366522			28	30
	동두천시			0.349198	0.592080			3	3
	과천시			0.335960	0.500017			4	15
	양평군			0.180385	0.379019			26	29
	가평군			0.273711	0.478204			9	23
	연천군			0.291107	0.485218			7	21
	평균	0.420416	0.185232	0.255969	0.514952				
표준편차	0.026455	0.212495	0.114790	0.123721					
변이계수	0.062925	1.147183	0.448452	0.240257					
지니계수	0.062925	0.774747	0.207103	0.115777					

연도	구분	재정력지수 10이상 발생 금액 비중				순위			
		㉠ 현재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	㉡	㉢	㉣
2021	수원시		0.019163	0.310738	0.522963		10	21	18
	성남시	0.132935	0.172408	0.453074	0.634850	2	2	4	4
	고양시			0.260256	0.466514			25	25
	용인시		0.020592	0.247786	0.443709		8	27	26
	부천시			0.318809	0.534788			17	16
	안산시			0.295404	0.505947			23	22
	안양시			0.318236	0.512779			18	21
	남양주시			0.298485	0.519403			22	19
	화성시	0.180391	0.205496	0.427899	0.618365	1	1	6	6
	평택시			0.210300	0.384521			29	29
	의정부시			0.373700	0.617368			11	7
	시흥시		0.012139	0.264687	0.517290		12	24	20
	파주시			0.118403	0.305867			31	31
	광명시		0.008637	0.311263	0.494811		13	19	23
	김포시		0.002138	0.333054	0.561512		15	14	13
	군포시		0.012197	0.407897	0.605414		11	8	8
	광주시			0.329365	0.544672			16	14
	이천시			0.249811	0.409125			26	27
	양주시			0.332796	0.535424			15	15
	오산시		0.020782	0.398060	0.626611		7	9	5
	구리시		0.026136	0.448344	0.651314		6	5	2
	안성시			0.185097	0.366837			30	30
	포천시			0.245582	0.407778			28	28
	의왕시		0.019343	0.394719	0.575725		9	10	11
	하남시		0.031251	0.370851	0.576566		5	12	10
	여주시			0.311060	0.471445			20	24
	동두천시		0.049405	0.563652	0.775774		4	1	1
	과천시		0.054477	0.460330	0.587205		3	3	9
	양평군			0.355548	0.523680			13	17
	가평군		0.007496	0.497206	0.649901		14	2	3
	연천군			0.416237	0.563098			7	12
평균	0.156663	0.044111	0.338989	0.532621	-	-	-	-	
표준편차	0.023728	0.058801	0.094258	0.095981	-	-	-	-	
변이계수	0.151458	1.333042	0.278057	0.180205	-	-	-	-	
지니계수	0.151458	0.705212	0.160830	0.103058	-	-	-	-	

Abstract



The Improvement Strategy for Local Government Fiscal Relations in Korea

In Korea, local finances depend on financial transfers from higher-level governments due to the gap between revenue and expenditure and the weakness of the revenue base. As a result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are complicated like a spider's web. This causes diversity in the way and criteria for allocating finances, and sometimes leads to unexpected results. In particular, the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are very interested in "balanced development", causing reverse discrimination.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an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and basic rather than central and local. I analyzed the effect of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on fiscal equity and the reversal of fiscal power.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and the time span is from 2011 to 2021. The analysis method used the Gini coefficient,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the rank change. I initiall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accumulation of local allocation tax, adjustment grants, and provincial subsidies against local government reven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adjustment system helps to balance the fiscal bal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at the same time causes a reversal of fiscal power. Fiscal power reversal causes

inefficiencies in resource allocation within a country. And it lowers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f financial power reversal, an optimal section was prepared by conducting a simulation. This is a method that allows a net increase without financial loss to the local government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increase in taxation, and is an alternative that can minimize the phenomenon of reversal of fiscal power.

Keyword :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Fiscal equalization, Fiscal power reversal

| 저자 약력 |

정재진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E-mail : cjj1382@suwon.re.kr

주요 논문 및 연구

「혁신 통합민원실 운영 만족도 및 인식 연구」 (2022, 수원시정연구원)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 시행시 수원시 재정변화 분석」 (2022,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준정부조직 운영 실태와 발전 방안」 (2022, 수원시정연구원)

「반려견 보유세 도입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20, 한국정책연구)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경쟁과 확산에 관한 연구」 (2020, 정부학연구)

「도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20, 지방행정연구)

곽병욱

경영학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E-mail : kwak@suwon.re.kr

주요 논문 및 연구

「혁신 통합민원실 운영 만족도 및 인식 연구」 (2022, 수원시정연구원)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 시행시 수원시 재정변화 분석」 (2022,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준정부조직 운영 실태와 발전 방안」 (2022, 수원시정연구원)

